

월간
재정포럼

2017. August_Vol.254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08

권두칼럼

회계투명성은 또 다른 '세원'이다. | 김갑순

현안분석

공공기관 채용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고: 고졸자와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함의
| 박한준

미국의 가치 기반 의료비 지불 제도와 시사점 | 김우현

특집

2017년 세법개정(안)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캐나다, 2017년 예산안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개정안 승인 외

CONTENTS

권두칼럼

회계투명성은 또 다른 '세원'이다. · 김갑순 02

현안분석

공공기관 채용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고: 고졸자와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함의 · 박한준 06

미국의 가치 기반 의료비 지불 제도와 시사점 · 김우현 24

특집 · 2017년 세법개정(안)

2017년 세법개정(안)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 이상길 43

2017년 세법개정안 평가 · 강성훈 49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캐나다, 2017년 예산안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개정안
승인 외 67

조세 · 재정 정책 및 연구 동향

세미나 & 정책 및 연구 97

정책흐름

2017년 세법개정안 103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123

회계투명성은 또 다른 ‘세원’이다.



김갑순
동국대 회계학과 교수
/한국세무학회 회장

지금까지 정부가 도입했던 여러 조세특례 제도들 중에서 아마도 가장 성공적인 제도로 평가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이하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일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16년 9월에 펴낸 『2016 조세특례 심층평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 제도가 17여년간 유지되면서 나름의 정책효과를 충분히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1999년 132만 2천명에게 3조 3,140억원을 과세했던 사업 및 임대소득 대상 종합소득세는 2014년 457만 9천명을 대상으로 16조 9,370억원으로 확대됐다. 또 부가가치세도 1999년 276만 7천명이 4조 2,160억원을 납부하는 수준에서 2014년엔 497만명이 16조 4,800억원을 납부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는 연평균 9.5~11.5%에 달하는 세수 상승효과로서 이 기간 동안의 경제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경제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세수 상승효과 속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가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을 양성화시킨 효과가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세원투명성의 확보가 곧 세원 확보

물론 현재 이 제도에 대해서는 추가 과표양성화 효과가 미미하고, 그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해 소득공제라는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자영업자와 개업 전문직 사업자들의 사업 소득 과표 양성화에 기여하였으며 개인사업자 납세인원 및 세수실적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조세정책에 있어 세원투명성의 확보가 곧 세원 확보라는 사실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의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법인사업자의 세원투명성이다. 2016년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

연보』의 2015년 법인세신고기준 법인사업자조사에 따르면, 수입금액 5천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은 6%에 그친 데 비해 5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법인사업자는 18%, 2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는 19%,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는 33%로 집계되었다. 이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득탈루율이 수입금액이 감소함에 따라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규모가 큰 법인사업자일수록 소득탈루율이 적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 따라 독립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엄격한 외부회계감사를 받기 때문이다. 외감법에서는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이고 ①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또는 ② 종업원 수 300명 이상,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상장 예정법인에 대해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2016년 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법인은 27,114개사로 통계청이 2016년 말 발표한 2015년 기준 영리법인 기업체 수 58만 5천개사의 4.63%에 불과하다. 전체 영리법인 기업의 95%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외부감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영리법인 기업의 95% 정도에서 회계투명성 제고를 통해 추가 세원확보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2015년 기준으로 수입금액 5천억원 이하 법인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을 5천억원 초과 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인 6%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다면 세무조사법인 기준 전체 법인사업자 신고소득금액의 최고 2.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세수로 확보할 수 있다. 이 금액은 적어도 법인세 명목세율을 1~2% 정도 인상하는 수준에 해당한다. 법인세율 인상과 비과세·감면 축소 여부에 대해 갑론을박하기 이전에 법인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여 이를 세원투명성으로 연결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회계투명성 제고를 통한 법인사업자의 소득탈루율 개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 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지출소요를 178조원으로 추계하고, 재원대책으로 세입확충을 통해 82.6조원, 세출절감을 통해 95.4조원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제시하였다. 세입확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수 자연증가분이 60.5조원,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11.4조원, 탈루세금 강화로 5.7조원, 과징금 등 세외수입으로 5조원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이다. 위에서 살펴본 수입규모 5천억원 이하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여 확보할 수 있는 세수의 규모와 이들 내용을 비교해 보면 회

.....

**규모가 큰 법인사업자일수록
소득탈루율이
적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엄격한 외부회계감사를
받기 때문이다.**

.....

.....

**현행 외감법상
외무감사 대상
법인사업자 이외의
법인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을 인센티브를
조세정책 차원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


계투명성 확보를 통한 세수 기대효과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짐작할 수 있다.

경영성과의 측정치인 회계상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계산을 위한 출발점이다. 즉,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은 단순히 회계상 손익과 세무상 손익의 차이를 가감하는 것에 불과하다. 법인세법은 별도의 장부를 요구하지 않고, 회계장부를 대상으로 법인세액을 산출하여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법인기업에 있어 세원투명성의 확보는 회계투명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소득탈루로 법인세가 추징되는 경우는 회계상 장부에 반영하여야 할 것을 누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인소득에 대한 또 다른 ‘세원’으로서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세정책의 도입을 제안한다.

첫째, 현행 외감법상 외무감사 대상 법인사업자 이외의 법인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을 인센티브를 조세정책 차원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된 것은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른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인센티브 때문이었다. 마찬가지로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손비처리 이외에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 등으로 지원하는 인센티브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기업을 선정할 때 자발적 외부감사 채택 여부를 선정기준으로 고려한다는 내용을 「국세기본법」 또는 「세무조사 내부운영지침」에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존에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의견과 감사보고서상의 공시내용을 세무조사대상 선정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포괄적인 의미에서 외부감사가 예비적인 세무조사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의 세무조사 시스템과 상호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회계상 이익과 세법상 소득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세법 차원의 지속적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업종이나 재무상태 특성상 회계상 이익과 세무상 이익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기업회계상 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한다면 세무조정시스템의 단순화로 인해 세원투명성은 강화될 것이고 법인세 납세협력비용은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현안분석 |

- 공공기관 채용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고
: 고졸자와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함의
박한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미국의 가치 기반 의료비 지불 제도와 시사점
김우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공공기관 채용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고

: 고졸자와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함의

I. 서론



박한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hanpark@kipf.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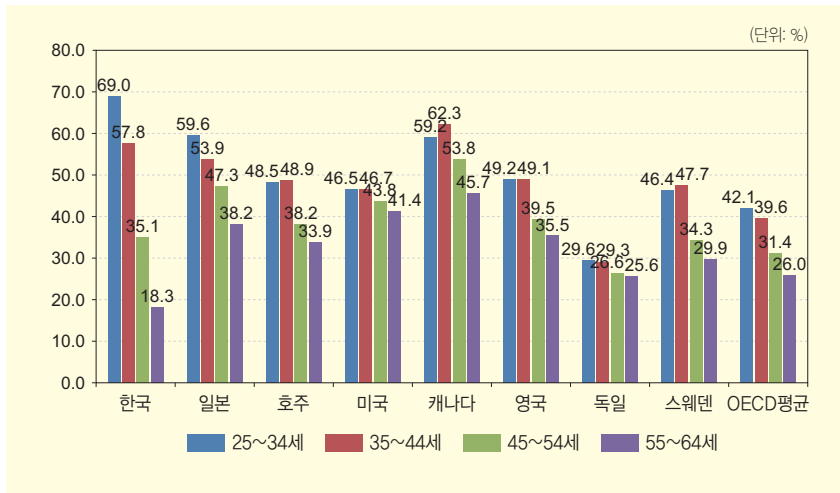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경제, 산업정책뿐만 아니라 고용정책 분야에 있어서도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과거 정부주도 경제성장을 견인한 추진동력을 제공하였으며, 산업계의 중요한 고용주체로서 기능하고 있다. 최근 고용경색이 심화되면서 공공부문의 채용과 인력관리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이와 함께 공공기관 채용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도 확대되고 있다.

'90년대 말 IMF 경제위기 이후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나 인력충원도 경색되어 고용과 실업문제는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재생산되고 있다. 경기둔화와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과거와 같이 대량고용을 통한 고도성장이 불가능해졌으며, 기업들은 고용 확대와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인력감축을 통한 구조조정 인센티브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고용시장의 환경이 악화되면서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청년층 특히 고졸자와 같은 취약계층의 취업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대학진학률은 OECD 주요 회원국 가운데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고학력의 청년들조차도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다. 교육정책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부실대학의 생명력에 대한 논쟁은 일단 접어두고라도, 1990년대 이후 대학설립준칙주의 등에 따라 대학설립이 용이해지면서 전국 대학의 규모와 학생 수가 증가하였고, 그 가운데 취업시장에서 학력제한이 철폐되며 노동시장의 취업경쟁이 고학력자와 고졸자의 경쟁으로 왜곡되었다. 결과적으로 고학력화는 고졸자들의 취업문을 더욱 좁아지게 하였으며, 결국 취업을 위한 대학진학의 인센티브

가 커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재(再)강화되어 왔다.

[그림 1] 연령구간별 고등교육 이수 수준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2015)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수준은 OECD 평균인 42.1%를 26.9%p 뛰어넘으나, 이들이 체감하는 고용경색은 이전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 수준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OECD 평균인 42.1%를 26.9%p 뛰어넘는 수준이나, 이들이 체감하는 고용경색은 이전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고학력자의 취업난 속에서 고졸자의 취업은 한 동안 정책논의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으나, 2010년을 전후하여 사회형평적 관점에서 이들의 취업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전개과정을 추적해보면, 고졸자의 취업문제는 특정 인력 그룹의 단기적 수급 불균형이라기 보다는 복합적인 사회문제로 심화되어 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공식적인 정책 의제로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고학력자와 고졸자의 취업경쟁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비수도권 학교 출신에 대한 사회형평적 채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사회적 채용에 대한 책임이 증가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담당해야 할 책무에 대한 논의, 지방이전과 이에 따른 지역인재 채용환경에 대한 논의, 고졸자 채용을 중심으로 한 사회형평적 채용의 경험과 동향을 살펴보고, 최근 논의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정부는 산업계의 중요한 고용주체인 공공기관을 통해 스펙을 초월한 직무중심의 채용, 공정한 채용을 강조하는 동시에, 사회형평적 채용을 병행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II. 공공기관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책무

1.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책무

정부는 산업계의 중요한 고용주체인 공공기관을 통해 스펙을 초월한 직무중심의 채용, 공정한 채용을 강조하는 동시에, 사회형평적 채용을 병행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고용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청년인턴 활성화, 고졸자 채용, 지역인재 채용을 강조한다.

이렇듯 노동시장에서 취업취약그룹의 사회형평적 채용을 활성화하고,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취업경색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왜곡된 고용문화 개선을 위해 시작되었다. 사회형평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고용시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고용문화 정착을 위한 고민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모범적 고용주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공기관에 요청되는 인력관리의 방향에는 비정규직 해소, 취업경색 해소, 고졸자와 지역인재의 취업, 여성 관리자 확대, 간접고용 문제해결 등이 포함되고 있다. 여성인력 채용의 경우, 이미 수년 전부터 선발 수준이 비슷하거나 남성입사자 비중을 넘어서는 경우도 관찰되고 있다. 고졸자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채용 확대를 주도하면서, 민간에서도 은행 등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고졸인력 채용 시도가 확산되었던 경험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사회형평적 채용의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매년 경영평가라는 정책수단을 통해 모니터링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정부정책 방향에 대한 높은 순응도가 유지될 수 있으나, 민간부문을 포함하는 사회적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과 기능의 효과를 유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기관과 기업들이 고졸자를 우대하여 채용할 수는 있으나, 지속가능하지 않다면, 일시적인 우대채용은 결국 고졸 입사자들을 직장생활에서 조직의 '고립된 섬'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채용은 우대하였으나, 인력관리에 실패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모범적 고용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단순한 시혜적인 채용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통한 합리적 채용문화를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사회형평적 채용에 대한 정확한 정의(定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구직과정에서 차별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단순히 시혜적인 접근이 아닌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문제는 획일화되어 있는 공채과정에서 선발시험 성적순으로, 스펙의 우수성 기준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합리적 직무분석을 통해 직무의 난이도와 가치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고, 직무 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임금과 보상을 지급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그리고 직무 역량을 차별화하여 평가할 수 있는 선발기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폐쇄적 계급제의 오랜 전통 속에서 연공서열에 기반을 둔 임금체계가 유지되는 한, 직무수행에 적합한 지원자보다는 성적순으로, 스펙이 우수한 지원자를 선발하려는 인센티브가 작동할 수밖에 없다. 직무 수준에 맞는 지원자를 뽑고, 이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중심의 조직화가 실현되었을 때, 자격과잉의 지원자보다 적정자격을 갖춘 지원자들을 채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순환보직이 인력운영의 핵심논리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임금이 올라가고, 승진하는 환경 속에서는 기존 조직의 내부적 이기주의와 구조적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어렵다.

단지 입직단계에서 사회형평적 채용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시혜적 채용으로 진입한 인력의 전(全) 생애주기로 보았을 때, 종국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크다. 즉, 모범적 고용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단기적 현안과제보다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합리적 고용문화 조성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자율적 운영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형평적 채용이 시혜적 채용이 아닌 합리적 채용과 인력관리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2.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고용의 사회적 책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지방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공공기관의 사회형평적 채용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2003년 정부가 '신행정수도건설' 정책을 발표하였고, 동년 6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방침'을 발표하면서 지방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2007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이전을 추진하여 왔으며, 지역인재 채용 수준을 30%로 권고하여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도 모범적 사용자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최근에 논의되고

**합리적 직무분석을 통해
직무의 난이도와 가치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고,
직무 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임금과 보상을
지급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2007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별 154개 공공기관이 이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미 많은 기관들은 지방이전을 완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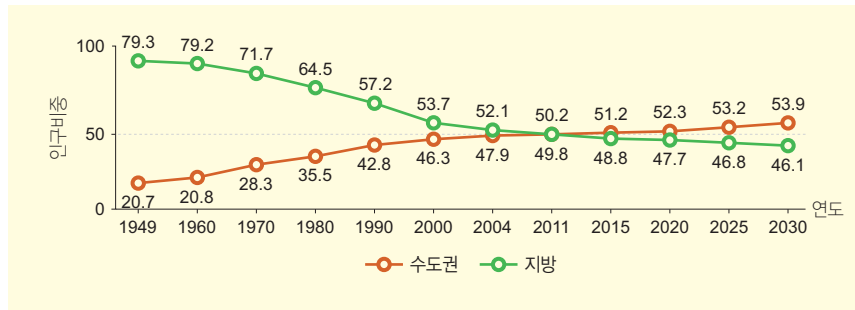
있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한 블라인드 채용 논의도 그러한 맥락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Ⅲ.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과 현황

우리나라 경제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짧은 기간 동안 압축적인 성장을 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수도권 과밀과 지방 침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는 점은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국가발전의 축을 수도권 중심으로 형성하여 추진한 불균형적 발전전략은 수도 중심의 경제적 성과를 실현하였으나, 지방과의 불균형은 경제 수준의 차이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역의 고용시장 간 간극을 크게 하였고, 결국 인구의 수도권 밀집현상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그림 2] 연도별 수도권 인구비중 변화

(단위: %)



출처: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 홈페이지(<http://innocity.molit.go.kr>)

이렇게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심화되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공공기관의 지역이전이 추진되었다. 2007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역별 154개 공공기관이 이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미 많은 기관들은 지방이전을 완료하였다.

〈표 1〉 지역별 기관이전 계획현황

지역	기능군	이전기관
부산 (13)	해양수산 금융산업 영화진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해양조사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예탁결제원 • 주택도시보증공사 • 한국남부발전(주)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영화진흥위원회 • 영상물등급위원회 • 게임물등급위원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대구 (11)	산업진흥 교육·학술진흥 가스산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가스공사 •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장학재단 • 한국산업단지공단 • 중앙신체검사소 • 한국감정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한국사학진흥재단 • 신용보증기금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중앙교육연수원
광주 전남 (16)	전력산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력공사 • 한전KDN(주) • 한전KPS(주)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농어촌공사 • 국립전파연구원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 한국전력거래소 • 우정사업정보센터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한국콘텐츠진흥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 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
울산 (9)	에너지산업 근로복지 산업안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동서발전 • 에너지경제연구원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한국석유공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근로복지공단
강원 (12)	공업진흥 건강생명 관광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광물자원공사 • 한국광해관리공단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한국관광공사 • 대한석탄공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국립공원관리공단 • 도로교통공단 • 대한적십자사
충북 (11)	정보통신 인력개발 과학기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국가기술표준원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소비자원 • 법무연수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한국고용정보원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전북 (12)	국토개발관리 농업생명 식품연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공단 • 농촌진흥청 • 국립농업과학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국립식량과학원 • 국립축산과학원 • 한국농수산대학 • 한국국토정보공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 한국식품연구원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지방행정연수원

〈표 1〉의 계속

지역	기능군	이전기관	
경북 (12)	도로교통 농업기술혁신 식품연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도로공사 기상통신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종자원 조달청품질관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정사업조달사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전력기술(주)
경남 (11)	주택건설 중소기업 진흥 국민연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세라믹기술원 주택관리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중앙관세분석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제주 (8)	국제 교류 교육연수 국제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고객만족센터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연금공단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개별 이전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특수교육원(아산) 질병관리본부(오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오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오송)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오송) 경찰교육원(아산) 관세국경관리연수원(천안) 산림항공본부(원주) 한국수력원자력(경주)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여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중부발전(보령) 한국서부발전(태안) 경찰대학(아산) 경찰수사사연수원(아산) 중앙119구조본부(대구) 국방대학교(논산) 식품의약품안전처(오송) 한국원자력환경공단(경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전북)
세종시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초기술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출처: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 홈페이지(<http://innocity.molit.go.kr>)

지역별로 사업영역을 특성화하여 지방이전이 추진된 가운데, 「혁신도시법」에서는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권고하기 위해 제29조의 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력 고용)를 규정하였고,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시·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출신 인재를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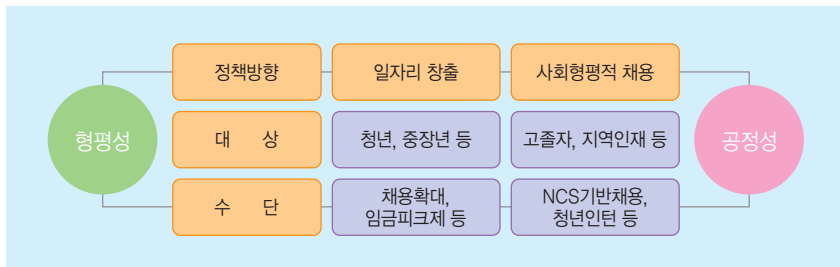
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과 이전지역 인재 채용을 사회형평적 채용에 포함하여, 비수도권 인재를 신규채용의 35% 수준으로, 15%를 이전지역 출신으로 채용하도록 권고하면서, 고졸인력 권고 수준인 20%와 함께 사회형평적 채용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였다. 다수의 기관에서는 선제적으로 고졸자, 이전지역 인재, 비수도권 인재들을 대상으로 적합 직무를 개발하거나, 기관을 직무중심 조직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강화하기보다는 단지 채용과정에서 이들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사회형평적 채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공기관 인력운영의
기본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형평적 채용을
확대·강화하는 것이다.**

IV. 공공기관 사회형평적 채용환경과 쟁점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인력운영의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신규채용 확대를 통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선정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사회형평적 채용을 확대·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력운영의 가치와 정책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적용하고 있다.

[그림 3] 공공기관 인력관리의 기본방향과 가치 지향



출처: 저자작성

1.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의 가장 중요한 정책대상은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들이다. 하지만, 고용시장 경색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집단도 청년인 것을

기관의 정원과
인건비를 통제하는
현재의 공공기관
관리시스템 아래에서는
일자리를 급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주요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OECD 고용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고용률은 해외 주요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표 2〉 해외 주요국 연도별 청년고용률 비교

(단위: %)

국가/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프랑스	30.0	31.2	31.4	30.5	30.1	29.6	28.6	28.4	28.0	27.9
독일	43.5	45.4	46.7	46.0	46.3	47.9	46.6	46.9	46.1	45.3
일본	41.3	41.3	41.0	39.3	38.5	38.8	38.5	39.7	40.3	40.7
한국	27.2	25.7	23.8	22.9	23.0	23.1	24.2	24.2	25.8	26.9
스웨덴	40.3	42.2	42.2	38.3	38.8	40.9	40.2	41.7	42.8	43.9
영국	53.7	52.6	52.1	47.9	46.8	45.8	46.2	46.3	48.0	50.0
미국	54.2	53.1	51.2	46.9	45.0	45.5	46.0	46.5	47.6	48.6
OECD평균	42.9	42.9	42.3	39.6	39.0	39.1	39.1	39.2	39.7	4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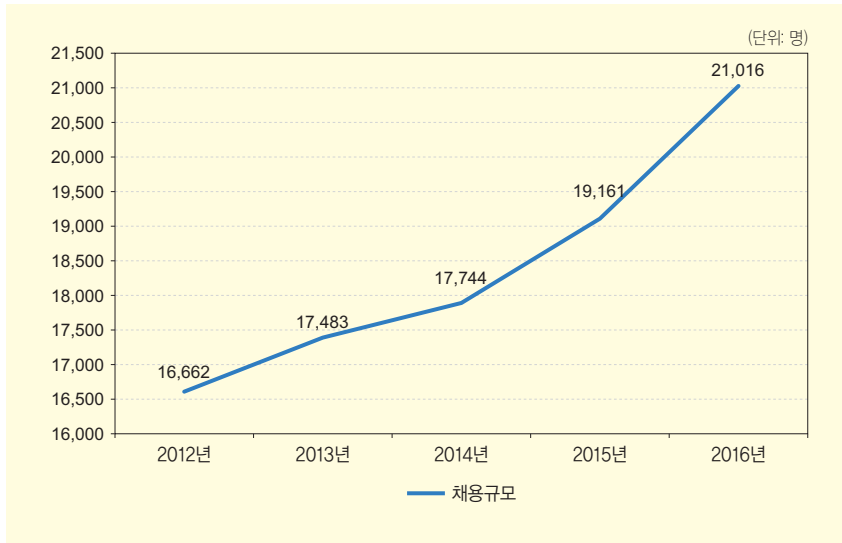
출처: OECD Statistics(<http://stats.oecd.org>)

최근 10년(2006~2015)간 우리나라¹⁾ 청년고용률은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동 기간 미국은 청년고용률이 40% 후반에서 50%를 넘는 수준이었으며, 일본의 경우도 40% 내외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는 데 비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청년구간이 15~24세로 설정되어 있고, 대학진학률이 70%를 넘는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주요국과 15~20%p가량 차이가 나는 점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고민은 2015년에 도입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장년층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시된 임금피크제 도입과정에서도 청년채용을 패키지로 포함한 것에 주목하여야 한다. 2013년 개정된 「정년연장법」에 따라 2016년부터 정년이 연장되는 근로자의 규모만큼 청년고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한 것은 청년취업 확대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기존 근로자들의 정년연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규채용에 대한 인센티브 감소가 청년들이 벗어나야 하는 고용절벽을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관의 정원과 인건비를 통제하는 현재의 공공기관 관리시스템에서는 일자리를 급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1)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청년고용 촉진특별법」에서는 청년의무고용 비율 3%를 준수토록 하고 있으며, 그 시행령에서 청년의 연령을 15~29세로 정하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에서는 청년대상을 15~34세로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청년취업의 문제가 20대에서 해소되지 않고, 30대까지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청년고용비율을 3%에서 5%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4] 연도별 공공기관 채용규모 변화추이



출처: www.alio.go.kr

그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용경색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에 따라 공공기관의 채용규모를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은 전체적으로 약 1.7~1.9만명 수준으로 신규채용을 해왔다. 2012년 16,662명, 2013년 17,483명, 2014년 17,744명, 2015년 19,161명, 2016년 21,016명을 채용하였다. 매년 꾸준히 채용규모를 늘려오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으며, 2016년 채용인력은 2012년 채용규모 대비 약 26.13% 증가했다.

고용시장에서 모범적 고용주로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일자리 창출 노력 이상의 것도 요구되고 있다. 일자리의 규모뿐만 아니라, 안정적 일자리로 인식되고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의 배분 결과에 대한 다양한 구직그룹 간의 경쟁적인 이해관계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에 일자리의 규모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배분하는 방식도 중요한 정책어젠다로 논의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고용시장에서 모범적 고용주로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일자리 창출 노력 이상의 것도 요구되고 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폐쇄적 계급제와
연공급적 임금체계의
전통을 바꾸는 혁신적인
변화가 없이는 스펙중심의
채용에서 벗어날 수 없다.

2. 채용의 다양성 확대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채용은 ‘열린 채용’이나 ‘사회형평적 채용’으로 지칭되고 있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채용의 다양성 확대를 지향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정책적 이념은 달랐으나, 여러 정부를 거쳐 고졸채용, 스펙 초월 채용,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채용, 채용트랙 청년인턴제라는 슬로건으로 공공기관 일자리의 균형적 배분을 강조하여 온 것은 다양한 직무에 다양한 인재들을 선발하여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학벌, 학점, 점수, 연수경험 등 스펙을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적합성을 기준으로 다양한 인재를 선발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에 근거하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 채용의 다양성에 대한 논의는 미국의 차별철폐조치(affirmative action)보다 더욱 전향적인 측면이 있다. 인종, 성별과 같은 귀속적 차이를 넘는 영역을 논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 상황에 대해 단순한 결과적 기준만을 제시하는 대응적 접근보다는 차별이라고 인식되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전체적인 고용경색으로 민간에서 경제성장을 주도해야 하는 우수한 인재들이 공공부문에 편중되고 있는 현상도 문제이지만, 공공직무동기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여 공공부문에 취업하고 있는 자격과잉(overqualified) 인력들의 낮은 직무동기도 문제인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폐쇄적 계급제와 연공급적 임금체계의 전통을 바꾸는 혁신적인 변화가 없이는 스펙중심의 채용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는 우대 선발된 인력들의 배치와 활용이 또 다른 문제로 심화될 우려가 있다. 정확한 직무분석을 통해 필요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을 활용하는 것보다 적합인재를 배치하고, 이에 상응하는 합리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성취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인력을 선발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만이 조직성과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명히 공공부문에서 인력의 다양성이 확대되어야 하나, 채용과정에 국한된 미시적 이슈가 아닌 조직 관리와 인력운영의 본질적인 쟁점으로 이해하고 접근하지 않는다면, 정책대안들이 궁극적 해법보다는 미봉책에 그칠 우려가 크다.

V. 사회형평적 채용의 경험과 동향: 고졸자 채용을 중심으로

1. 고졸자 고용률 변화추이

2000년 이후 OECD 주요국 청년세대(25~34세) 고졸인력의 고용률 변화추이를 보면, 우리나라 고졸인력 고용률은 2000년 64.1%에서 2010년 63.8%, 2015년 65.2%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10%p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80%를 넘는 독일이나 스웨덴 등과 비교해서는 15~20%p 낮은 수준이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고졸자 취업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대졸자와 고졸자 간의 고용률 차이가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OECD 주요국 가운데 학력별 고용률 차이가 적지 않은 편에 속하고 있는 점도 함께 확인되고 있다.

〈표 3〉 OECD 주요국의 학력별 고용률(25~34세 구간) 변화추이

(단위: %)

국가	학력	2000	2005	2010	2014	2015
한국	대졸	74.1	74.4	73.9	76.1	75.9
	고졸	64.1	64.1	63.8	63.1	65.2
호주	대졸	83.9	85.4	84.6	84.1	85.2
	고졸	80.4	81.4	78.3	78.0	78.8
캐나다	대졸	85.7	84.8	84.0	84.6	84.4
	고졸	79.5	79.9	77.2	76.9	77.0
프랑스	대졸	85.2	85.5	86.9	84.9	N/A
	고졸	80.2	80.3	78.7	74.7	N/A
독일	대졸	88.9	84.6	88.0	87.8	87.5
	고졸	79.4	73.6	78.3	81.7	81.8
스웨덴	대졸	82.0	83.6	85.3	86.6	86.8
	고졸	83.3	81.1	80.3	83.7	83.6
영국	대졸	91.1	90.3	87.5	86.8	88.1
	고졸	83.2	81.3	79.2	80.9	82.9
미국	대졸	87.3	83.4	82.3	82.5	83.5
	고졸	80.1	74.1	68.0	68.3	70.8
OECD 평균	대졸	84.6	84.4	83.1	82.0	82.4
	고졸	77.7	77.4	75.4	75.0	76.2

출처: OECD.stat(<http://www.oecd.int/olis>), "Employment rates and unemployment rates, by aggregated levels of educational attainment, trends," 검색일자: 2017년 3월 3일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고졸자 취업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학력중심의
고용관행을개선하고
능력중심의 인재 채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회단체와 정부기관의
노력은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지난 15년 동안, 주요국의 경우 고졸자 고용률은 다소 하락한 것으로 관찰되고 있으나, 2.4%p(2015년 81.8%) 증가한 독일과 함께 우리나라는 1.1%p(2015년 6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고졸자 채용환경의 변화

공공기관이 모범적 고용주로서 고용생태계의 채용문화를 개선시키기 위한 변화주도자의(Change Agent)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그 자체적으로 직업 안정성이 높아 선호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는 없다. 공공기관의 사회형평적 채용이 중요한 까닭도 이 때문이다. 사회형평적 관점에서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학력차별을 폐지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최근에 시작된 것은 아니다. 학력중심의 고용관행을 개선하고 능력중심의 인재 채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회단체와 정부기관의 노력은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학력에 의한 차별 철폐를 권고하기 이전부터 ‘열린 채용’을 도입하여 실시하였던 경험들이 있다.²⁾

공공부문에서 학력기준의 채용관행이 구체적인 쟁점으로 대두된 것은 2003년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차별연구회’가 학력과 연령을 기준으로 채용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학력제한 철폐를 권고하였으며, 2007년 당시 기획예산처가 모범적 고용주로서 공공기관의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공공기관 인사지침에 반영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실제 이러한 학력철폐 노력은 사회적으로 확산, 기대성과로 실현되기보다는 본래 정책취지와 정반대로 고졸자의 취업을 더욱 힘들게 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1998년 경제위기 등에 따라 고용이 경색되면서 기업들의 채용 규모가 감소하였고, 학력제한이 철폐되자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자들이 대졸직급 공채뿐만 아니라, 고졸 수준 인력채용을 위한 영역에도 진입하면서 고용생태계에서 직무의 특성과 전문성 수준에 따라 인력공급이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이 오히려 퇴색되었다. 즉, 고졸인력과 고학력 인력이 경쟁하는 구조로 왜곡된 것이다. 일자리는 제한되어 있는 가운데, 대학진학률이 70~80%대로 유지되면서 고학력자들이 계속 늘어났으며, 학력철폐조치는 오히려 고졸자의 고

2) 김동원 외(2009), pp. 46~54.

용기회를 잠식하여 취업난을 심화시켰다. 채용을 인력관리시스템의 부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현장 실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인력관리와 단절된 단편적인 사안으로만 한정하여 인식한 오류가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다. 결과적으로, 근시안적 시각에서 이론적 가치에만 치중하여 추진된 학력철폐가 ‘고졸자’를 오히려 대표적인 사회형평적 채용의 대상으로 아직까지 남아있게 만든 것이 현실이다.³⁾

3. 최근 동향

정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채용에 대한 정책방향은 일정 부분 수렴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어 왔다. 사회형평적 채용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기 시작한 이후, 사회적으로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직업교육 대상자들의 진학률이 하락하고, 취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전체 고졸자들의 취업성향을 근거로 한 정책효과성에 대해 정밀한 분석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고졸자의 취업은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과 노동시장 진입 수월성의 연계구조가 확보될 때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동안 대학진학에 매몰되었던 직업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다소 해소할 수 있는 징조이기 때문이다.

[그림 5]에 나타난 그래프의 궤적은 우리나라 고졸자 취업환경과 경향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000년 전후부터 2010년도까지 학력중심의 고용관행으로 인해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전문계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조차도 졸업 후에 오히려 취업보다는 진학을 선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2001년도 전문계고 졸업자들의 취업률(48.4%)과 진학률(44.9%)이 유사하였지만 진학률은 계속 증가하여, 2009년도에는 2배 가까이 증가하여 73.5%로 정점을 이뤘다. 동 기간에 직업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취업률은 16.7%로 하락하여,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줄어든 것은 고용생태계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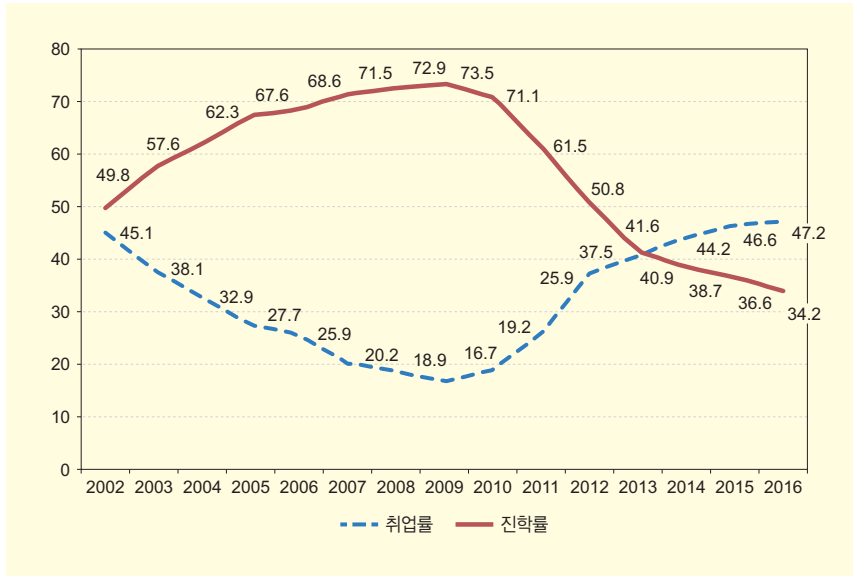
**정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채용에 대한
정책방향은
일정부분 수렴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어 왔다.**

3) 박한준 외(2012), pp. 98~117.
4) 김세움 외(2010), pp. 146~150.

사회형평적
채용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기
시작한 이후,
직업교육 대상자들의
진학률이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취업률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5] 고교 직업교육 대상자 취업률 및 진학률 추이

(단위: %)



출처: KEDI 교육기본통계

정부의 고졸자 채용 확대를 위한 정책드라이브와 관련하여, [그림 5]에 나타난 그래프 궤적에서 관찰되는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길지 않은 관측결과이지만, 2013년 이후 확인되는 변화는 직업교육을 받은 고졸자의 행태 변화이다. 사회형평적 채용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기 시작한 이후, 직업교육 대상자들의 진학률이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취업률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고학력자조차도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것을 수년간 경험한 결과로 나타난 행태 변화인지, 정부정책의 효과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단 정책효과성에 대한 정밀한 분석 이전에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하겠다. 고졸자 채용 확대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정책어젠다로 공식화되면서, 직업교육을 받은 고졸자들의 취업률이 증가 추세인 점은 공공기관이 고용생태계 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따라 정부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신규채용의 20%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다수 관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공공기관의 고졸자 채용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최근 몇 년간의 변화는 내부적 수요에 따른 변

화라기보다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른 성과라고 하겠다.

VI. 향후 쟁점과 정책적 고려

청년 고용절벽으로 인해 냉각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형평적 채용제도는 과거 학벌이나 스펙중심의 선발관행을 개선하려는 정책적 노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역차별이라고 지적하는 부정적 입장에서는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회형평적 채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용생태계뿐만 아니라, 조직의 인력관리시스템에 대한 거시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공부문이 중요한 사용자 지위를 가지고 모범적인 고용문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의 ‘test-bed’로서의 역할과 선도적 기능이 선언적 수준에서 그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고졸자 채용의 경우에도 선발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서는 직무중심의 접근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획일적으로 재단된 기준을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보다는 기관별 사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하며, 조직별 직무구조를 정확하게 분석한 후에 적합 직무와 경력 경로를 고려하여 선발하는 합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폐쇄적이고 계급제적인 조직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와 인력관리 관행을 혁신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직혁신이 없이는 ‘선(先)취업, 후(後)진학’이라는 고졸자 채용슬로건도 기존의 폐쇄적이고 계급제적 전통과 연공적 임금체계를 보호하려는 조직내부의 이해관계를 강화하는 편법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비수도권 인재 채용, 이 전지역 인재 채용과 같은 사회형평적 채용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지만, 이러한 채용의 필요성도 합리적 인력관리시스템의 틀 안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본질적인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지 시혜적 차원으로만 접근한다면,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집단으로 오해받기 쉬우며, 공공영역을 더욱 병들게 할 개연성을 높일 수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시스템도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는 사전적인 정보가 없이, 채용과정에서 고용주와 지원자가 상호간 탐색을 통해 적합한 인재

**조직혁신이 없이는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고졸자 채용슬로건도
기존의 폐쇄적이고
계급제적 전통과
연공적 임금체계를
보호하려는 조직내부의
이해관계를
강화하는 편법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일관되고
명확한 정책시그널을
유지하여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를 선발하는 데 있다. 하지만, 블라인드 채용이 비수도권과 지역인재 채용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는 단순한 기대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과거 채용과정에서 학력기준 철폐가 오히려 고졸자들의 취업을 더욱 힘들게 하였던 상황과 유사한 부작용과 위험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도의 기본 취지뿐만 아니라, 발생 가능한 다양한 잠재적 결과를 예측하여 정교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 블라인드 채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입사지원서를 개선하는 것보다 본질적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과거 어느 채용시스템보다 선발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될 것이다. 무엇보다 공공기관들이 블라인드 채용을 거쳐 적합한 인력을 선발할 수 있는 채용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전문적 채용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인적 정보가 차단된 블라인드 채용이 진행될 경우, 사적 관계에 의존하거나 청탁에 의한 선발압력 및 부정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또는 선발의 객관성 및 공정성 논란을 피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서류전형이나 면접보다는 필기시험 결과에 따라 선발하는 채용방식을 선택할 개연성이 높다. 순환보직으로 인사업무에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채용역량으로는 블라인드 채용의 본질적 취지를 실현하기 어렵다. 전문인력 중심으로 조직화하여 인사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경험을 축적해오고 있는 민간사례를 살펴볼 필요도 있다.

다양한 정책들 간의 일관성 확보도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하겠다. 예를 들면, 고졸자 채용의 경우에도, 정책 전반의 일관성과 신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학진학률이 70%를 넘는 현실에서 고졸자 채용 확대와 반값등록금에 대한 논의는 정책취지가 상반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용정책과 교육정책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정부, 공공기관, 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 간 이해관계가 상충된다면 정책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일관되고 명확한 정책시그널을 유지하여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⁵⁾ 사회형평적 채용을 시혜적 관점에서 확대하면서, 공공기관의 효율성, 생산성,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형평적 채용은 합리적 인력관리에 기반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 주도의 사회형평적 채용이 아닌 개별 고용주체인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진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장애인이나 여성인력에 대한 사회형평적 채용의 법적 권고수준을 준수하고, 확대하기보다는 미준수기관에 부과되는

5) 박한준(2012), p. 17.

페널티를 선호하는 현상은 정부 주도의 통제중심적 접근방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밖에도 공공부문의 여성 관리자 비중, 여성임원의 비중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이슈들도 공공기관 인력관리의 사회형평적 관점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단편적인 목표나 할당기준을 제시하는 방식보다는 합리적 인력관리의 틀 안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될 때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제고되고, 모범적 고용주로서의 의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김동원 외, 『기업체 신입사원 선발 시 학력제한 철폐의 효과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
- 김세움 외, 『학력별 노동시장 미스매치 분석과 교육제도 개선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10.
- 박한준 외, 『고용정책 다변화 추진과제별 공공기관의 인력관리 현황과 방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 박한준, 「공공기관의 열린 채용: 고졸인력 채용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 『재정포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웹 사이트〉

- 교육통계연보, <http://cesi.kedi.re.kr/index.jsp>
- OECD 통계, <https://www.oecd.org>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html>

미국의 가치 기반 의료비 지불 제도와 시사점

I. 서론



김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whkim@kipf.re.kr)

환자가 제공받은 의료 서비스에 대해 얼마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적절한지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시장에 의한 가격 결정은 효율적이지만, 지불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환자를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렵다.¹⁾ 따라서 세계 각국의 정부는 다양한 형태로 의료 서비스 전달에 개입하여, 서비스의 적절한 대가를 의료 공급자에게 지불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들에게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한다.

하지만 정부가 개입하여 의료 서비스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문제 또한 쉽지 않다. 첫째로, 어떤 치료법을 어느 정도의 양으로 제공하는가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은 거의 전적으로 의료 공급자의 전문적 지식과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환자나 정부가 의료 서비스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²⁾ 둘째로, 의료 서비스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의료 공급자는 지불자(payor)에게 청구서를 제출하는데, 청구서 자료에는 매우 제한된 정보만이 기록되어 진단과 치료법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정보가 확보된다고 해도 어떠한 잣대로 의료 서비스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학자들은 질보정 수명(Quality-Adjusted Life Years), 점증적 비용 효과비율(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등을 이용해서 비용-편익 분석을 하지만, 작은 생존의 확률이라도 기대하고 싶은 환자 및 가족들에게 이러한 분석 방법들은 이해되기 어렵다.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는 이러한 배경하에 고안된 지불 방식이다. 환

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료 공급자의 노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공급자가 선택한 치료법이 제공될 때마다 정해진 수가를 지급한다. 이론적으로 의료 수가는 재료, 의사의 시간에 대한 보수, 의료 분쟁을 대비한 보험료, 의사가 되기 위해 소요된 기회 비용 등 서비스 공급에 관련된 제반 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되도록 설계된다.³⁾ 행위별 수가제하에서 공급자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별 수가제가 의료 공급자의 과잉 진료를 유인한다는 지적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전체 의료비의 3분의 1 이상이 국민 보건 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낭비라는 연구 결과가 여러 차례 발표되었고,⁴⁾ 행위별 수가제가 유인하는 과잉 진료(over-treatment)가 낭비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⁵⁾ 따라서 행위별 수가제의 단점을 극복하는 새로운 지불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은 대부분의 정책 입안자들과 학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현재 한국의 행위별 수가 제도는 미국의 자원 기반 상대가치 점수제(Resource-Based Relative Value Scale)와 동일한 원리로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의 의료비 지불 제도의 변화는 한국의 의료 수가 체계에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의료비 지불 제도의 변천과 더불어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의료 질(quality)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의료비 지불 제도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향후 한국의 제도 개선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⁶⁾ 또한 가파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를 기반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의료비 지출을 제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의료비 지불 제도 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I. 미국 의사 진료비 지불 체계

미국은 GDP 대비 전체 의료비 비중이 17.8%(2015년 기준, CMS⁷⁾ 통계)에 이르며, 이는 연방 재정 적자의 주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⁸⁾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고 이에 기반한 정책들이 시행되었다. 예를 들어, 의료 수요자의 자기 부담금과 의료 서비스 수요 간의 관계가 밝혀진 이후,⁹⁾ 자기부담금(deductible)이나 비용분담(copayment) 등 의료 수요자의 부담을 높

- 1)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졸업식장에서 선서하는 '제네바 선언(1948년)'의 문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 2) Dranove et al.(2003)
- 3) Hsiao et al.(1988), p. 2430.
- 4) Berwick and Hackbarth(2012), p. 1514., Fisher et al.(2003a), Fisher et al.(2003b)
- 5) Berwick and Hackbarth(2012), p. 1514.
- 6) 한국과 달리, 미국은 병원 진료와 의사 진료의 청구 내역이 구분되어 있고, 이에 맞춰 65세 이상 환자의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메디케어도 여러 파트로 구분되어 있다. 이 글에서 소개하려는 질 기반 지불 제도(Quality Payment System)는 의사(physician)의 지불 체계의 변화이므로, 앞으로의 논의는 의사 진료비나 외래 진료비를 보장하는 메디케어 파트 B를 중심으로 전개한다.
- 7) 공적 의료보험 서비스센터(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
- 8) 의회 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의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어린이 의료 보험, 오바마케어의 보조금 지급 등으로 연방 정부가 약 1조 300억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16 to 2026".
- 9) Manning et al.(1987)

여 수요를 억제하려는 장치들은 다양한 의료 보험 상품에 포함되어 있다.¹⁰⁾

의료 공급자 측면에서 공급자가 효율적으로 의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불 체계를 설계하는 과정보다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1992년 이전까지 메디케어 담당 의사들은 진료에 대한 (1) 의사 본인이 청구한 금액 (2) 의사의 일반적인 청구 금액 (3) 지역의 평균적인 청구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관행수가를 지급받아 왔지만, 이러한 지불 방식은 의사들이 과다 청구를 하는 유인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하버드 대학 Hsiao 교수팀의 연구 결과에 따라, 1992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료 서비스 가격을 고정시키는 자원 기반 상대 가치 점수제를 도입하였다.¹¹⁾ 진료 행위에 투입되는 의사의 시간과 노력, 치료 재료 및 의료 분쟁 관련 위험 등을 고려해 상대점수를 책정한 후, 점당 가격인 환산지수(conversion factor)를 곱하여 모든 진료 행위의 가격을 사전적(prospective)으로 결정했다.

이러한 사전적인 통제가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전체 의료비는 가격(price)과 양(volume)을 곱한 값이므로 의료 서비스 양의 증가세를 늦추기에는 여전히 부족했다. 1997년 균형재정법(the Balanced Budget Act)을 통해 전체 의사 진료비 증가율을 GDP 증가율 등 여러 관련 변수들에 연동시키는 지속가능한 진료비 목표 증가율(Sustainable Growth Rate, SGR) 방식이 고안되었다. 즉, 경제 성장을 비롯한 여러 경제적 상황에 연동하여 의료 수가가 자동적으로 조정됨으로써,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의료비 지출을 달성하도록 설계한 것이다.¹²⁾ 구체적으로 (1) 당해 실제 전체 의료비(*Actual*₂₀₁₄)가 당해 목표 의료비(*Target*₂₀₁₄)를 넘어설 경우와 (2) 누적 실제 전체 의료비(*Actual*_{4/96-12/14})가 누적 목표치(*Target*_{4/96-12/14})를 넘어설 경우, 의료비 통제를 위해 다음의 환산지수를 조정 지수(Update Adjustment Factor)를 통해 하향 조정한다 (<<식 1>>¹³⁾참고).

<식 1> SGR의 조정 지수(UAF) 계산식(2015년에 적용되는 예)

$$UAF_{2015} = \frac{Target_{2014} - Actual_{2014}}{Actual_{2014}} \times 0.75 + \frac{Target_{4/96-12/14} - Actual_{4/96-12/14}}{Actual_{2014} \times (1 + SGR_{2015})} \times 0.33$$

주: 당해와 누적의 목표치 및 실제 의료비의 차이는 각각 0.75와 0.33의 가중치가 부여됨
출처: Estimated Sustainable Growth Rate and Conversion Factor, for Medicare Payments to Physicians in 2015, CMS

10) Manning et al.(1987), Kowalski(2016)

11) Hsiao et al.(1988)

12) 한국도 미국과 동일한 원리의 자원 기반 상대 가치 점수제를 행위별 추가제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사회 문화적 차이로 인해 운영하는 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다. 크게 다른 점 중 하나는 환산지수를 매년 업데이트하는 과정인데, 미국의 경우 SGR 방식을 통해 법률로 환산지수의 상승률을 적정 수준으로 통제하려 했던 반면(Seidenwurm & Burleson, 2014), 한국의 경우 의료기관 종별 대표들과 건강보험공단과의 계약을 통해 매년 환산지수를 결정하고 있다. 한국의 상황은 뒤에서 자세히 논의된다.

13) (1) 추정된 의사 진료비의 변화율 (2) 추정된 메디케어 가입자 수 변화율 (3) 추정된 인당 실질 GDP 변화율(10년 이동평균) (4) 법·제도 변화에 의한 추정 의료비 지출 변화율 등의 정보가 반영되어 목표 증가율(SGR)이 계산되며, 목표 의료비 증가율(Target)은 SGR의 정보가 반영되어 결정된다.

하지만 실제의 법 적용은 쉽지 않았다. 2000년대 초반 경기가 둔화되면서 기존에 설계된 방식으로 의료 수가를 낮춰야 했지만, 의료 공급자 단체의 반대가 거셌다. 또한, 공보험 의료 수가의 하락으로 민간 의료보험사를 통한 수가와 의 격차가 커질 경우, 의사들이 임의로 공보험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법에 의해 예정된 의료 수가 조정을 미루는 한시적인 법률들¹⁴⁾이 2002년부터 2014년까지 17차례에 걸쳐 통과되면서 규제 법률과 실제 운영은 상당한 괴리를 갖게 되었다.¹⁵⁾

이러한 총량 규제법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후, 미국 정부는 제공된 의료 서비스의 가치(value)를 미시적으로 평가해서 이를 의료 수가에 연동시켜 공급자의 효율적인 자원 사용을 유인하는 방법을 새롭게 도입했다. 2015년 의료보험 가입과 주(州)아동건강보험 프로그램 재인가에 관한 법(The Medicare Access and CHIP Reauthorization Act, MACRA)을 통해 SGR방식을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2017년부터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적합성과 효율성을 평가하여 금전적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하는 의료 수가 체계를 발표하였다. 상당수의 의사들이 제도 도입에 반대했지만, SGR 방식에 의해 예정된 상당한 수준의 수가 하락¹⁶⁾을 실행하지 않고 영구히 폐지한 것에 대한 대가로 정부가 의료 공급자 단체에 대한 협상력을 얻어내 법안 통과가 가능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절에서는 2017년 도입된 의료 질 기반 지불 제도(Quality Payment Program) 도입을 위한 미국 정부의 사전 노력들과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Ⅲ. 주요 가치 기반 의료비 지불 제도의 소개

지난 10여년 동안 미국 정부는 의료 서비스의 가치에 근거하여 의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미국 정부의 노력들을 살펴봄으로써, 가치 기반 의료비 지불 제도의 도입 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미국 정부는 제공된 의료 서비스의 가치를 미시적으로 평가해서 이를 의료 수가에 연동시켜 공급자의 효율적인 자원 사용을 유인하는 방법을 새롭게 도입했다.

14) doc fix라고 불린다.

15) Guterman(2014), p. 2261.

16) 2015년 당시, SGR에 따라 약 -21%의 환산지수 조정이 예정되어 있었다.

1. 전자의료기록 인센티브 제도(Electronic Health Records Incentive Programs)

2009년 미국 경제회복 및 재투자 방안 법안(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을 통해, 의료 공급자가 인증된 전자 의료 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EHR)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 시스템을 현장에서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meaningful use) 장려하는 정책이 마련되었다. 의료 관련 정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급자의 의사 결정에 효과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각 공급자의 의료 행위 평가에 이용되는 기초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는 인프라 구축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인증된 전자 의료 기록을 CMS가 정한 의미 있는 방식¹⁷⁾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면 최대 44,000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¹⁸⁾ 2016년 말까지 493,136명의 의사와 4,949개의 병원이 메디케어 프로그램으로 약 238억달러,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으로 약 113억달러의 보너스를 받았다. 한편 2015년부터 전자 의료 기록 시스템의 의미 있는 사용(meaningful use)을 증명하지 못하는 공급자는 공급자별 메디케어 환자 총진료비의 1%를 시작으로, 2016년 2%, 2017~2018년 3%의 페널티를 받게 된다.

2. 진료 성과 보고 프로그램(Physician Quality Reporting System, PQRS)

개인 의사 혹은 의사 그룹이 본인들의 의료 서비스 질(quality) 관련 정보를 CMS에 제공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2007년에 시작되었다. 질 평가 관련 정보를 규정된 조건에 맞춰 CMS에 신고한 의사 및 의사 그룹에 2007년 공급자별 메디케어 환자 총진료비의 1.5%에 해당되는 보너스를 제공했다. 이후 2010년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일명 Obamacare)을 통해, 인센티브의 규모를 줄이고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부여되는 방식으로 정책이 변화되었다. 2015년 공급자별 메디케어 환자 총진료비의 1.5%였던 페널티는 현재 2%까지 확대되어 있다¹⁹⁾(〈표 1〉참고).

17) 전자의료기록을 의미 있게 사용(meaningful use)한다는 의미는 연방정부가 3단계로 정의하여, 전자의료기록의 도입 과정부터 임상 의사 결정 지원, 통합된 서비스 전달 체계, 정보 교환에 이르는 광범위한 평가 항목을 제시했다. 자세한 규정은 CMS의 Electronic Health Records(EHR) Incentive Programs 소개 참고

<https://www.cms.gov/Regulations-and-Guidance/Legislation/EHRIncentivePrograms/index.html?redirect=/ehrincentiveprograms/> 접속 일자: 2017년 7월 17일

18) 5년간 지원을 받을 경우 최대 금액. 2012년 이후 참여하는 의사 및 병원의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 인센티브의 규모는 점차 감소되었다.

19) 제출된 의료 질 평가는 2년 뒤의 메디케어 파트 B 진료비 지급에 반영된다. 즉, 2016년에 제출된 자료의 질 평가 결과는 2018년 진료비 대금 전체를 받을 수 있는가 혹은 2% 적게 대금을 받는가를 결정한다.

〈표 1〉 진료 성과 보고 프로그램의 인센티브 구조와 의료 공급자 참여율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보너스	1.5	1.5	2.0	2.0	1.0	0.5	0.5	0.5			
페널티									-1.5	-2.0	-2.0
참여율	15.1	16.0	20.9	25.8	29.1	36.3	51.2	62.2	-	-	-

출처: CMS 2014 Reporting Experience Including Trends(2007~2015)
<https://www.cms.gov/Medicare/Quality-Initiatives-Patient-Assessment-Instruments/PQRS/index.html?redirect=PQRJ/>, 접속일자: 2017년 7월 17일을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

의료 서비스의 성과 항목은 (1) 환자 안전(Patient Safety) (2) 환자 및 간병인 경험 지수(Person and Caregiver-Centered Experience and Outcomes) (3) 서비스 과정에서의 의견 교환 정도와 서비스 통합도(Communication and Care Coordination), (4) 효과적 임상치료(Effective Clinical Care), (5) 지역 보건지수(Community/Population Health), (6) 효율성과 비용 절감(Efficiency and Cost Reduction)의 총 6개 분야 300여개 항목이 마련되어 있으며, 의료 공급자는 최소 3개 분야의 총 9개 이상 항목을 선택하여 본인의 실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각 항목은 주로 어떠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혹은 제공되지 않아야) 하는 해당 환자의 수를 분모로 하고, 실제로 해당 서비스가 환자에게 제공되었는지(혹은 제공되지 않았는지)를 분자로 하는 비율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떤 방식으로 실적 정보가 보고되는지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2016년 7월 5일에 외래 의료 서비스를 받은 환자의 청구서 [그림 1]의 예를 살펴보자. 의사의 진료실에서 의료 서비스(99213)를 받은 환자의 청구서에는 골다공증(M80.069A), 불안정 협심증(I20.0), 고혈압(I10)의 진단명이 있으며, 골다공증 약물 치료(4005F), 요실금 관련 진단 여부(1090F), 아스피린 혹은 항혈전제 처방(G8598), 수축기 혈압 140mmHg 이하인지(G8752),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인지(G8754) 등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모두 종합되어, 아래와 같은 평가지표에 각각 반영될 수 있다.

- 1) (PQRS 41) 50세 이상의 골다공증을 가진 환자가 약물 처방을 받았는가?
- 2) (PQRS 48) 65세 이상의 여성 환자가 진료 도중 요실금 증상에 대한 문의를 받았는가?

의료 서비스의 성과 항목은 환자 안전, 환자 및 간병인 경험지수, 서비스 과정에서의 의견 교환 정도와 서비스 통합도, 효과적 임상치료, 지역보건지수, 효율성과 비용 절감의 총 6개 분야 300여개 항목이 마련되어 있다.

현재 CMS에서 Physician Compare 사이트에 평가지표 결과의 일부를 각 의사별로 공개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환자들이 의료 공급자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3) (PQRS 204) 심장 질환 수술 경력이 있거나, 허혈 혈관 질환이 있는 18세 이상의 환자에게 아스피린 혹은 다른 항혈전제를 처방했는가?
- 4) (PQRS 236) 18세 이상 85세 이하의 고혈압 경력이 있는 환자의 혈압이 140/90mmHg 이하로 관리되고 있는가?

현재 CMS에서 Physician Compare 사이트²⁰⁾에 이러한 평가지표 결과의 일부를 각 의사별로 공개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환자들이 의료 공급자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림 1] 진료 후 CMS에 제출하는 청구 내역서의 예

출처: 2016 Physician Quality Reporting System (PQRS): Implementation Guide, CMS
https://www.cms.gov/medicare/quality-initiatives-patient-assessment-instruments/pqrs/download/2016_pqrs_implementationguide.pdf 접속일자: 2017년 7월 17일

의료 행위의 어떠한 질적 정보를 어떠한 기준으로 얼마나 객관적으로 취합할 수 있는가가 의료 질 기반 지불 제도의 핵심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적지 않은 관련업계 종사자들은 의사의 의료 서비스란 다양한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적지 않은 비체계적인 위험(idiosyncratic risk)을 감수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므로 300여개 남짓의 평가지표는 복잡한 의료 행위를 정당하게 평가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며,²¹⁾ 정보 제출을 위한 행정 비용을 부담스러워한다.²²⁾ 하지만, 평가지표는 의료 전문 분야의 더 많은 결과지표들을

20) physician compare 웹사이트 (<https://www.medicare.gov/physiciancompare/>)접속일자: 2017년 7월 17일
 21) Medical Group Management Association, Physician practice assessment: Medicare quality reporting systems, 2014.
 22) Halladay et al.(2011), Frankel and Bishop(2016), p. 841.
 23) Frankel and Bishop(2016), pp. 840~841.
 24) Dowd et al.(2016), p. 107.

수용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²³⁾ 평가지표 개발은 전문적인 의료 지식을 기반으로 의료 서비스 과정 및 그 결과를 평가해야 하는 것과 동시에 의료 공급자 전반의 대체적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의 평가지표가 개발되고 적용되기까지 긴 검토 과정을 거치며,²⁴⁾ 전문 의료 지식을 갖춘 각 의료 분야의 학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표 2〉 참조).

〈표 2〉 진료 성과 보고 프로그램의 평가지표의 예

번호	평가 항목 명칭	항목 설명	항목 구분	항목 개발 주체
102	전립선암: 저위험의 전립선암 환자에게 뼈 스캔(bone scan)의 과다 이용을 방지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이후로, 외과수술, 방사선 치료, 한랭요법 등의 치료를 받지만, 위험이 높지 않은 환자에게 뼈 스캔이 실시되지 않은 비율	효율성과 비용 절감 (Efficiency and Cost Reduction)	전미 의사협회-실적 향상을 위한 의사 컨소시엄 (American Medical Association-Physician Consortium for Performance Improvement) 미국 비뇨기과학회 (American Urological Association Education and Research)
185	대장 용종 전력이 있는 환자(고위험군)의 대장 내시경 주기-부적절한 내시경 사용의 방지	18세 이상, 이전 대장 내시경에서 용종이 발견된 전력이 있는 경우, 3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추가 대장 내시경을 받은 환자의 비율	의사소통 및 연속적인 의료 시스템 (communication and care coordination)	전미 의사협회-실적 향상을 위한 의사 컨소시엄 (American Medical Association-Physician Consortium for Performance Improvement) 미국 소화기 내과협회 (American Gastroenterological Association) 미국 소화기내시경학회 (American Society for Gastrointestinal Endoscopy) 미국 소화기학회 (American College of Gastroenterology)
402	청소년 흡연과 금연을 위한 도움 여부	12-20세의 청소년들이 1차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흡연을 하는 것이 인지되었을 경우,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와 교육, 도움을 주었는지의 비율	국민보건/ 지역사회 보건 (Community/ Population Health)	국가품질보장위원회 (National Committee for Quality Assurance) 의료 질 평가 혁신을 위한 국가 협의체 (National Collaborative for Innovation in Quality Measurement)
439	적합한 연령의 환자에게 대장 내시경 (screening colonoscopy)을 실시하는지 여부	85세 이상의 환자 중, 연중 대장 내시경을 받은 환자의 비율	효율성과 비용 절감 (Efficiency and Cost Reduction)	미국 소화기 내과협회 (American Gastroenterological Association) 미국 소화기내시경학회 (American Society for Gastrointestinal Endoscopy) 미국 소화기학회 (American College of Gastroenterology)

출처: CMS 2016 Measure List
<https://pqr.cms.gov/Government/PQRS-2016-Measure-List/pwta-f7r8/data>
 접속일자: 2017년 7월 17일

차별적 선택 행위의 발견은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 행위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평가지표들을 세심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양한 의료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해 평가지표 개발 및 개선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료 공급자들은 PQRS의 영향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 4,934명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2009년 PQRS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사에서는 절반의 의사들이 의료 서비스의 질 관련 성과지표 신고 이후에도 서비스 개선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²⁵⁾ 또한, 실증분석을 통해 PQRS 참가와 외래 민감성 입원, 재입원을, 의료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일부 공급자 그룹을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밝혀내지 못했다.²⁶⁾ 성과지표 관련 신고 행위 자체만을 근거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의 태생적인 한계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성과지표를 근거로 의료 행위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면, 본격적으로 의료 공급 행위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MS는 의료 공급자들의 성과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집된 의료 서비스의 질 관련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어서 의료 공급자가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도 관심사이다. 1990년대 초반 미국 뉴욕 주와 펜실베이니아 주는 관상동맥우회술(coronary artery bypass surgery)을 실시한 병원 및 의사의 사망률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공급자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환자들도 상대적으로 사망률이 낮은 의료 공급자를 선택함으로써 사회 후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공급자들이 상대적으로 치료하기 어려운 중증 환자의 치료를 줄이는 행동이 관찰되었다.²⁷⁾ 즉, 작은 노력으로도 높은 성공률을 보일 수 있는 경증 환자에 대한 공급자들의 선호가 증가함과 동시에, 우수하지 않은 의료 공급자들이 경증 환자를 선택해서 치료하고 성공률을 높임으로써 본인들의 낮은 실력을 일반에 공개되지 않게 하는 전략적인 선택을 한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차별적 선택(cream skimming) 행위의 발견은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 행위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평가지표들을 세심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5) Federman and Keyhani(2011), p. 230.

26) Dowd et al.(2016)

27) Dranove et al.(2003)

3. 가치 기반 지불 변동제도(Value-Based Payment Modifier, VBM)

PQRS가 의료 서비스의 질 관련 정보 제공 행위 자체를 유인한다면, 가치 기반 지불 변동제도(VBM)는 수집된 의료 서비스 질 관련 정보와 CMS에서 자체 분석한 비용 관련 정보를 조합하여, 의료 서비스의 가치와 효율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적용되며, 질적 평가로는 PQRS에 의해 수집된 정보와 함께 (1) 외래 민감성 입원(Ambulatory Care Sensitive Conditions, ACSC) 정보 (2) 퇴원 후 30일 내 병원 재입원율 등의 정보가 활용되며, 비용 평가로는 (1) 1인당 의료비 (2) 당뇨, 심장병, 만성 폐질환, 심부전 등 특정 질병의 1인당 의료비 (3) 메디케어 환자 1인당 진료비(입원 전 3일~퇴원 후 10일) 등의 정보를 활용한다. 모든 의료 질과 의료 비용 관련 변수들은 통계 기법으로 표준화되어 전국 평균 점수가 계산되고, 이 평균점수에서 1 표준편차 이상 위 아래로 벗어난 경우 “높음”과 “낮음”으로 구분된다. VBM은 재정중립적 프로그램이므로, 의료비가 하향 조정된 의사 그룹의 페널티를 통해 마련된 재정을 상향조정 대상인 의사 그룹에 보너스로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²⁸⁾

〈표 3〉 2017년도 가치 기반 지불 변동제도(Quality-Tiering)

비용 \ 질	낮음	평균	높음
9인 이하 의사 그룹에 속한 의사			
낮음	0.0%	+1.0×AF	+2.0×AF
평균	0.0%	0.0%	+1.0×AF
높음	0.0%	0.0%	0.0%
10인 이상 의사 그룹에 속한 의사			
낮음	0.0%	+2.0×AF	+4.0×AF
평균	-2.0%	0.0%	+2.0×AF
높음	-4.0%	-2.0%	0.0%

주: 재정 중립 프로그램이므로, 하향 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각 비율에 맞춰 상향 조정 그룹에 재분배함.
AF: Adjustment Factor

출처: Detailed Methodology, 2015 QRURs and the 2017 Value Modifier, CMS

가치 기반 지불 변동제도는 수집된 의료 서비스 질 관련 정보와 CMS에서 자체 분석한 비용 관련 정보를 조합하여, 의료 서비스의 가치와 효율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28)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세한 소개는 Detailed Methodology, 2015 QRURs and the 2017 Value Modifier, CMS를 참고 <https://www.cms.gov/Medicare/Medicare-Fee-for-Service-Payment/PhysicianFeedbackProgram/Downloads/Detailed-Methodology-for-the-2017-Value-Modifier-and-2015-Quality-and-Resource-Use-Report-.pdf>, 접속일자: 2017년 7월 17일

2017년은 제도 도입의 첫해이므로, 이해 당사자인 공급자들의 반발을 고려하여 해당 자료의 일부라도 보고만 하는 경우에도 페널티를 면제하는 등 조심스럽게 제도를 적용하기 시작한다.

IV. 의료 질 기반 지불 제도(Quality Payment Program)

앞서 소개되었던 EHR, PQRS, VBM 프로그램은 2018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되고, 정책들의 기본 내용이 의료 질 기반 지불 제도(Quality Payment Program)로 통합된다. 이 제도하에서, 2017년부터 의료 공급자들은 (1) 성과 기반 인센티브 제도(Merit-Based Incentive Payment System, MIPS) 혹은 (2) 대안 지불 제도(Advanced Alternative Payment Models, APM)의 두 모형 중 하나의 지불 제도를 선택하여 모형의 설계대로 의료비를 지급받게 된다. <표 4>에 향후 개략적인 제도의 인센티브 구조가 소개되어 있으며, 행위별 수가제의 뼈대는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2026년까지 환산지수의 변화(fee updates)가 거의 없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의료 질 기반 지불 제도(Quality Payment Program)의 인센티브 구조

(단위: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환산지수 변화(fee updates)	0.5	0.5	0.5	0.5	0	0	0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도(MIPS)				±4	±5	±7	±9
대안 지불 제도(APM)				5	5	5	5

주: 1. 2026년부터 환산지수는 MIPS 0.25%, APM 0.75% 인상

2. 2022년 이후 MIPS의 인센티브 및 페널티는 ±9% 유지

3. 2024년 이후 APM에 주어지는 +5% 인센티브 중단

출처: "Medicare's New Physician Payment System," *Health Policy Brief*, Robert Wood Johnson Foundation, 2016. 4. 21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우선 두 모형 중 성과 기반 인센티브 제도(MIPS)를 살펴보면 기존 제도에서 활용되었던 기본 정보들이 의료 공급자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계속 이용됨을 알 수 있다. 의료 서비스의 질(quality), 의료 비용(cost), 전자 의료 기록을 활용한 환자-의사 간 정보 교환과 환자의 의료 관련 의사 결정 참여(advancing care information), 의료 서비스 전달 개선(improvement activities) 등 총 4개의 평가 분야에서 각각의 세부 지표들이 요구하는 행위를 충족했을 경우 해당 점수를 획득하는 구조이다. 이후 각 분야의 가중치²⁹⁾로 가중평균되어 최종 점수를 받게 된다. 최종 점수는 Physician Compare 사이트를 통해 일반에도 공개될 예정이다. 2017년은 제도 도입의 첫해이므로, 이해 당사자인 공급자들의 반발을 고려하여 해당 자료의 일부라도 보고만 하는 경우에도 페널티를 면제하

29) 2017년은 제도 도입 첫해로, quality 60%, cost 0%, improvement activities 15%, advancing care information 25%로 가중치가 부여된다.

는 등 조심스럽게 제도를 적용하기 시작한다.³⁰⁾ 하지만 제도 정착 이후에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의료 서비스의 가치를 엄격하게 평가하여, 해당되는 의료 공급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센티브의 폭은 공급자별 메디케어 진료비 총액의 $\pm 4 \sim \pm 9\%$ 에 이른다.

하지만 MIPS도 결국 행위별 수가제를 지불 체계의 기반으로 하여, 제공된 의료 서비스의 가치를 근거로 지불 금액의 일부만 조정하려는 모형이다. 보너스, 페널티 등의 인센티브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 의도했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고, 그 규모가 클 경우 의료 공급자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 및 규제 당국은 장기적으로 행위별 수가제를 벗어나 대안적인 지불 제도 모형(APM)으로 의료 공급자를 유인하려는 것으로 보여진다. APM이 MIPS에 비해 더 관대한 인센티브(조건 없이 공급자별 메디케어 총진료비의 +5%)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특별한 질병의 환자 그룹, 혹은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불 모형들이 APM으로 등록되어 있고, 의료 공급자가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각 모형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큰 골격은 의료 공급자들이 통합된 의료 전달 체계(coordinated care)를 구성하여 일정 수준의 의료 서비스와 비용 발생 목표를 CMS와 계약하고, 이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절약된 금액의 일부를 의료 공급자가 인센티브로 제공받는 책임의료조직(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ACO) 구조다. 따라서, 계약 목표 달성을 위해 참여한 의료 공급자들이 효율적인 통합 의료 서비스를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유인이 있으며, 만약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비용 손실에 대한 책임이 참여한 의료 공급자에게 부과된다. 행위별 수가제에서 벗어난 효율적인 의료 자원 이용에 공급자들의 더 많은 관심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보건 의료 재정의 건전화를 달성하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장기적인 목표이다.

이와 같이 신설된 의료 질 기반 지불 제도가 복잡한 구조인 만큼, 미국 현지의 의사들에게도 아직 널리 홍보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딜로이트 컨설팅 그룹에서 미국의 의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0%의 의사가 신설된 지불 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고, 74%가 의료 질 관련 지표를 신고하는 작업이 부담스럽다고 답했으며, 약 80%가 전통적인 행위별 수가제나 월급 방식의 의료비 지불 제도를 의료 질 기반 지불 제도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밝혔다.³¹⁾ 오랜 기간 다양한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의료

오랜 기간 다양한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의료 공급자에게 가치 기반의 지불 제도를 소개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아직까지 의료 공급자들의 호응이 높지 않다.

30) 참여를 전혀 하지 않을 경우, 해당되는 해의 최대 페널티를 받게 된다.

31) Deloitte(2016)

미국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오랜 기간 해결책을 고민해 온 국가이기에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의 시행과 성패의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공급자에게 가치 기반의 지불 제도를 소개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아직까지 의료 공급자들의 호응이 높지 않다. 전문 영역인 의료 행위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 이에 근거한 지불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작업임을 알 수 있다.

V. 정책적 시사점

미국의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를 모범적인 사례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은 분명하다. 의료보험 혜택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오바마케어 실시 이후에도 2,800만명의 미보험자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으며,³²⁾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높은 자기 부담금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 미국의 보건의료 지출은 GDP 대비 16.9%(2015년 기준)로 OECD 1위이지만, 기대 수명, 영아 사망률은 OECD 국가 평균을 하회하고, 비만율은 OECD 국가 중 최대 수준이다.

하지만 미국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오랜 기간 해결책을 고민해 온 국가이기에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의 시행과 성패의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특히, 한미 양국은 자원 기반 상대 가치 점수에 근거한 동일한 행위별 수가제를 지불 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비효율적인 의료 자원 이용 행태의 개선이라는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서비스를 가치로 기반으로 한 의료비 지불 제도 구축이라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장기적인 목표에 있어서, 미국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발 앞서서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의료비 지불 제도의 현재와 문제점을 돌아보게 한다.

미국과 동일하게 한국은 자원 기반 상대 가치 점수제를 기반으로 수가표를 작성하며, 매년 병원, 의원, 치과,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 등의 종별로 환산지수를 계약을 통해 결정하고 있다. 지불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 간의 협상으로 환산지수가 결정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 소속 건강보험정책심의회가 개입하는 방식이다.

환산지수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협상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³³⁾ 연구보고서는 앞서 언급되었던 미국의 SGR법 및 지수모형³⁴⁾ 등을 고려, 여러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환산지수 증감률을 제안해왔다. 하지만 실제 협상과정에서 결정된 환산

32) 출처: National Insurance Coverage: Early Release of Estimates From the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January–September 2016, 접속일자: 2017년 7월 17일 <https://www.cdc.gov/nchs/data/nhis/earlyrelease/insur201702.pdf>

33) 김진수 외 (2010), 안태식 외 (2011), 신현웅 외 (2012), 신현웅 외 (2013), 신현웅 외 (2014), 신현웅 외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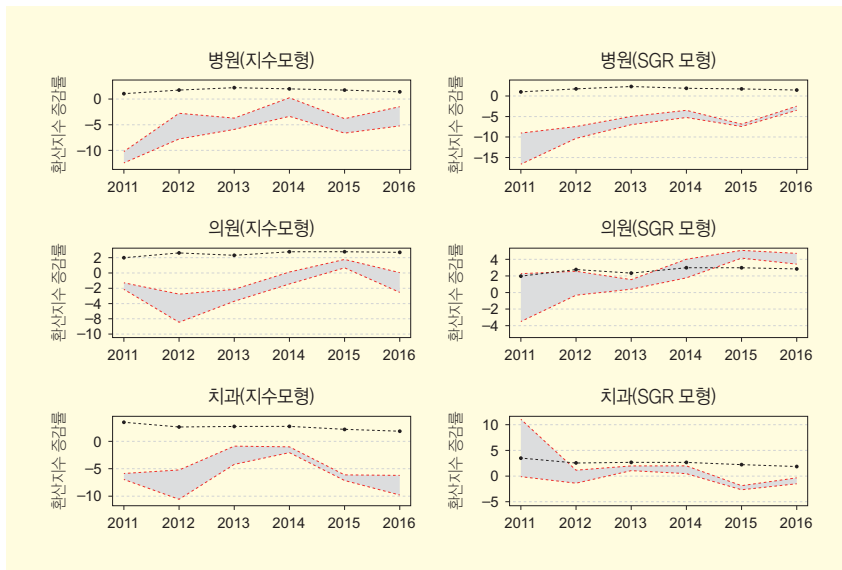
34)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의료물가지수와 요양급여 수익의 증감을 비교하여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방식

지수의 상승률은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에 의해 제안된 환산지수 증감률의 범위를 상회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 참조). 미국의 SGR방식처럼 법률로 강제된 수가 증감의 실제 적용도 쉽지 않았던 점을 비취볼 때, 연구를 통해 제안된 환산지수 증가율이 실제 협상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즉, 거시적으로 의료비의 총액을 통제하기 위한 규제의 시도가 현실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사례를 양국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장기적인 의료비 지출의 통제를 위해서 미국의 사례와 같이 미시적인 가치 기반 의료비 지불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 한국의 지수모형과 SGR모형에 따른 환산지수 증감률 제안과 실제 환산지수 결정 현황

(단위: %)



주: 회색으로 표시된 범위는 매년 환산지수 연구에서 지수모형(Index Model) 및 SGR방식(SGR Model)을 통해 제안된 환산지수 인상률이며, 검은 점선은 실제 협상 과정을 통해 확정된 환산지수 인상률임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주한 연구보고서인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자료(2011~2016년)를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

결국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장기적인 의료비 지출의 통제를 위해서 미국의 사례와 같이 미시적인 가치 기반 의료비 지불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명제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동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간 의료 서비스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여러 보건 의료 정책이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국내에서는
아직 개별 의사의
의료 질 평가를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도의 큰 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의사 개인의
의료 질 평가를 위한
단계적인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있다. 2015년 비급여 선택 진료의 단계적 축소 방침 발표 이후, 대형병원의 손실 보전을 위해 마련된 5,000억원 규모의 병원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제도와 현재 검토되고 있는 3,600억원 규모의 ‘전문 진료 의사 가산’ 제도가 그 예다. 축소된 선택 진료의 손실을 어떤 방식으로든 보전해줘야 하는데, 의료 공급자의 질적 역량을 평가하여 이것을 기반으로 경쟁적으로 보전해줌으로써,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전달이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하지는 취지이다.

의료 질 평가에 대한 경험의 부족으로 제도 검토 및 도입 과정에서 적지 않은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2017년 4월에 개정된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³⁵⁾에는 60여개의 평가지표가 마련되어 있다. 앞선 미국의 PQRS 관련 지표에 대비하여 복잡한 의료 서비스 전달 과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지표의 수가 부족하며, 각 지표의 정의도 명확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의료 서비스의 가치 평가는 전문적인 영역이며,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얽혀 있다. 따라서 각 진료 분야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절대 다수의 의료 공급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평가항목의 개발을 위해, 의료 각 전문 분야의 학회와 전문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의료 질 평가 체계를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는 국가 거버넌스 구축을 주장하는 전문가의 의견도 경청해야 한다.³⁶⁾

2017년 9월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선택 진료 의사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검토되고 있는 ‘전문 진료 의사 가산제도’ 역시 의사 개개인의 전문성 및 성과 평가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개별 의사의 의료 질 평가를 위한 기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도의 큰 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의사 개인의 의료 질 평가를 위한 단계적인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³⁷⁾ 미국의 메디케어 파트 B의 청구 자료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개별 의사의 등록번호(unique physician identification number)를 통해 각 의사의 진료 행위를 추적할 수 있으며, 이 정보가 보건 의료 연구자들에게도 공개되어 의사 개인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자유로운 연구가 가능하다. 또한 비록 제한된 정보이긴 하지만, 앞서 언급된 Physician Compare 사이트에도 개별 의사의 질적 평가 결과가 공개되어 있다.

인구 고령화 현상은 의료 비용의 증가를 야기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은 대다수가 동의한다. 의료 서비스의 질 평가와 이에 연동한 의료비 지불은 이러한 효율적 의료 자원 사용을 위해

35)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발령, 2017년 4월 11일. 등록, 발령번호: 2017-0067
http://www.mohw.go.kr/front_new/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CONT_SEQ=339083&page=1 접속일자: 2017년 7월 17일

36) 의료질향상지원금 제도 재설계, 지역별·절대평가 도입”, 메디파뉴스, 2017년 4월 5일. 기사 https://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97560&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접속일자: 2017년 7월 17일

37) 강희정 외(2016)

많은 국가들이 고려하고 있는 제도이다.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지표 마련, 이해 당사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노력, 평가를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경우,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비 지불 체계에 대한 필요성과 구체적인 도입 과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시간이 길지 않았다. 이 글에서 소개된 미국의 사례는 가치 기반의 의료비 지불 체계를 비교적 오랜 기간 고민해온 한 국가의 경험으로서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KIPF](#)

〈참고문헌〉

- 강희정 · 신영석 · 윤강재 · 조민우 · 박금령 · 김은아 · 안형석 · 서은원, 『선택진료제 개편에 따른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 시행방안 개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6.
- 김진수 외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
- 신현웅 · 정형선 · 임지원 · 황상미, 『201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2012.
- 신현웅 · 박재용 · 윤석준 · 이상영 · 하솔잎 · 이슬기, 『2014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
- 신현웅 · 이상영 · 김진현 · 신정우 · 하솔잎 · 여지영 · 이슬기, 『2015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
- 신현웅 · 신정우 · 전병욱 · 하솔잎 · 여나금 · 심보람, 『2016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 안태식 · 권순만 · 정형록 · 윤성만 · 최연식, 『2012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
- Berwick, Donald M. and Hackbarth, Andrew D., “Eliminating Waste in US Health Care,” *JAMA*, 307(14), 2012, pp. 1513~1516.
- Deloitte, “Are Physicians Ready for MACRA and its changes? Perspectives from the Deloitte Center for Health Solutions 2016 Survey of US

- Physicians,” 2016.
- Dowd, Bryan E., Swenson, Tami, Parashuram, Shriram, Coulam, Robert and Kane Robert, “PQRS Participation, Inappropriate Utilization of Health Care Services, and Medicare Expenditures,” *Medical Care Research and Review*, 73(1), 2016, pp. 106~123.
- Dranove, David, Kessler, Daniel, McClellan, Mark and Satterthwaite, Mark, “Is More Information Better? The Effects of ‘Report Cards’ on Health Care Provider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1(3), 2003, pp. 555~588.
- Federman, Alex D. and Keyhani, Salomeh, “Physicians’ participation in the Physicians’ Quality Reporting Initiative and their perceptions of its impact on quality of care,” *Health Policy*, 102(2~3), 2011, pp. 229~234.
- Fisher, Elliott S., Wennberg, David E., Stukel, Threse A., Gottlieb, Daniel J., Lucas, F. L. and Pinder, Éttoile L., “The Implications of Regional Variations in Medicare Spending. Part 1: The Content, Quality, and Accessibility of Care,” *Annals of Internal Medicine*, 138(4), 2003a, pp. 273~287.
- Fisher, Elliott S., Wennberg, David E., Stukel, Threse A., Gottlieb, Daniel J., Lucas, F. L. and Pinder, Éttoile L., “The Implications of Regional Variations in Medicare Spending. Part 2: Health Outcomes and Satisfaction with Care,” *Annals of Internal Medicine*, 138(4), 2003b, pp. 288~298.
- Frankel, Brittney A. and Bishop, Tara F., “A Cross-Sectional Assessment of the Quality of Physician Quality Reporting System Measures,” *Journal of General Internal Medicine*, 31(8), 2016, pp. 840~845.
- Guterman, Stuart, “The Doc Fix—Another Missed Opportunity,”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70(24), 2014, pp. 2261~2263.
- Halladay, Jacqueline R., Sloane Philip D., Lefebvre, Ann, Warburton Samuel W. and Wolf, Marti, “Should Your Practice Participate in a Quality-Reporting Program?,” *Family Practice Management*,

- 18(1), 2011, pp. 9~14.
- Hsiao, William C., Braun, Peter, Kelly, Nancy L. and Becker, Edmund R., "Results, Potential Effects, and Implementation Issues of the Resource-Based Relative Value Scale," *JAMA*, 260(16), 1988, pp. 2429~2438.
- Kowalski, Amanda, "Censored Quantile Instrumental Variable Estimates of the Price Elasticity of Expenditure on Medical Care," *Journal of Business and Economic Statistics*, 34(1), 2016, pp. 107~117.
- Manning, Willard G., Newhouse, Joseph P., Duan Naihua, Keeler Emmett B., Leibowitz, Arleen and Marquis Susan M., "Health Insurance and the Demand for Medical Care: Evidence from a Randomized Experiment,"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77(3), 1987, pp. 251~277.
- Seidenwurm, D.J. and Burleson, J.H., "The Medicare Conversion Factor," *American Journal of Neuroradiology*, 35(2), 2014, pp. 242~243.

2017년 세법개정(안)

- 2017년 세법개정(안)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이상길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과장
- 2017년 세법개정안 평가
강성훈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2017년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재정포럼』에서는 2017년 세법개정(안)의 추진배경 및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평가를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로부터 들어보는 특집을 마련하였다. <편집자 주>

2017년 세법개정(안)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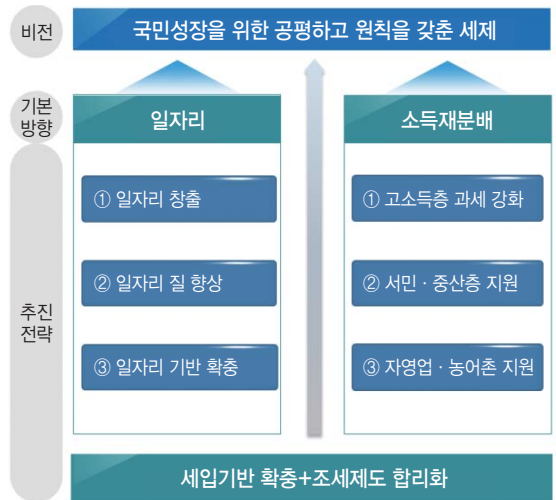
이상길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과장

I. 2017년 세법개정 여건 및 방향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및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약화 등 구조적·복합적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가계와 기업 간, 대·중소기업 간, 가계 간 소득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사회안전망의 미비로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세정책 여건하에 「2017년 세법개정(안)」은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마련하였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행 조세 지원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고,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되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은 경감하는 한편,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입기반 확충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방향

에 따라 추진된 세법개정이 일자리 확대와 양극화 해소를 통한 지속적인 국민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I. 2017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1. 일자리 창출 지원

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먼저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재설계하여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였다. 이로써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중소기업은 최대 2,000만원, 중견기업은 최대 1,4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였고, 경력단절여성이나 특성화고 졸업생을 다니던 중소기업이 재고용하는 경우 세액공제 공제율을 10%에서 30%로 인상하고 적용대상을 중견기업(15%)까지 확대하였다. 아울러 지역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수도권 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적용시 지방 이전인원이 많을수록 세제혜택이 커지도록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개선하였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법인세 감면한도 적용 시 고용기준한도를 10% 상향하였다.

나.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 확대

임금을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위해 근로소득증대세제의 세액공제율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액을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간을 취업 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고,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보전을 위해

시간당 임금을 인상시키는 경우 임금보전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하였다. 아울러,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일몰 종료하는 대신 투자·고용·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신설하여 고용 증가에 따른 임금증가분 가중치와 대기업의 협력중소기업 등에 대한 상생협력 출연금 가중치를 확대하였다.

다. 창업·벤처기업 육성 등 일자리 기반 확충 지원

창업기업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중소기업 중 고용증가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을 5년간 50%에서 최대 100% 확대하고,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신성장 서비스업종은 감면율을 5년간 50% 감면에서 초기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감면으로 확대하였다. 기술 우수기업 지원을 위해 엔젤투자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 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인수·합병 대가로 현금지급 비율 50% 초과 지급요건을 삭제하였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과 R&D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에 지원이 확대되도록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간 중복 적용을 허용하고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0%에서 최대 40%로 인상하였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한 후 2018년 말까지 재창업 또는 취업하는 경우 기존 체납세금을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면제하도록 하였고, 신성장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

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였다.

2.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강화

가.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상대적으로 담세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세 부담 적정화 등을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과표 5억원 초과 40%에서 과표 3억원 초과 40%, 과표 5억원 초과 42%로 조정하였고,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현행 20%에서 과표 3억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5%로 조정하였다.

그리고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 방지를 위해 지배주주 등의 증여세 과세대상 이익 계산방법을 변경하였고 교차·3각 일감몰아주기 등 기업집단 간에 몰아준 일감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적용요건을 추가하였으며, 대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을 확대하여 특수관계법인과외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과외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에 추가하였다.

세목 간 형평과 과세인프라가 확충된 점을 감안하여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산출세액의 7%에서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18년에는 5%, 2019년 이후에는 3%로 인하되도록 하였고, 가업상속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 납부 능력 요건을 신설하여 공제 요건을 강화하였다.

나.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EITC) 지급액을 10% 상향 조정하였고, 지급 대상도 확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한부모가구에 대해서도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장애인은 단독가구인 경우에도 연령제한(30세 이상)을 받지 않고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또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2%로 인상하고,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0년말까지 연장하였으며, 중증질환 등 건강보험산정특례자가 지급한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성실사업자의 난임시술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에서 20%로 인상하였다.

효도 장려를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부모 동거봉양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을 5년 이내 양도에서 10년 이내 양도로 완화하고,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없이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단독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구로 분류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을 확대하였다.

출산·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과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각각 1채 보유하는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을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하였다. 또한, 2018년부터 0세~5세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를 최대한 중복지원 받도록 하였고,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0년말까지 연장하였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자유로운 중도인출을 허용하여 납입원금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도 세금혜택이 유지되도록 하였으며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최대 2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확대하였다. 전통시장 및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확대하여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17년과 2018년 지출분에 대해 30%에서 40%로 인상하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2018년 7월 1일 이후 도서구입비와 공연비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15%에서 30%로 인상하면서 추가 한도 100만원을 신설하였다.

다. 자영업·농어촌 세제지원 확대

연 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 사업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2년간 8/108에서 9/109로, 중고차 매매업자의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8/108에서 10/110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의료비와 교육비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 성실사업자의 요건을 완화하여 간편장부 신고 사업자를 세액공제 대상 사업자로 추가하였고 수입금액 요건을 3년 평균액의 90% 초과에서 50% 초과로 완화하였다. 또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소기업·소상공인이 공제부금을 중도 임의해지할 때 적용되는 기타소득세율을 20%에서 15%로 인하하였다.

소규모맥주의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 유통을 허용하고 세제지원 대상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시설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주세 경감률을 확대하는 등 중·소규모 맥주제조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농어촌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위해 영어나녀가 증여받은 어선과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해 증여세를 감면하고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였으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면적 제한을 폐지하였다.

3.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가. 세입기반 확충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을 신설하여 법인세 과표 2천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환원하였으며, 대기업의 R&D 비용 세액공제 중 증가분 세액공제(30%)는 현행 유지하되 당기분은 R&D 지출액의 1~3%에서 0~2%로 축소하였고, 다른 투지지원 제도와 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생산성 향상 시설, 안전설비, 환경보전 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축소하였다. 과세형평 제고 등을 감안하여 당해연도 소득의 80%까지 허용되고 있는 대기업 등의 이월결산금 공제한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하여 2018년에는 60%, 2019년 이후에는 50%로 축소되도록 하였고, 복식부기 개인사업자의 사업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익 과세대상을 업무용 승용차에서 기계장치 등 모든 유형자산으로 확대하였다.

금융소득 과세특례 정비를 통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고배당기업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증대세제, 해외주식형펀드 비과세 및 하이일드펀드 수익에 대한 분리과세를 일몰 종료하고 장기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폐지하였다.

양도소득세의 과도한 감면을 방지하고 감면

제도 간 형평성을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5년간 2억원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전자신고가 정착단계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세무사·회계사는 연간 4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세무법인·회계법인은 연간 1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축소하였다.

또한, 농어촌공사·농협 등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중 보관업, 보호예수, 설계·감리용역, 조경사업 등 공익성이 낮고 민간과의 경합성이 높은 사업과 군인 등의 군 골프장과 숙박시설 이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하였다.

나. 세원투명성 강화

가공경비 계상 등 불성신 신고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해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부동산 임대 등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법인 등을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성실신고 확인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 공제 한도를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그리고, 사업자의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악기 소매업, 자전거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등 3개 업종을 추가하였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유도를 위해 소형 주택 임대등록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요건을 3호 이상 임대에서 1호 이상 임대로 완화하였고,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과세공급가액 3억원 이상에서 과세공급가액과 면세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전자세금

계산서와 동일하게 2019년부터 수입금액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로 확대되도록 하였다.

또한, 체납이 많은 유흥주점업 등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9년부터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역외금융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금액을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인하하였고 펀드를 통해 해외로 투자하고 받은 이자·배당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환급한도를 14%에서 10%로 축소하였다.

부채와 자본 성격을 동시에 가진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지급이자에 이를 지급받은 국외특수관계인 소재지국에서 1년 내에 과세되는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되도록 하였으며, 다국적 기업의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과다 차입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이자비용 공제제한 제도를 도입하였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거래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과세 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지분 25% 이상에서 5%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고소득 외국인 파견근로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용역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대상업종을 선박건조업, 금융업을 추가하였으며, 원천징수 세율을 17%에서 19%로 인상하였다.

또한, 관세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를 이용한 해외물품 구매와 현금 인출 내역의 관세청 통보대상을 분기별 합계 5,000달러 이상에서 실시간으로 건당 600달러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다. 조세제도 합리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주식보유 한도를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였다.

그리고,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국내투자 촉진과 국제추세 등을 감안하여 거주자 판정기준을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주에서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주로 합리화하였고, 자본소득 과세정상화를 위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을 5%에서 10%로 인상하였다.

소득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을 80%에서 2018년 70%, 2019년 60%로 유사한 사업소득의 단순경비율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였으며, 물가안정 추세 등을 감안하여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과 기간을 연 3%, 10년 보유시 30% 공제에서 연 2%, 15년 보유시 30% 공제로 조정하였다. 또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발전용 유연탄과 LNG의 발열량 차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율을 kg당 6원 인상하였다.

라.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납세자의 세무조사 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을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였으며, 세무조사 종료시 조사내용 등 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통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세무서·지방청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납세자의 재심 기회를 부여하되, 독립성 확보를 위


해 납세자보호관 외 8인은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추천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하였다.

Ⅲ. 세법개정 효과 및 향후 추진일정

1. 세법개정 세수효과

금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연간 5조 5천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주요 증가 원인은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조정, 발전용 유연탄 세율 조정, 주식 양도소득세율 조정 및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이며, 주요 감소요인은 고용증대세제 신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및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 등이다. 이를 세부담 귀착 측면에서 분석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이 연간 6조 3천억원 증가하는 반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연간 8천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향후 추진일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3개 세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8월 중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일 까지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제출된 세법개정안은 국회 법안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17년 세법개정안 평가



강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I.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저성장기조하에서 청년 실업률 문제가 심각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청년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2016년 기준 청년 실업률은 9.8%로 전체 실업률의 2.5배 이상이다. 또한 최근 청년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증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실업자에서 청년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으로 나타난다. 이는 우리나라의 고용 시장에서 청년실업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준다(오종현 · 최충,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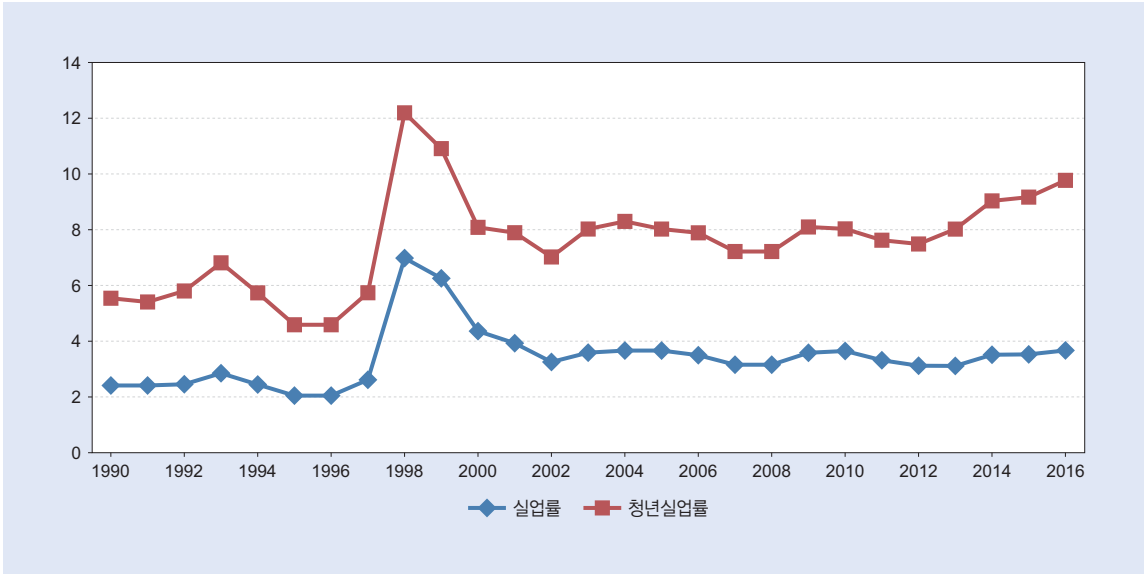
한편, 최근 우리나라는 사회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시장소득에 대한 P90/P10 배율은 2006년 기준 5.57이었으나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는 8.62가 되었다. 2016년 P90/P10 배율인 8.62는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의 시장소득이 소득 하위 10%에 해당하는 사람의 시장

소득의 약 8.6배임을 보여준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부(wealth)의 불평등도 문제다. 강성훈(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 순자산 기준 가장 부유한 10분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의 평균 순자산은 약 12억원이며, 이는 5분위 계층의 경우보다 약 8배 높은 수준이다. 또한 순자산 기준 가장 가난한 1분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의 평균 순자산은 0보다 작게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8월 2일에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은 이러한 배경하에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재분배 개선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적극 반영되어 있다. 동시에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증세방안이 제시된 점이다. 이는 정부가 과거 “증세 없는 복지”에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증세 있는 복지”로 전환한 것을 의미한다. 이번 증세방안의 특징은 보편적 증세가 아닌 고소득자와 고자산가에 대한 증세이다. 증세 방안을 보면 과세표준 3억원 초과자의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였다. 고자산가에 대한 상속·증

[그림 1] 실업률과 청년실업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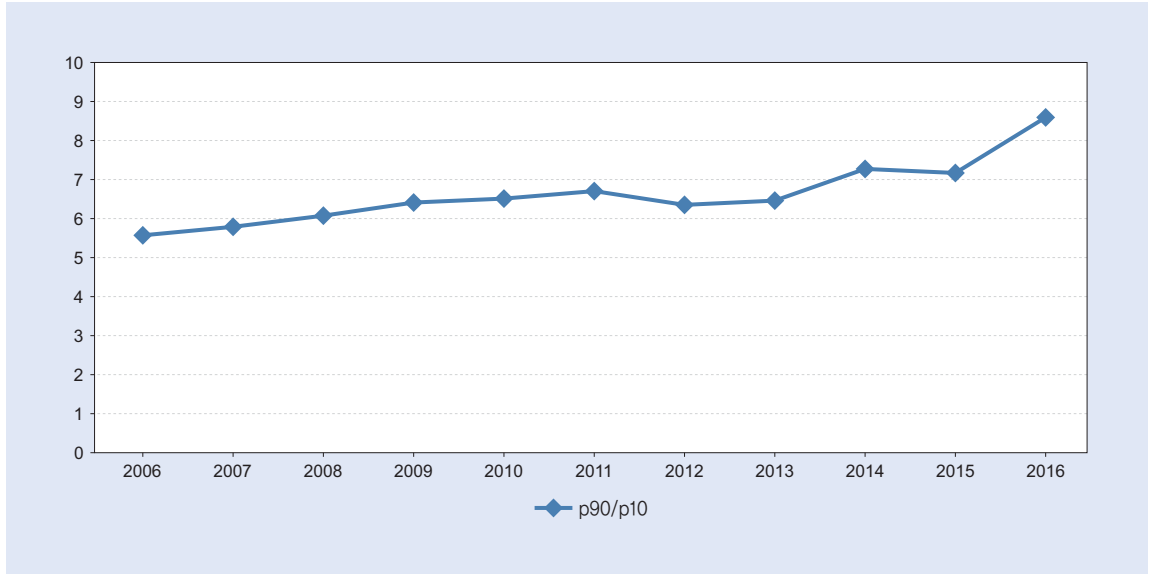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여세가 강화되었고, 주로 고자산가에게 유리했던 금융자산 관련 조세특례도 일몰종료되거나 폐지되었다. 과세표준이 2,000억원 이상 법인의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였고,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축소되었다.

전반적으로 이번 세법개정안의 방향은 바람직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법개정안의 정책효과에 있어서는 다소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본고는 「2017년 세법개정안」을 일자리 지원,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그리고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로 구분하여 전반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되, 일부 중요한 제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검토한다.

[그림 2] 전체 P90/P10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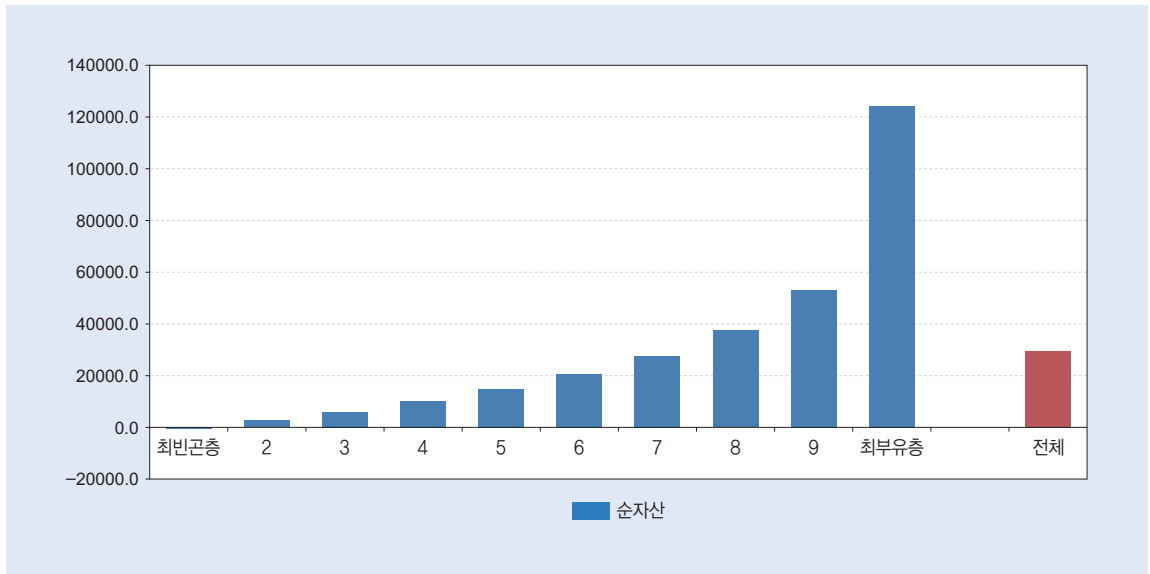
(단위: %)



출처: 통계청, 「소득분배지표」, 각연도

[그림 3] 자산분위별 평균 순자산 규모

(단위: 만원)



출처: 강성훈(2017, p. 7) [그림 II-3] 자산분위별 평균 순자산 규모

II. 「2017년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2017년 세법개정안」은 일자리와 소득분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나타난다. 이는 세법개정안의 부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겠습니다”에서도 잘 나타난다. 일자리 부분의 경우, 크게 일자리 창출 정책과 일자리 질을 높이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1〉 일자리 지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증대세제 신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지역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외국인투자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기업 M&A 등 조직 변경 시 세제지원 요건에 대한 고용승계요건 추가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금 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 연장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몰 종료)
창업·벤처기업 육성 등 일자리 기반 확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창출형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중소기업 지원세제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재기 자영업자·벤처 창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출처: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소득재분배 부분의 경우, 정부는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3억원 초과~5억원 미만] 과세표준 구간과 [5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42%로 상향조정하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또한 고자산가에 대해서도 상

속·증여세 강화방안과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이 제시되었다.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상과 함께 정부는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서민 및 중산층과 자영업·농어촌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표 2〉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기업상속 지원제도 개선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주거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의료비 세액공제(15%) 확대 효도 장려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출산·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 전통시장,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자영업·농어촌 세제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식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 성실사업자의 범위 확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 시 세율 인하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대상 확대 소규모주주제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농어촌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출처: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이번 세법개정안의 특징 중 하나는 다양한 증세방안이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세법개정안에 제시된 증세방안은 소위 고소득자·고자산가와 대기업 증세로 설명될 수 있다. 정부의 복지정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소득자·고자산가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법개정안은 소득세율의 최고세율이 인상되는 방안과 상속·증여세 강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이와 더불어 법인세의 최고세율도 인상되었다. 그리고 대기업 R&D 비용 세액공제 축소,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 등 대기업에 대한 세 부담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조세지출제도가 개편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비과세 및 감면제도 중 정책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일몰종료 및 폐지되거나 축소되었는데, 일몰종료 및 폐지된 과세특례제도의 대부분은 고자산가에게 유리했던 금융소득 과세 특례제도이다.

그 밖에도 세법개정안에는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방안으로 과세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형평성 개선방안, 조세행정 및 납세순응비용 감소방안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제시된 세수효과는 연간 5.5조원이다. 소득세와 법인세 개편으로 인해 각각 약 2.2조원과 2.6조원의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부가가치세 개편으로 369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정부는 비과세 및 공제제도 축소 등으로 7,483억원의 세수가 증대할 것으로 보았다. 세부담 귀착을 보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은 6.3조원이 증가하고 서민·중산층 및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8,167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크게 (1)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친화적으로 조세지원제도를 개편한 것과 (2) 고소득자·고자산가와 대기업의 세부담을 증가시키고, 서민·중산층 및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한다는 관점에서 전반적인 정책방향은 바람직하다. 그리고 과거 정부와 달리 세입기반 확충

〈표 3〉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세입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 대기업 R&D 비용 세액공제(당기분) 축소 •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 •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 • 개인사업자의 사업 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익 과세전환 • 금융소득 과세특례 정비 • 양도소득세 감면 합리화 • 정책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 없는 제도의 축소 • 부가가치세 비과세·면세 축소
세원투명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유도 •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 •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인상 •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 • 역외세원 관리 강화 •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 관세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법인 및 기부금단체 제도 개선 • 거주자 판정기준 합리화 • 파생상품 과세체계 개선 •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조정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합리화 •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보완 •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조정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 강화 • 국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 국제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간의 사전조정제도 개선 • 관세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입

출처: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고용 관련 정책의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을지, 그리고 정부가 계획한 재정지출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세수가 확보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Ⅲ. 일자리 지원

우리나라 고용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고용여건 악화의 원인 중 하나는 산업구조의 변화이다. 안중석·강성훈·김상겸(2017)은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되고 이 과정에서 고용의 질적 불일치 현상이 나타남을 지적하였다. 여기서 고용의 질적 불일치란 취업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들은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질의 노동력을 갖추고 있어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지만 기업은 저성장기조하에서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정규직의 고용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또한 양질의 노동력을 갖춘 청년들은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기보다는 대기업 취업을 원한다(안중석·강성훈·김상겸, 2017; 오중현·최충, 2017). 오중현·최충(2017)에서 제시한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17년 대졸 신입사원의 취업 경쟁률은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약 6.6배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2015년에 비해 2017년 청년 실업률은 더욱 악화되었으나 2017년 중소기업의 취업 경쟁률은 2015년 6.6대 1에서 5.8대 1로 오히려 더 낮아졌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은 중요하다고 하겠다.

일자리 창출 및 양질의 일자리 보장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조세지출제도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여기서 특징적인 점은 대부분의 조세지출제도 개선방안이 고용과 일자리 질에 대한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해주거나 확대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정규직 청년, 근로취약계층 등을 고용한 기업에 세제지원 규모가 더 크도록 조세지출제도가 설계되었다. 예컨대, 정규직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보다 세제지원 규모가 더 크도록 고용중대세제를 설계하고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최근 사회적으로 청년실업, 경력단절여성 등 근로취약계층 취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고용 친화적 조세지출 방안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안중석(2014, 2015)과 이동규(2016)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은 고용과 관련된 세제지원제도의 실효성이다. 일반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는 장기적으로 회사에 근무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규직 근로자를 한 명 더 증가시키는 의사결정이 단기적인 비용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비용을 고려한다. 따라서 고용 친화적 조세지출제도의 한계는 존재하지만, 고용을 창출한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간접적으로 기업경영여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한편,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기업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대기업은 지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람 중 우수한 사람을 뽑으면 된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지원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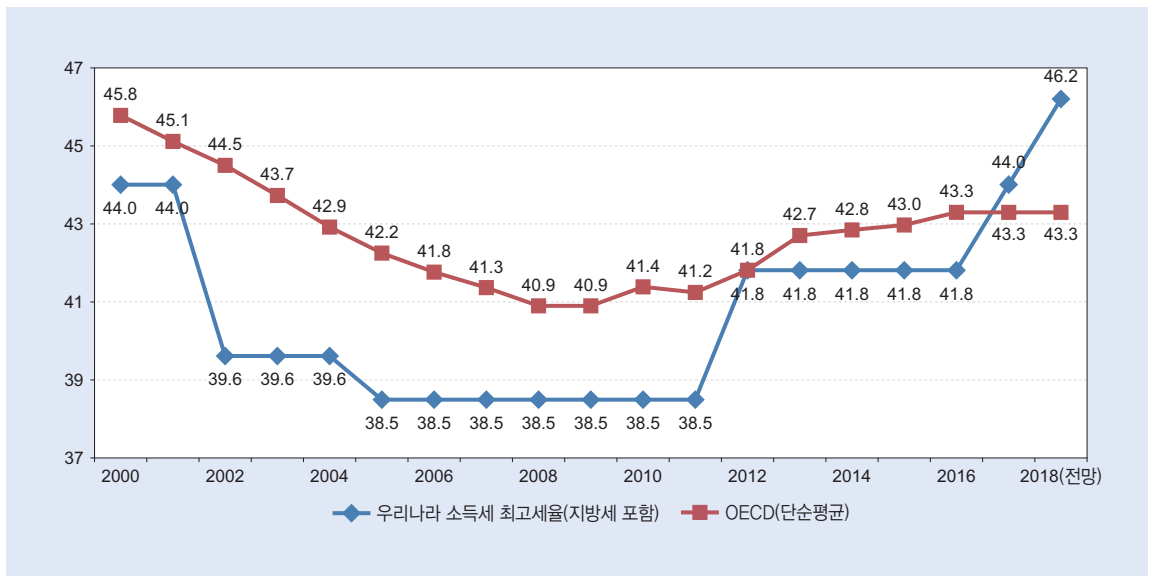
동력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경우,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세제지원을 해주는 것보다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세제지원을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즉, 중소기업의 취업을 고려하는 사람에게 세제지원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70% 감면혜택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취업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일부 사람에게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IV.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강화

한국조세연구원(2012, p.444)에 제시된 것처럼, 우리나라 소득세의 최고세율은 1981년 62%로 OECD 평균보다 4.8%p 높았으나, 그 이후 2005년 35%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1984-1985년을 제외한 1996년 전까지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그러나 1996년 세율 인하로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OECD 평균보다 낮아졌고 이 현상은 2017년 전까지 유지되었다. [그림 4]의 지방세를 포함한 소득세 최고세율을 보면,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7년 세율 인상으로 OECD 평균보다 다시 높아졌다.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40%에서 42%로 상향조정되는 방안이 제시되어,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과

[그림 4]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지방세 포함 소득세 최고세율 추이

(단위: %)



출처: OECD Tax Database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2017. 7. 28. 접속

OECD 평균 간의 격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고소득자로부터의 세수가 전체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다. 2015년 기준 소득 상위 1%가 전체 종합소득세수의 45.7%를 차지하고 소득 상위 10%가 87%를 차지한다. 이는 미국, 영국, 캐나다의 경우와 비교해볼 때 높은 수준이다. 만약 소득세 최고세율 변화로 과세표준이 변하지 않는다면,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총 소득세수 대비 고소득자의 소득세수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본

고에서 『국세통계연보』 자료로 최고소득구간 명목세율 인상에 따른 실효세율 효과를 추정한 결과, 2017년의 제도와 비교하여 종합소득세 평균 실효세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0.40~1.73%p 상승하였으며, 근로소득세 평균 실효세율은 0.38~1.64%p 상승하였다.¹⁾ 이는 최고세율 인상으로 과세표준이 변하지 않을 경우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증가하고 이는 결국 소득재분배 개선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4〉 우리나라의 고소득자의 종합소득세수 비중(2015년)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세부담규모	납세자 수	결정세액
총 납세자 수	-	5,482,678	23,786,980
상위 1% (%)	2억원 초과	47,613 (0.9)	10,861,434 (45.7)
상위 10% (%)	8천만원 초과	571,327 (10.4)	20,688,173 (87.0)

주: 종합소득세의 세수비중임

출처: 국세청, 「3-1-4 소득금액에서 납부세액까지 산출 현황」, 『국세통계연보』, 2015.

〈표 5〉 주요국의 최고소득 납세자의 세수비중

(단위: %)

구분	세부담 규모	2011	2012	2013	2014	2015
미국 ¹⁾	상위 1%	-	35.1	38.1	37.8	-
	상위 10%	-	68.3	70.2	69.8	-
영국 ²⁾	상위 1%	-	25.4	25.1	27.6	27.2
	상위 10%	-	55.4	55.8	58.6	58.5
캐나다 ³⁾	상위 1%	25만캐나다달러	20.2	20.0	20.3	21.1
	상위 10%	10만캐나다달러	47.6	49.0	50.6	52.2

주: 미국, 영국은 소득분위별로 세액을 공시하고 있으나 캐나다의 경우 소득분위별로 구분하여 소득세액을 공시한 자료는 없고, 소득규모별로 세액을 분리하여 공시한 자료가 있어 총 과세대상 납세자의 1%, 10%에 해당하는 납세자를 추정하여 납부세액 비중을 계산함

출처: 1)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uac/soi-tax-stats-individual-statistical-tables-by-tax-rate-and-income-percentile>, 2017. 8. 14. 접속

2) 영국 국세청, *UK Income Tax Liabilities Statistics—Survey of Personal Incomes*, Table 2.4 Table 2.4 Shares of total income (before and after tax), 각 연도

3) 캐나다 국세청, *Preliminary Statistics*, Preliminary Table 2—All returns by total income class, 각 연도

1) 『국세통계연보』에서 가장 최근의 자료는 2015년 자료로 2016년 제도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2015년 과세표준 등에 2016년과 2017년 제도를 반영하여 실효세율을 추정하였다. 따라서 구간 내 구성원 간 소득편차가 클수록 오차가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최고세율 인상에 따른 실효세율 변화에 대한 자세한 추정방법은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본문에서 생략한다.

〈표 6〉 최고소득구간 법정세를 변화에 따른 실효세율 변화 효과

(단위: %, %p)

구분	과표구간	실효세율				실효세율 변화 (C=B-A)
		2015	2016 ¹⁾	2017 ²⁾ (A)	개정안 ³⁾ (B)	
종합 소득세	3억원~5억원	28.37	28.59	28.59	28.99	0.40
	10억원 이하	30.68	30.86	31.37	32.46	1.09
	10억원 초과	31.61	31.68	33.25	34.99	1.73
근로 소득세	3억원~5억원	27.29	30.48	30.48	30.86	0.38
	10억원 이하	30.34	33.17	33.65	34.70	1.05
	10억원 초과	33.55	35.55	36.97	38.60	1.64

주: 1. 본고에서 추정된 실효세율에는 지방세가 포함되지 않음

1) 2016: 1억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법정세율 38%

2) 2017: 5억원 초과분에 대한 법정세율 40%

3) 세법개정안: 3억~5억원 구간 법정세율 40%, 5억원 초과구간 법정세율 42%

소득세의 최고세율은 인상되었지만 기대이상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 이유는 고소득층의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명목세율이 변함에 따라 고소득층의 과세표준은 크게 변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Mirrless, et al.(2011, p. 108)는 최고(명목)세율이 인상될 경우 고소득자들이 노동공급에 변화를 주기보다는 높은 세율을 피하기 위해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런 경우, 최고(명목)세율 인상이 실질적으로 고소득자의 세부담 증가로 이어질지는 다소 불투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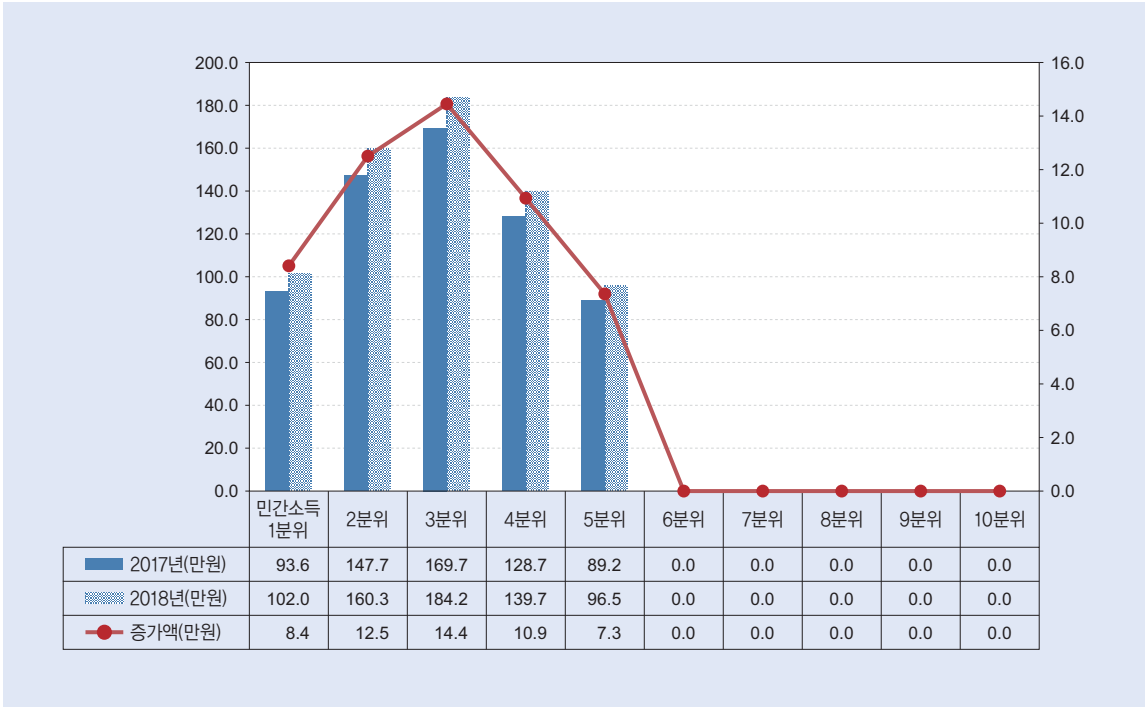
소득재분배는 조세와 함께 이전지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세법개정안에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함께 서민·중산층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되었고, 대표적인 예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이다.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

석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의 확대에 의해 소득분위별(1~5분위)로 수혜규모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다소 자료의 한계가 존재하지만 『재정패널조사』에서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에 한정하여 근로장려세제의 확대에 따른 소득분위별 수혜규모를 추정하였다.²⁾ 그 결과, 근로장려세제의 확대에 의해 소득 3분위 계층의 평균 수혜 증가액이 약 14만 4천 원으로 다른 소득계층과 비교해 가장 높았으며, 3분위에서 멀어질수록 수혜 규모 증가액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도 세법개정안은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함께 다양한 서민·중산층과 관련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소득재분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2) 본 분석에서는 근로장려세제가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하에 분석하였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근로장려세제의 혜택을 받은 50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추정하였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보다 정확한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 수급 가구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5] 소득분위별 근로장려세제 수혜 규모

(단위: 만원)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 9차년도조사 베타버전

한편, 세법개정안에는 고자산가에 대한 과세 강화방안도 제시되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단일세율을 2단계 세율로 전환하면서 최고세율을 25%로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이를 통하여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강화한 것이다. 상속·증여세의 경우, 편법증여를 막기 위해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대상 기준이 되는 대기업의 정상거래비율을 강화하였다. 이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대상이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 향후에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편법 증여를 하는 기업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현행 정상거래비율

기준이 타당한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상속·증여세에 대한 신고세액공제 축소방안도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었다. 최근 차명계좌 제재 강화, 부동산실명제 등 과세인프라가 확충되었고 과세관청 역시 세원포착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세법개정안에 제시된 고자산가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은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상속공제제도는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현행 제도에서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기업상속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한도금액은 기업영위기간에 따라 200~

500억원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장수기업 요건을 강화하고 증견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재산 외의 다른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의 상속세액의 1.5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독일의 경우에도 2014년에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이유 등으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으며, 그 이후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속세액 전액을 납부할 수 없어 가업승계가 어렵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만 정부가 가업상속공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도개편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번에 제시된 가업상속공제제도에 대한 개편안은 동 제도의 도입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기업의 경우 연부연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연부연납 허용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연장하여 가업상속세 부담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V.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것은 중요하다. 과거 “증세 없는 복지”와 달리 이번 세법개정안은 다양한 증세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세입기반을 확충한다는 관점에서 법인세 최고 과세표준 구간을 [2,000억원 초과]로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조정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동안 법인세 인하 기조를 유지해왔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기간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초기 단계, 그리고 방위세 폐지

에 따른 세수보완 목적 이외에 법인세율을 인상한 경험이 없고 세율구조 역시 한국전쟁 기간을 제외하고 3단계 이상의 누진구조를 경험한 바가 없다. 따라서 이번 법인세에 대한 과세표준 조정 및 최고세율 인상은 정부가 기존 정책기조와 달리 법인세를 조세 경쟁력 확보보다는 세수기반 확충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OECD 주요 국가들의 법인세 최고세율(부가세 포함)은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이며, 최근 10년간 법인세 최고세율 추이는 어떻게 나타날까?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인 22%는 OECD 국가와 비교하여 2017년 기준으로 0.3%p 낮았으나, 이번 세법개정안에 제시된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분 포함여부에 상관없이 OECD 평균(22.3%)보다 높다. 지방세분을 포함한 명목세율 27.5%으로 이는 35개 OECD 국가 중 11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35개의 OECD 국가 중 2017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2007년과 비교하여 유지되거나 인하한 국가는 29개국으로 이는 전체의 82.9%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는 OECD 국가 중 대부분은 법인세를 세수확보보다는 조세 경쟁력 확보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이 성장하고 기업의 소유 구조가 세계화됨에 따라 기업은 과세소득을 법인세 부담이 높은 국가에서 낮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Mirrless, et al., (2011, pp. 406-407). 이런 가운데 세계는 법인세 경쟁력을 갖춰 과세소득을 다른 국가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하고 있다. 특히 GDP 대비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일 수록 낮은 세율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이런 국제적인 추세하에서

조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투자자들에게 좋지 않은 신호를 주게 된다. 하지만 국가의 법인세 경쟁력을 고려하여 법인세율을 계속 인하하면 조세수입은 감소할 것이다. 이런 상충관계하에서 최적 수준의 법인세율을 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본고는 2012~2015년 법인세전순이익이 2,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KISVALUE 재무자료를 사용하여 법인세 최고세율 조정으로 인한 실효세율 변화분을 추정하였다. <표 7>에 제시된 결과를 보면, 이번 세율 인상으로 인해 2015년 경영 실적 기준으로 실효세율은 2.0%p 인상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동 분석은 법인세 명목세율 변화로 인한 기업의 형태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이번 세율 인상의 정책대상 법인들은 해외사업 비중이 큰 기업들로서 세율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해당 과세표준 구간의 기업 수가 감소하거나 기업실적

이 악화될 경우 본고의 추정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세수기반 확충과 관련하여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과세표준을 넓힌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고자산가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었던 금융소득 과세특례제도가 일몰종료되거나 폐지된 것은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일몰이 도래하는 50개 항목 중 11개만 일몰종료되거나 축소된 것은 본래 비과세 및 감면제도 정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주된 정책 목표 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에 있고 이를 위해 조세지출제도를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고용 친화적으로 조세지출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은 인정할 만하다. 향후 조세특례심층평가를 통해 고용 친화적 조세지출제도가 고용창출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고용창출을 위한 조세지출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다

<표 7> 과세표준 구간별 실효세율 증가 추이 및 2,000억원 초과 구간 25% 신설 시 실효세율 추정치

(단위: %, %p)

구분	2012	2013	2014	2015
2억원 이하	8.6	9.1	8.9	8.8
2억~200억원 이하	14.4	14.6	14.8	14.9
200억~500억원 이하	17.7	17.7	18.0	18.5
500억~1,000억원 이하	18.6	18.9	18.8	19.4
1,000억~2,000억원 이하	17.1	17.0	17.1	17.9
2,000억원 초과	16.5	16.4	15.5	17.4
개편 후 2,000억원 초과	-	-	-	19.4
개편 후 실효세율 증가분	-	-	-	2.0

출처: 저자 작성

른 정책수단을 사용하여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세수기반 확충을 위해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 축소,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 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제도를 축소하는 방안이 들어있다. 대기업의 일반 R&D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 30%는 현행 유지하되, 당기분 세액공제율은 1~3%를 0~2%로 축소하는 방안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었다. 이는 정부가 기본공제 성격을 가진 당기분 방식의 단순 보조적 지원은 대기업의 R&D 유인에 의미 있는 효과가 없다고 본 것이다. 정부가 기대하는 것처럼 대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에 세액공제 축소가 미미하게 영향을 미친다면 대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

서 세수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민간연구개발비의 대기업 집중도와 연구개발비 지출 상위 20대 기업의 집중도가 전년과 비교하여 2015년에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기업 R&D에 대한 세액공제 축소가 대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표 8>과 <표 9>를 보면 2015년 상위 20대 기업의 연구개발비 집중도는 전년 대비 1.59%p 하락하고 있고 대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향후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통해 대기업의 R&D 연구개발 활동과 세제지원 간의 관계를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R&D 관련 조세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8> 연구개발비 지출 상위기업의 연구개발비 집중도

(단위: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상위 5대 기업	39.70	40.96	45.18	46.19	43.60
상위 10대 기업	45.20	46.30	50.56	52.07	50.20
상위 20대 기업	51.20	52.51	55.47	57.05	55.10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TIS 현황 통계』, 각 연도

<표 9> 최근 5년간 기업규모별 연구개발비 증가율 추이

(단위: %)

연도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합계
2011	17.1	7.6	23.5	16.4
2012	13.1	11.4	15.6	13.2
2013	11.6	0.9	-7.9	7.7
2014	7.9	1.4	7.6	7.1
2015	0.8	7.2	10.2	2.6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TIS 현황 통계』, 각 연도

또한 정부는 증세방안의 하나로 그동안 과세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율이 관측되지 않아 과세하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줄이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제도의 문제점 개선, 경제적 여건 등의 변화 반영, 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의 개선방안이 조세제도 합리화 부분에 제시되었다. 이는 제도가 도입취지에 맞게 재설계되거나 제도가 운영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제도 합리화에서 제시된 방안 중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인상 방안은 향후 좀 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정부는 연료 간의 발열 효율을 고려하여 발전용 유연탄에 비해 발열효율이 평균적으로 2배 높은 LNG의 개별소비세를 발전용 유연탄의 2배로 설계하였다. 즉, 현행 제도하에서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는 1kg당 30원이고 발전용 LNG의 개별소비세는 1kg당 60원이다. 하지만 LNG의 경우 수입부과금과 관세가 개별소비세와 별도로 부과된다. 따라서 정부는 발전용 유연탄에 수입 부과금과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을 고려하여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율을 인상한 것이다. 여기서 좀 더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은 에너지 세제의 교정적 기능이다. 일반적으로 에너지세는 사회적 피해비용을 가격에 내재화시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에너지소비를 유도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발전용 유연탄은 LNG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더 높은 세부담을 가지는 것이 타당하다(이동규, 2016). 따라서 향후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조정함에 있어서 연료 간의 발열 효율 뿐만 아니라 교정세로서의 기능도 함께 고려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VI. 결론 및 정책방향


2017년 세법개정안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복지제도의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고소득자·고자산가 증세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소 불확실한 측면이 있지만 세법개정안에 제시된 조세와 이전지출 제도로 인해 소득재분배는 개선되고 세수도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향후 정책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이슈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는 증세방안과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는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된 것이다. 우선 증세 관련 정책방향에 대해 살펴보자.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정부의 재원조달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증세방안으로 인해 증가된 세수입만으로 복지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향후에는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대부분의 일반 납세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되, 고소득자가 좀 더 부담한다는 인식을 확산하여 “보편적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얻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더불어 향후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개편 속도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소득세 개편을 통해 고소득자에 대해 세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4년에는 세제개편으로 소득 8천만원 이상 구간의 실효세율은 증가하였고 2016년에는 소득 5억원 이상 구간의 최고세율이 2%p 인상되었다. 그리고 현행 소득세제는 물가연동제가 적용되지 않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고소득자들이 소득세 부담 피로도를 높게 느낀다면 이는 결국 고소득자의 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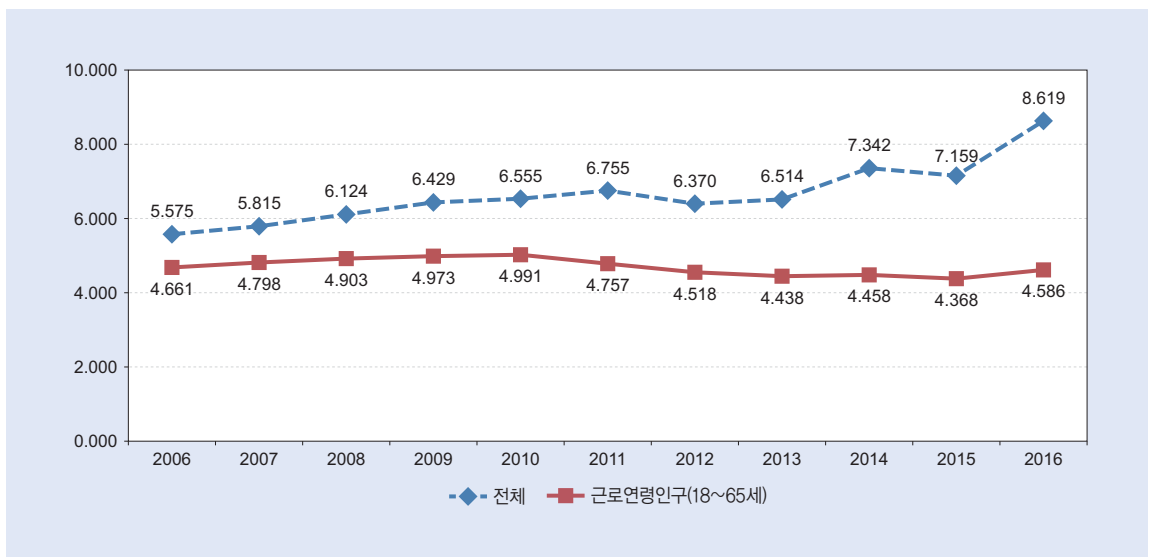
회피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두 번째 사회적 양극화 문제 해소방안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해 살펴보자. 고소득자·고자산가의 과세강화는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볼 문제는 사회적 양극화 문제의 원인이다. [그림 6]에 제시된 전체인구에 대한 P90/P10 배율은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이를 근로연령인구로 범위를 좁힐 경우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관측되지 않는다. 이 결과는 [그림 8]의 지니계수 지표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2016년 근로연령인구의 지니계수는 2006년 대비 0.005 감소한 반면 은퇴연령인구의 경우에는 0.089 증가하였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근로연령인구의 경우 불평등도가 다소 개선되었지만 은퇴연령인구의 경우 불평등

도가 심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양극화 문제의 원인이 은퇴에 따른 가구의 소득 감소 때문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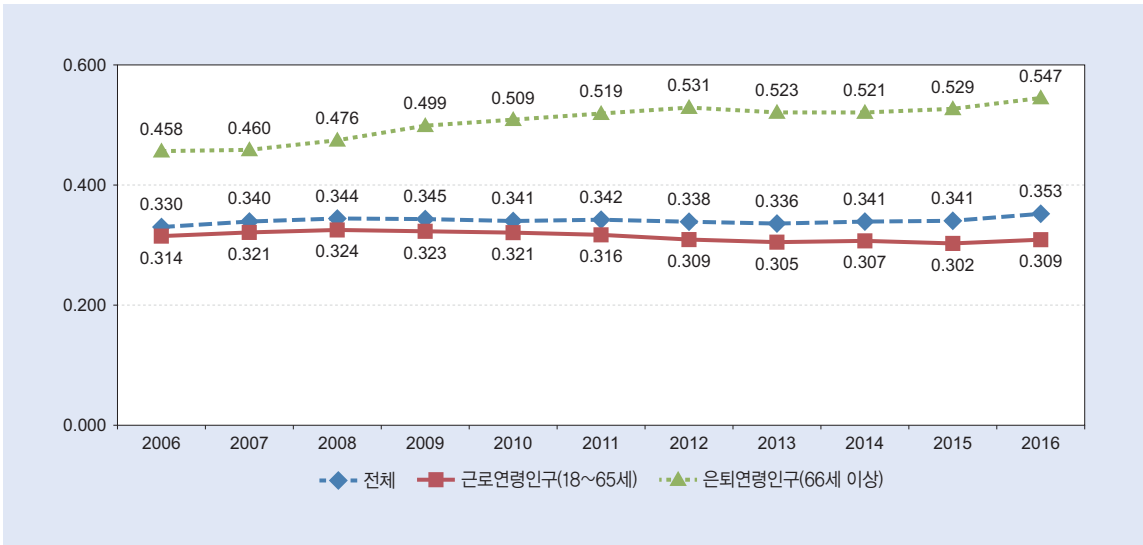
현재 우리나라 사회는 저성장-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실업률, 사회적 양극화 문제 등이 대두되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제시된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 그리고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은 우리나라가 좀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나아가는 데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6] P90/P10 추이



출처: 오종현(2017), p. 29. [그림 5] P90/P10 추이
원자료: 통계청, 소득분배지표(전체가구, 성별 및 연령구분별), 각연도

[그림 7] 지니계수 추이



출처: 오종현(2017), p. 28, [그림 4] 지니계수 추이
 원자료: 통계청, 소득분배지표(전체가구, 성별 및 연령구분별), 각연도

<참고문헌>

강성훈, 「상속·증여세제 개선방향에 관한 공청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기획재정부, 「2017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2017.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TIS 현황 통계』, 각 연도

안중석, 「2014년 세제개편안 평가와 정책방향」, 『재정포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_____, 「2015년 세제개편안 평가」, 『재정포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안중석·강성훈·김삼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심층평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이동규, 「2016년 세제개편안 평가」, 『재정포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오종현·최충,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심층평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오종현, 「소득분포의 변화가 최근 소득세수 변동에 미친 영향」, 화요업무회의 자료, 2017.

통계청, 『소득분배지표』, 각 연도

_____,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세제사 제1편 연대편』, p. 444, 20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 9차년도 조사 베타버전.

Canada Revenue Agency, *Preliminary Statistics*, 각 연도

Mirrless, James, Stuart Adam, Timonthy Besley, Richard Blundell, Stephen Bond, Robert Chote, Malcolm Gammie, Paul Johnson, Gareth Myles, James Poterba, *The Mirrlees Review*,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UK HMRC, *UK Income Tax Liabilities Statistics—Survey of Personal Incomes*, 각 연도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uac/soi-tax-stats-individual-statistical-tables-by-tax-rate-and-income-percentile>, 2017. 8. 14. 접속.

OECD Tax Database, <http://www.oecd.org/tax/tax-policy/tax-database.htm>, 2017. 7. 28. 접속.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의 「주요국의 조세동향」과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동향」 자료를 요약 ·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주요국의 조세동향

동향 17-7

> 아메리카

[캐나다-2017년 예산안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개정안 승인]

- 캐나다는 2017년 6월 22일 지난 3월 발표한 캐나다 예산안 중 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비세의 세법개정안 및 조세지원제도 폐지안을 승인함¹⁾
 - 2017년 3월 22일 2017년 중산층 지원강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예산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법인세법 개정안은 향후 승인될 예정임²⁾
 -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각 개정안은 예산안 발표일인 2017년 3월 22일부터 시행됨
- 소득세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간병인 세액공제 이용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단순화 및 공제혜택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 및 장애인 세액공제 대상 확대가 있음³⁾
 - 기존에 3개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던 간병인 세액공제를 하나의 제도로 통합하였으며, 한도금액은 3개 제도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함
 - 직계존속, 형제·자매, 성인자녀의 경우 6,883 캐나다달러를 한도로, 배우자, 미성년자녀의

경우 2,150캐나다달러를 한도로 세액공제를 허용함

- 대학에 지급하는 직업훈련비용도 세액공제를 허용하며, 간호사도 장애인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전문의료인 범위에 포함하여 장애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될 수 있음

- 부가가치세의 개정 내용으로 차량공유사업에 부가가치세 부과, 특정약물을 면세대상에 추가, 외국 여행객 숙박시설 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폐지함
 - 차량공유사업을 택시운송과 동일하게 보아 2017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의약품 중 날록손(naloxone)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하며, 예산발표일 1년 전인 2016년 3월 22일부터 소급적용함
 - 외국여행객 숙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는 행정비용 등 제도 효율성의 이유로 2018년 1월부터 폐지함
- 소비세의 개정내용으로 담배소비세 및 알코올 소비세를 인상하며, 주류소비세의 경우 매년 4월 1일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라 자동적으로 인상됨
 - 담배 제조업자세를 폐지하여 발생하는 세수감소를 충당하고, 담배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이유로 예산발표일 이후인 2017년 3월 23일부터 담배소비세를 인상함
 - 담배소비세 인상 및 주류소비세의 물가연동제 도

1) 캐나다의회, <http://www.parl.ca/DocumentViewer/en/42-1/bill/C-44/royal-assent>, 접속일자: 2017년 7월 27일
 2) KPMG, "2017 Federal Budget Bill #1 Receives Royal Assent," <https://home.kpmg.com/xx/en/home/insights/2017/06/2017-federal-budget-bill-1-receives-royal-assent.html>, 접속일자: 2017년 7월 27일
 3) 각 세목별 개정내용의 상세내용은 「주요국의 조세동향」 17-04호에 기술되어 있음



입은 2018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 조세지원제도 중 실효성이 없거나 정책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일부를 폐지함
 -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세액공제제도를 2017년 7월부터 폐지함
 - 근무지 이동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비용공제 제도를 2018년 1월부터 폐지함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세액공제 제도는 예산발표일인 2017년 3월 22일부터 폐지함
 - 단, 예산발표일 이전 직장어린이집 설치계약을 한 경우 2020년까지 설치비용의 세액공제를 허용함
 - 지자체 직원에 한해 비용정산 절차가 필요 없는 업무관련 비용을 지급받더라도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제도를 2019년 1월부터 폐지함
 - 기업이 의약품 기부 시 기부금 추가공제를 허용하던 제도를 예산안 발표일부터 폐지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 유럽

[네덜란드-OECD의 네덜란드 특허박스제도 승인]

- OECD는 2017년 7월 네덜란드의 개정된 특허박스제도(patent box)⁴⁾가 유해조세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승인함⁵⁾
 - OECD는 BEPS프로젝트 'Action 5 유해조세환경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따라 BEPS참여국의 조세 특례제도를 검토한 결과, 네덜란드의 특허박스제도는 유해조세환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지음
- 네덜란드는 2017년 세법개정의 일환으로 BEPS프로젝트 Action 5의 권고사항에 따라 특허박스제도를 개정한 바 있음⁶⁾
 - 네덜란드는 2017년 세법 개정 시 Action 5의 권고사항을 적용하여 연계접근법(nexus approach)을 도입하고 개발비용의 공제를 허용하는 적격 무형자산의 정의를 수정한 바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흥민옥 회계사)

[네덜란드-조세회피방지제도 도입 관련 의견수렴 절차 개시]

- 네덜란드 재무부는 2017년 7월 10일 EU의 조세회피방지지침(European Union Anti-Tax Avoidance Directive 2016/1164)에 따른 조세회피방지제도 도

4) Italy-Law decree on urgent tax measures—details on new measures on value added tax (14 July 2017), News IBFD.

5) KPMG, <https://meijburg.com/news/innovation-box-approval-by-oecd>, 접속일자: 2017년 7월 25일

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16-09호.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PubTrends_InterTrends-View/네덜란드-2017년-세법개정안-발표/524507, 접속일자: 2017년 7월 26일

입 관련 정책방향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개시함⁷⁾

- EU는 2016년 6월 조세회피방지지침에 합의한 바 있으며, EU회원국은 2018년까지 동 지침상의 최소기준을 국내법에 도입하고 2019년부터 적용할 의무가 있음⁸⁾

- 네덜란드의 이번 정책 발표는 이자비용 공제제한, 출국세, 일반조세회피방지규정, CFC규정, 혼성불일치 해소 등 공격적 조세회피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EU의 조세회피방지지침상 5가지의 최소기준에 대한 도입 방향을 제시함

- 이자비용 공제제한에 대해서는 EU지침과 같이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의 30%를 한도로 이자비용공제를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함

- 공제한도 미만에 대해서는 소급공제(carry-back)는 불가하나, 이월공제는 기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음
- 금융기관 또는 공공인프라사업에 대한 예외규정 없음
-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

- 출국세와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출국세 제도를 유지 하되, 법인 납세자에 한해 출국세 연납 기한을 EU 지침에 따라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함

- 현행 네덜란드 출국세는 개인 납세자와 법인 납세자 모두에게 10년 연납을 허용하나, 이번 정책

발표에는 법인 납세자의 연납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도록 함

- 일반조세회피방지규정(general anti-avoidance rule, “GAAR”)에 대해서는 이미 판례를 통해 일반 조세회피방지규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함

- CFC(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제도와 관련하여서는 현행 네덜란드 세법상 부재한 CFC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고려함

- CFC제도를 적용 받는 외국 자회사는 네덜란드 법인이 직 · 간접적으로 50% 이상 소유하는 법인으로 해당 소재지국의 유효세율이 네덜란드 유효세율의 50%에 미달하는 법인으로 함

- 혼성불일치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EU지침 적용이 2020년으로 미루어짐에 따라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함

(자료 수집 및 정리: 홍민옥 회계사)

7) Netherlands—Consultation on implementation of EU Anti-Tax Avoidance Directive launched (11 July 2017), News IBFD.

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16—09호.

http://www.kjp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PubTrends_InterTrends-View/유럽연합-조세회피방지지침-합의-결정-발표/524405, 접속일자: 2017년 7월 26일



[덴마크-세수입 증가를 위한 국세청 조직개편 준비]

- 덴마크 정부는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체납이나 조세 회피와 같은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국세 행정조직을 개편하기로 결정함⁹⁾
 - 2017년 6월 12일 재무부 장관은 관세나 국세 등을 모두 관할하던 중앙 국세행정부(Danish Ministry of Taxation)를 폐지하고, 2018년 7월부터 7개의 지방조직으로 분권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힘
 - 7개 조직은 체납관리(tax debt), 관세(customs), 자산평가(property evaluation), 자동차 관련 등록세 등의 관리(vehicle area), 부가가치세 등 기타조세 관리(taxes, fees and VAT), 연구개발(IT and development)과 인사 등 행정 담당(transverse administration such as HR and recruitment)일 것으로 예상함
 - 향후 10년 동안 국세 행정을 담당하는 인원도 감축할 방침이나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는 않았음
- 덴마크는 개인의 체납과 조세회피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체납세액이 11십억달러에 상당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조직개편을 실시하는 것임
 - 덴마크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이 55.8%에 상당할 정도로 소득세 부담률이 높은 국가 중 하나이나 체납과 조세회피로 인하여 세수손실이 발생함
 - 세수손실이 발생한 주요 원인으로 조세회피 외

에도 개인의 배당 원천징수세의 위법한 세액환급 증가, 전산화된 세금납부시스템의 취약점, 자산평가 시스템의 문제 등이 지적됨

- 또한, 덴마크 의회가 5월 29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320명의 초부유층 가구는 총자산의 25%, 약 9,04십억달러에 상당하는 자산을 조세피난처에 은닉한 것으로 보고됨

(자료 수집 및 정리: 유현영 회계사)

[스웨덴-법인세 개정안 발표]

- 2017년 6월 20일 스웨덴 정부는 법인세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법인세율 인하, 이자비용 공제제한 규정의 도입, 하이브리드 미스매치에 대한 BEPS 권고안 수용임¹⁰⁾
 - 2017년 9월 2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2017년 말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임
 - 개정안은 대부분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0%로 2%p 인하할 방침임
- 이자비용 공제제한 규정에 따르면 이자비용 공제한도가 기존 EBIT의 35%에서 EBITDA의 25%로 개정됨
 - 면제기준을 마련하고 기업그룹에 속한 자회사가 10만크로나의 기업그룹 순이자비용까지 제한 없이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함

9) Tax Notes International, "Government Decentralizes Tax Authority, Adds Staff to Increase Revenues," Volume 86, Number 12, 2017.6.19.

10) EY, "Sweden proposes major corporate income tax changes," 2017.6.20., <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sweden-proposes-major-corporate-income-tax-changes>, 접속일자: 2017년 7월 28일

- 한도초과액은 6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음

- BEPS Action 2에서 제안한 하이브리드 미스매치 관련 권고안을 수용할 방침임
 - 구체적으로 BEPS 권고안 중에서 어떤 부분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하지 않음
- (자료 수집 및 정리: 유현영 회계사)

[스위스-소액수입재화 판매업자 VAT 과세시기 연기]

- 스위스 과세당국은 2017년 7월 20일 소액 수입재화를 판매하는 외국판매자에게 VAT를 과세하는 시기를 2019년 1월 1일로 연장할 것을 발표함¹¹⁾
 - 스위스는 2016년 9월 29일 외국판매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액수입재화를 스위스 거주자에게 10만스위스프랑(약 1억원) 이상 판매하는 경우 2018년 1월부터 VAT 사업자 등록 및 납부를 강제하는 법안을 승인함¹²⁾
- 이번 연장안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반대의견으로 인한 것이며, 이번 연장으로 연간 2천만스위스프랑(약 230억원)의 세수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과 제도상 허점을 정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존재함
 - 외국판매자가 VAT사업자 등록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를 강제하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사업자를 폐쇄하고 새로운 사업장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과세회피가 가능하며 현재 스위스

과세당국은 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존재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아이슬란드-이자비용 공제제한 규정 개정]

- 아이슬란드 의회는 2017년 6월 1일 이자비용공제제한 규정의 개정안을 승인함¹³⁾
 - 아이슬란드는 2016년 10월 13일 Action 4에 따라 이자비용공제제한 규정을 도입한 바 있으며 이번 발표는 일부 사항을 개정한 내용임
 - 개정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 이번 개정안은 아이슬란드 거주자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이자비용 공제를 제한하는 예외규정을 폐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자비용 공제제한 대상이 확대 될 것임
 - 기존 규정에서는 연결그룹 간 부채거래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공제를 EBITDA의 30%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음의 경우 이자비용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 연결그룹 간 부채거래로 발생한 연간 이자비용이 1억크로나(ISK) 미만인 경우
 - 아이슬란드 거주자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이 연결그룹 전체 부채비율의 2%를 초과하는 경우
 - 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이거나 이들 기업으로부터 지배받는 경우
-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11) KPMG, "Swiss VAT reform,"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ch/pdf/swiss-vat-reform-en.pdf>, 접속일자: 2017년 7월 27일

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16-10-01호 참조

13) "Iceland-Amendments to interest deduction adopted (10 July 2017)," News IBFD.



[아일랜드-다자간협약 서명 및 협약별 도입 여부 발표]

- 아일랜드는 2017년 6월 7일 BEPS 방지 다자협약에 서명하였으며, 서명 전 아일랜드 재무부는 다자간협약의 각 조항별 도입 여부에 대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함¹⁴⁾
 - 아일랜드는 Action 2의 혼성불일치, Action 6의 조세조약남용방지, Action 7의 고정사업장, Action 14의 효과적인 분쟁해결장치 마련과 관련된 대부분의 조항을 채택할 예정임
 - 다자간협약 체결 후 아일랜드가 맺은 양자간 조세협약에 다자간조세협약 결과를 반영할 예정임
- Action 2의 혼성불일치와 관련된 3개 규정 중 2개 국에서 모두 도관체로 판단하는 경우 거주지국에서 소득에 과세하도록 하는 규정(제3조)과, 이중거주자의 거주지를 판단기준(제4조)은 채택할 예정임
 -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규정(제5조)은 유보할 것을 발표함
- Action 6의 조세조약남용과 관련된 6개 조항 중 주목적테스트 도입(제7조), 배당소득 경감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고려(제8조) 등 4개 조항은 채택할 예정임
 - 이외에 이중비과세 방지 목적을 조세조약 서문에 명시하도록 하는 규정(제6조)과 부동산 양도소득 회피를 방지하는 규정(제9조)도 채택할 예정임

- Action 7의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4개 조항 중 고정사업장 요건을 악의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제13~15조)을 채택할 것이며, 제12조는 유보할 예정임
 - 제12조는 대리인을 고정사업장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소득귀속 등 일부 규정에 대해 OECD에서 작업 중이므로 불확실성의 문제로 인해 유보입장을 표명함
 - 제13조는 고정사업장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특정 사업행위에 대해, 제14조는 계약분할을 통한 고정사업장 회피방지에 대해, 제15조는 고정사업장 정의 중 사업과 연관이 있는 자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규정은 채택할 예정임
- Action 14의 효과적인 분쟁해결장치 마련과 관련 상호합의절차(제16조), 대응조정(제17조), 강제적 중재(제18~26조)를 정한 모든 다자간협약 조항을 채택할 예정임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14) 아일랜드 재무부, "Technical Briefing Note-Ireland's approach to the OECD Multilateral Convention to Implement Tax Treaty Related Measures to Prevent BEPS," <http://www.finance.gov.ie/sites/default/files/Technical%20Briefing%20Note%20-%20MLI%20%28002%29.pdf>, 접속일자: 2017년 7월 28일

[영국-법인세 간소화 방안에 관한 보고서 발행]

- 2017년 7월 3일 세제간소화부(Office of Tax Simplification)¹⁵⁾는 법인세 간소화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행함¹⁶⁾
 - 간소화 방안은 크게 소기업을 위한 세제의 간소화 및 이해가능성 제고, 대기업을 위한 세제의 명확성 증진 및 납세의무 간소화, 회계기준과 세법의 일관성 강화, 자본투자 확대를 위한 감가상각 제도의 간소화로 구분됨
 - 법인세제 간소화 방안은 영국 정부의 디지털 세무행정 작업과 함께 추진될 방침임
- 소기업의 조세간소화는 기업이 직접 세무신고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기 쉽고 세무조정이 최소화된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할 방침임
 - 간소화된 회계원칙(FRS 105)을 선택한 소기업은 회계이익에 세율을 곱한 금액을 세금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제안함
 - 간소화된 회계원칙을 선택하지 못하는 기업은 세무조정을 최소화할 방침이며, 대상 기업도 확대할 방침임
 - 향후 매출액 15만파운드 미만인 기업은 현금기준 회계처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할 방침임
- 대기업을 조세간소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운영과 안정적인 투자를 위한 조세시스템 마련을 목표로 두고, 조세시스템에 대한 안정성과 확실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할 방침임

- 대기업을 위한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기업 그룹 단위의 세무조정, 기업 그룹 단위의 조세납부, 전산화된 기업 그룹 단위의 조세혜택이 가능하도록 세제를 개편할 방침임
- 특히 이전가격, 무형자산이나 조세회피방지법안 등의 분야에서 대기업을 위한 세무신고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임
- 회계와 세법기준의 일관성 강화를 위해서 매출액이나 자산 등 주요 항목에 대한 회계와 세법상 정의를 일관되게 개정하는 등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세제 개편 방안을 제시함
 - 거래, 자산에 대한 공제(property deduction)와 관리비용(management expenses)의 회계와 세법상 정의를 일관되게 개정할 예정임
 - 수입의 원천에 따라 이익을 분리해서 계산하는 “schedular system”을 폐지하고 한 기업의 수입과 비용을 모두 합산하여 세무상 이익을 계산하도록 개정할 예정임
- 현행 세법상 복잡한 자산 분류와 감가상각 제도를 회계기준과 유사한 방식으로 개정할 방침임
(자료 수집 및 정리: 유현영 회계사)

15) 세제간소화부는 2010년 재무부와 국세청과는 별도의 독립된 조직으로 설립되었으나 세제개편과 관련하여 국세청과 재무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현재 집권 보수당의 주요 조세정책 중 하나인 세제간소화를 위한 세제개편 작업을 수행함

16) Office of Tax Simplification, “Simplification to the corporation tax computation,” 2017.7.,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ots-review-on-simplifying-the-ct-computation>



[영국-2017년 재정법안 재발표]

- 영국 정부는 상반기 의회에서 보류한 주요 개정안을 재발표할 예정이며, 2017년 7월 13일 그중 주요 개정안의 개요를 발표함¹⁷⁾
 - 법인세법, 개인소득세법과 상속세법상 개정안이 포함됨
 - 영국 국세청과 협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개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발표함
- 법인세법과 관련해서는 이자비용 공제 제한, 손실 공제, 대주주에 대한 면세제도, 하이브리드 관련 규정이 기존 개정안에서 일부 수정됨
 - 영국은 이자비용 과다 법인에 대해 EBITDA의 30%까지의 고정비율과 그룹비율을 한도로 이자 공제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기존 발표한 개정안¹⁸⁾과 동일하나, 시행일과 세부 내용이 일부 수정됨
 - 당초 시행 시점을 2017년 4월 1일로 정하였으나 2018년 6월 30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시행기한을 연장함
 - 하이브리드 미스매치 규정 등 어떤 이유에서든 사후적으로 이자비용으로 인정되면 이전에 세무상 이자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금액을 이자비용에 포함시켜 계산하도록 개정함
 -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룹비율 중 부채비율 기준을 일부 수정함
 - 법인세 결손금의 공제 범위를 확대하여 다른 유형의 소득이나 동일 그룹 내 계열사 소득에서 공

제하도록 허용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개정안과 동일하나, 시행시기가 일부 수정됨

- 법 시행시기를 당초 2017년 4월 1일에서 2017년 7월 13일로 연장함

- 대주주 면세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대주주가 주식을 처분할 때 자본이득을 면세하는 규정으로 보유기간과 대상 요건이 완화됨
 - 기존 개정안에서 큰 변동사항은 없었음
- 혼성불일치 규정은 혼성체, 혼성금융상품,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혼성불일치를 해소하는 방안이며, 이번 발표한 개정안에서는 기존 개정안에 추가적으로 외국납부세액의 범위를 소개함
 - 외국납부세액의 범위에는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도시에서 부과한 세금은 제외함

- 개인과 관련하여 개인소득세법상 거주자 규정과 상속세법상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개정안의 내용이 일부 수정됨

- 거주자 규정은 20년 중 15년 동안 영국 거주자인 경우나 영국에서 출생 후 해외 거주자였다 다시 영국 거주자가 된 경우 모든 세법상 영국의 거주자로 간주한다는 내용임
 - 기존 개정안에서 큰 변동은 없었음

- 상속세법상 주거용 부동산 규정은 해외 파트너십이나 폐쇄형 기업(close corporation)에서 보유한 영국 내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지분은 상속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임
 - 기존 개정안에서 큰 변동사항은 없었음

17) 영국 정부,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finance-bill-no2-2017>, 접속일자: 2017년 7월 18일

1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영국-이자공제 제한 규정 관련 개정안 발표', 『조세동향』,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PubTrends_InterTrends-View/영국-이자공제-제한-규정-관련-개정안-발표/524806, 접속일자: 2017년 7월 28일

- 그 밖에 디지털 세무행정에 대한 시행시기를 수정하여 발표함
 - 부가가치세 매출액 8만 5,000파운드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에 한하여 2019년 4월부터 디지털 기록 보유를 의무화함
 - 그 밖의 기업은 2020년까지 디지털 기록물 보유나 국세청에 분기별 보고 의무가 없음

(자료 수집 및 정리: 유현영 회계사)

[폴란드-CFC제도 및 이자비용 공제제한 규정의 개정안 발표]

- 폴란드 재무부는 2017년 7월 13일 EU조세회피방지 지침(ATAD)¹⁹⁾에 따라 이자비용공제 제한, CFC 규정을 수정하는 개정안의 초안을 발표함²⁰⁾
 - EU조세회피방지 지침 중 일부사항을 적용을 통해 BEPS Action 3, 4의 권고사항을 국내법에 도입함
 - 개정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기존의 과소자본세제를 손익기준에 따른 이자비용 공제제도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EBITDA의 30%를 한도로 이자비용 공제를 제한함
 - 이외에 연결그룹 내 계열사의 이자비용이 EBITDA의 30%를 초과하더라도, 연결그룹 전체의 이자비용이 EBITDA의 30%가 넘지 않는 경우 이자비용공제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그룹비

율 규정의 도입도 제안함

- 또한, 금융 · 보험업의 경우 이자비용공제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함
- CFC제도의 경우 EU의 조세회피방지지침의 권고안을 적용하여, 외국 자회사 소득이 낮은 세율로 과세된 경우 폴란드에서 과세할 것을 제안함
 - EU지침에서는 외국 자회사의 소득이 폴란드에서 과세되었다면 적용되었을 유효세율의 50% 미만인 경우 모회사국에서 과세하도록 권고하고 있음²¹⁾
 - 폴란드는 기존에 CFC제도가 운영 중이며, 현행 규정에서는 수동소득이 전체소득의 50% 이상이고, 폴란드 명목 법인세율의 25%보다 낮게 과세되는 경우 폴란드 모회사 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²⁾
- 이외에 OECD권고사항 및 EU지침에서 제안하지 않은 특정판매비와 관리비의 비용공제를 제한하는 규정을 제안함
 - 제품 및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마케팅비용, 채용비용, 관리비용, 무형자산 취득비용을 EBITDA의 5%로 제한할 것을 제안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19) EU에서 2016년 발표한 Anti-Tax-Avoidance-Directive임

20) Taxnotes, "Poland-Proposed BEPS-Related Measures Would Raise \$7.4billion," 2017.07.17.

2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16-07호 중 '유럽연합 조세회피방지지침 합의 결정 발표' 참조

22) M. Olejnicka, "Poland-Corporate Taxation sec. 10.4," Country Analyses IBFD.



[프랑스-최종 수익적소유자 의무 등록 시행]

■ 프랑스는 2017년 6월 12일 EU의 자금세탁방지 지침에 따라 프랑스 소재 단체의 최종 수익적 소유자(ultimate beneficial ownership) 의무 등록 시행을 발표함²³⁾

- EU의 제4차 자금세탁방지지침(the Fourth European Anti-Money Laundering Directive)에 따라 모든 EU회원국은 2017년 6월까지 각 국가에 소재한 단체의 최종 수익적소유자에 대한 의무등록 제도를 도입하여야 함²⁴⁾

■ 프랑스에서 수익적 소유자 등록 의무가 있는 단체는 프랑스 등록 법인, 외국법인의 프랑스 지점, 기타 프랑스 법에 따라 등록 의무가 있는 단체로 하며, 이들 단체는 2017년 8월 1일까지 최종 수익적 소유자를 등록하여야 함

- 최종 수익적 소유자는 프랑스 단체 지분의 25% 이상을 소유하거나 단체의 지배구조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개인을 말함
- 다만, 프랑스 증권거래소(EURONEX) 또는 EU 회원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경우에는 최종 수익적 소유자 등록의무가 면제됨

(자료 수집 및 정리: 흥민옥 회계사)

> 아시아

[중국-「건강보험료 소득공제」 전국으로 확대 실시]²⁵⁾

■ 중국은 건강보험료 소득공제 시행을 2017년 7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함

- 중국 재무부와 국세청이 2015년 12월 11일 발표한 「상업건강보험 개인소득세 시범시행정책에 대한 통지(关于实施商业健康保险个人所得税政策试点的通知)」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베이징 등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됨

■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면서 공제한도, 적격 건강보험상품의 대상, 적용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함

- (공제한도) 개인이 적격 건강보험상품에 가입하는 지출에 대해 과세소득 계산시 연간 2,400위안(월 200위안)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적격 건강보험상품) 개인 세수우대형 건강보험 상품 기본지침 및 시범약관을 참조하여 개발된 보장성 및 유니버설형 방식의 보험상품으로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된 비준을 획득하여야 함
- (적용대상자) 건강보험료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납세자는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등임

(자료 수집 및 정리: 정경화 전문연구원)

23) KPMG,

<https://home.kpmg.com/xx/en/home/insights/2017/06/tnf-france-new-measures-require-the-reporting-ultimate-beneficial-owners.html>, 접속일자: 2017년 7월 26일

2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16-04호,

http://www.kjo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PubTrends_InterTrends-View/3-네덜란드-EU자금세탁방지법에-따른-최종수익적소유자-등록-관련-법안-상정/523863, 접속일자: 2017년 7월 25일

25) 국가세무총국,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2590112/content.html>, 검색일자: 2017년 7월 20일

[중국-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R&D비용 공제 확대]²⁶⁾

- 중국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사업 장려 및 과학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R&D비용 공제를 현행 50%에서 75% 등으로 상향 조정함
 -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은 중국 내국법인으로 근로자 500명 이하, 연매출 및 총자산이 각각 20억위안 미만 등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함²⁷⁾
 - 중소기업의 제품이 「국가 중점지원의 첨단기술영역」의 규정된 범위에 속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신소재, 신에너지, 전자정보, 바이오의약, 해양 등의 기술에 해당되어야 함
- R&D비용은 새로운 상품, 기술, 공정 등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출한 연구개발비용이며, 자본화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용 공제함
 - 무형자산으로 형성되지 않고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실제 발생한 R&D 비용의 75%를 세전에 공제함
 - 무형자산화되는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의 175% 기준으로 상각할 수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정경화 전문연구원)

[중국-「첨단기술기업의 법인세 우대정책」에 대한 국세청 지침 발표]²⁸⁾

- 중국 국세청은 「첨단기술기업의 법인세 우대정책」에 대한 지침을 6월 27일 발표함
 - 기업이 정신 및 혁신에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기업 정책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첨단기술기업의 법인세 우대정책을 도입하였음
- 첨단기술기업이란 국가가 중점지원할 필요가 있는 첨단기술로 「국가 중점지원의 첨단기술영역」에 규정된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15%의 법인세율 특례를 적용함²⁹⁾
 - 중국 내국법인으로 최근 3년 내에 자체 연구개발, 인수합병 등의 방식으로 주요 제품의 핵심기술에 대해 자체 지식재산권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됨
- 기업의 첨단기술 자격이 만료된 당해연도에 새로 인증을 통과하기 전에는 법인세율은 15%를 적용하고, 당해연도 말 이전까지 첨단기술자격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추가납부하여야 함
- 첨단기술기업은 첨단기술기업자격증서, 인정자료, 지식재산권 관련자료, 「국가 중점지원의 첨단기술영역」에 해당되는 주요 상품의 설명, 연간 직원과 과학기술 인원 상황증명자료, 당해연도와 이전 2개 회계연도의 연구개발비용 총액 및 판매

26) Taxnotes, "CHINA—Super Deduction Targets Tech Industry," 접속일자: 2017년 6월 26일

27) 국가세무총국,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2644819/content.html>, Circular 34, Guoketazheng[2017] No.115, 접속일자: 2017년 7월 26일

28) 국가세무총국,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60/c2684433/content.html>, 접속일자: 2017년 7월 20일

29) 「국가 중점지원의 첨단기술영역」의 범위와 그 인증관리방법은 국무원과 과학기술부 등이 제정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공포 시행하며, 신소재, 신에너지, 전자정보, 바이오의약, 해양 등의 기술 등이 해당됨



수입비용, 연구개발비용 관리자료 등을 보관 및 비치하여야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경화 전문연구원)

수료 부과 실태를 감시할 것이라고 발표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경화 전문연구원)

> 오세아니아

[호주-은행세(bank levy) 법안 의회 통과]

- 호주 의회는 2017/18 연방 예산안에 포함된 은행세 (bank levy)를 6월 19일 통과시킴³⁰⁾
 - 은행세 법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여신금융기관(Authorized Deposit-taking Institutions)에 2017년 7월 1일부터 은행세가 도입됨
 - 위험 선호적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회사채, 상업어음 등과 같은 금융부채에 분기당 0.015%(연 0.06%)의 은행세가 부과됨
- 재무부 장관은 은행세 도입은 2021년까지 정부예산을 흑자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 계획의 핵심 재정확충안으로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발표함
 - 은행세 시행으로 4년간 약 62억호주달러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 반면, 4개 대형은행은 은행세가 고객 및 주주 등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정부의 은행세 시행 결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함
 - 재무장관은 호주 소비자위원회를 통해 은행의 수

> 국제기구

[OECD-BEPS Action 13 국가별보고서 관련 추가 이행 지침 발표]

- OECD는 2017년 7월 18일 BEPS프로젝트 Action 13의 국가별보고서 관련 추가 이행 지침을 발표함³¹⁾
 - Action 13의 국가별보고서는 모든 BEPS참여국이 이행하여야 하는 최소기준(minimum standards)으로 본 지침은 국가별보고서 이행 관련 과세행정의 확실성 제고를 위해 제시됨
- 동 추가지침은 국가별보고서 작성 시 각 조세관할 지역별 재무현황을 총액기준(aggregated basis)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관할지역에서 연결법인세신고를 하는 경우 연결기준(consolidated basis) 보고를 허용함
 - OECD가 제시한 국가별보고서 양식³²⁾에서는 다국적기업그룹의 매출액, 세전이익/손실, 법인세 납부액, 자본금, 종업원 수 등에 대한 정보를 각 조세관할지역별로 기재하도록 함
 - 동일 조세관할지역 내의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제거한 연결기준으로 보고하는 경우 추가 정보에 관련 내용을 기술³³⁾하도록 함

30) Taxnotes, "AUSTRALIA—Parliament Passes Controversial Bank Levy Legislation," 접속일자: 2017년 6월 26일

31) OECD,

<http://www.oecd.org/tax/oecd-releases-further-guidance-for-tax-administrations-and-mne-groups-on-country-by-country-reporting-beps-action-13-july.htm>, 접속일자: 2017년 7월 26일

32) OECD(2015),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and Country-by-Country Reporting, Action 13—2015 Final Report,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OECD Publishing, Paris., p. 29., (Table 1).

33) OECD(2015), p. 30., (Table 3).

- 또한, 동 지침은 둘 이상의 비특수관계인 다국적기업그룹에 의해 소유 또는 지배되는 기업을 국가별 보고서의 보고대상 현지법인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용하는 회계기준을 따르도록 함
 - OECD가 제시한 국가별보고서 양식³⁴⁾은 각 조세 관할지역별 현지법인의 사업활동을 기재하도록 하며, 특정 현지법인이 둘 이상의 비특수관계인 다국적기업그룹에 소유되는 경우에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기업이면 국가별보고서에 기재³⁵⁾되어야 함
 - 또한, 둘 이상의 그룹에 의해 소유되는 기업에 대해 비례연결(pro rata consolidation)을 하는 경우, 비례연결에 따른 매출액을 기준으로 국가별 보고서 제출의무 여부를 판단함
 - Action 13은 연결 매출액이 7억 5천만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을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자로 하며, 상기한 경우의 기업에 대해 비례연결을 하는 경우 비례연결상 매출액이 그룹의 연결 매출액에 포함되도록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홍민옥 회계사)

[OECD-BEPS Action 7 고정사업장 소득귀속에 대한 협의문서 발표]

- OECD는 2017년 6월 22일 BEPS프로젝트 Action 7 관련 고정사업장의 소득귀속에 대한 협의문서 (discussion paper)를 발표함³⁶⁾
 - Action 7은 고정사업장 지위를 인위적으로 회피하여 원천지국에서의 과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OECD모델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관련 조항(제5조)을 개정함
 - 본 협의문서에 대한 의견수렴 기한은 2017년 9월 15일임
- 본 협의문서는 Action 7에 의해 개정되는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의 범위와 관련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요청함
 - 동 협의문서는 위탁판매업자 구조 등 종속대리인과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따른 고정사업장 배제 조항을 이용한 고정사업장 지위 회피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고, 각 예시에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과 비용 배분에 대한 원칙을 제시함

(자료 수집 및 정리: 홍민옥 회계사)

34) Ibid., <Table 2>.

35) Ibid., <Table 2>.

36) OECD,

<http://www.oecd.org/tax/oecd-releases-beps-discussion-drafts-on-attribution-of-profits-to-permanent-establishments-and-transactional-profit-splits.htm>, 접속일자: 2017년 7월 27일



[OECD-BEPS Action 8-10 관련 이익분할법에 대한 협의문서 발표]

- OECD는 2017년 6월 22일 BEPS프로젝트 Action 8-10 관련 이익분할법에 대한 협의문서(discussion paper)를 발표함³⁷⁾
 - Action 8-10은 주요 권고사항 중 하나로 이익분할방법 적용이 적절한 상황과 배분대상 이익의 계산과 배부 기준 등을 제시함
 - 본 협의문서에 대한 의견수렴 기한은 2017년 9월 15일임
- 본 협의문서는 Action 8-10에 따라 개정되는 OECD이전가격지침서상 이익분할법의 적용에 대한 다음의 구체적인 질의를 포함하고 질의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요청함
 - 특정 거래에 대해 실제이익접근법(actual profit approach) 또는 추정이익접근법(anticipated profit approach)을 선택하여 적용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자본금, 종업원 수 등 이익배분 기준 선정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
 - 다른 정상가격산정방법보다 이익분할법의 적용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사례

(자료 수집 및 정리: 흥민옥 회계사)

[OECD-2017 이전가격지침 발표]

- OECD는 2017년 7월 10일 OECD이전가격지침 2017년 개정본을 발표함³⁸⁾
 - 본 개정본은 2010년 이후 첫 개정본으로 BEPS프로젝트에 따른 개정사항이 반영됨
- 본 이전가격지침은 기존 2010년 이전가격지침에서 BEPS프로젝트 Action 8-10과 Action 13에 따른 정상가격 산정방법과 이전가격문서화 등에 대한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함³⁹⁾
 - BEPS프로젝트 ‘Action 8-10 정상가격산출과 가치창출의 연계’와 ‘Action 13 이전가격문서화와 국가별보고서’의 권고 사항이 이전가격지침의 제 I, II, V, VI, VII, VIII, IX장에 반영됨
 - 세이프하버(safe harbours) 규정에 대한 개정사항은 제IV장에 반영됨

(자료 수집 및 정리: 흥민옥 회계사)

37) OECD, <http://www.oecd.org/tax/oecd-releases-beps-discussion-drafts-on-attribution-of-profits-to-permanent-establishments-and-transactional-profit-splits.htm>, 접속일자: 2017년 7월 27일

38) OECD, <http://www.oecd.org/tax/transfer-pricing/oecd-transfer-pricing-guidelines-for-multinational-enterprises-and-tax-administrations-20769717.htm>, 접속일자: 2017년 7월 28일

39) OECD, <http://www.oecd.org/tax/transfer-pricing/oecd-releases-latest-updates-to-the-transfer-pricing-guidelines-for-multinational-enterprises-and-tax-administrations.htm>, 접속일자: 2017년 7월 28일

주요국의 재정동향*

EU

- 이사회(European Council), 2017 국가별정책권고(country specific recommendation) 공식 채택(2017.7.11.)¹⁾
 - 이번에 채택된 2017 국가별정책권고는 각 회원국의 경제, 고용, 재정 정책에 대한 의견들을 담고 있음
 - 2017년 3월에 투자증대, 구조개혁 추진 및 책임 있는 재정정책 등이 승인됨
 - 국가별 정책권고는 지난 6월에 EU 이사회로 넘겨졌으며 2017 European Semester의 마지막 단계임

-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사회에 그리스에 대한 '초과재정적자시정절차(EDP, Excessive Deficit Procedure)' 중단 권고(2017.7.12.)²⁾
 - 이번 조치는 지난 몇 년간 그리스 정부가 국가의 공공재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럽안정기금(European Stability Mechanism)의 지원 프로그램을 착실히 이행한 결과임
 - 그리스의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크게 향상되어

2009년 15.1%의 재정적자에서 2016년 0.7%의 재정흑자로 전환

- EDP 중단 후 예방 조치로 전환되어 경제 · 재정 관리(fiscal governance)와 관련하여 EU의 일반 규칙을 적용받게 됨

※ 그리스는 2009년부터 안정성장협약의 교정적 조치 국가 대상이었으나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하여 2015년에 stability support programme의 모니터링 대상 국가로 전환된 후 EDP 리포팅 시스템(일반규칙)에서조차 제외되어 왔음

- 이사회가 집행위원회의 권고 승인 시, 안정성장협약의 교정적 조치 국가는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 3개국만 남게 됨

- 통계청, 2017년 1분기 EA19(Euro Area) 및 EU28(European Union)의 재정적자 및 채무 발표(2017.7.20.)^{3) 4)}
 - 2017년 1분기 EA19의 재정적자(계절조정)는 GDP 대비 0.9%이며, EU28은 1.0%
 - EA19의 재정수입은 GDP 대비 46.5%이며, 재정지출은 GDP 대비 46.3%
 - EU28의 재정수입은 GDP 대비 45.2%이며, 재정지출은 GDP 대비 46.2%
 - 2017년 1분기 EA19의 국가채무는 GDP 대비 89.5%이며, EU28은 84.1%로 전 분기 대비 0.3%p, 0.5%p씩 상승함

* 자료 수집 및 정리: 구윤모 전문연구원, 이소영 연구원

1) EU 이사회, <http://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17/07/11-2017-country-specific-recommendations/>

2) EU 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commission/news/negotiations-uk-and-closing-excessive-deficit-procedure-greece-2017-jul-12_en

3) EU 통계청,

<http://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8118646/2-20072017-BP-EN.pdf/52d2adb4-0cd0-4dc7-b6c8-4fce0369fb82>

4) EU 통계청,

<http://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8118661/2-20072017-AP-EN.pdf/83147478-c193-40e9-8a0a-b76e56a5cebc>



〈표 1〉 유럽의 재정적자 및 채무

(단위: GDP 대비 %)

	2016 Q1	2016 Q2	2016 Q3	2016 Q4	2017 Q1
EA19					
재정적자	1.7	1.6	1.6	1.1	0.9
총수입	46.2	46.4	46.3	46.3	46.5
총지출	47.9	48.0	48.0	47.4	47.4
국가채무	91.2	-	-	89.2	89.5
EU28					
재정적자	2.0	1.8	1.7	1.2	1.0
총수입	44.7	45.0	45.1	45.1	45.2
총지출	46.7	46.8	46.8	46.3	46.2
국가채무	84.3	-	-	83.6	84.1

주: 수치는 국가별 및 EU 통계청의 데이터 합산
출처: EU 통계청



IMF

■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2017.7.24.)⁵⁾

- (경제 성장률) 2016년 세계 경제는 4월 WEO 전망보다 다소 높은 3.2%의 성장률이 추정됨(이런 높은 경제 성장률과 인도의 전망 수치 수정(national accounts revisions)이 성장률 조정의 주요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음)
 - (세계) 세계 경제성장률은 2017년 3.5%, 2018년 3.6%으로 전망
 - (선진국)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은 2017년 2%, 2018년 1.9%로 전망
 - ☞ (미국) 2017년과 2018년의 성장률 전망은 각각 2.3%에서 2.1%, 2.5%에서 2.1%로 하락

- ☞ (영국) 2017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1분기의 예상보다 저조한 경제 활동으로 인하여 성장률 저하
- ☞ (유로지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2017년 1분기의 경제활동이 활발하였고, 2016년 4분기의 성장률과 더불어 2017년 경제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추정
-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의 성장률은 2016년 4.3%, 2017년 4.6%, 2018년 4.8%로 추정되며 4월 전망보다 다소 상승
 - ☞ (중국) 2016년과 2017년 6.7%, 2018년 6.4%를 보이며, 성장률의 하락세는 점차 증가하는 국가 채무에 기인함
 - ☞ (인도) 2016년 환율조정으로 경제활동이 다소 둔하였지만 연초 성장의 가속화와 정부 지출로 인하여 성장률은 7.1%를 기록하였

5) IMF, <http://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17/07/07/world-economic-outlook-update-july-2017>

으며, 2017-18년의 성장률도 오를 것으로 예상

- (리스크) 여러 잠재적 리스크는 중기적으로 경제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 WEO는 리스크를 4개의 범주로 분류함
 - 정책적 불확실성
 - ☞ 브렉시트 협상 이후
 - ☞ 미국의 예산, 규제 및 재정 정책
 - 금융 긴장감
 - ☞ 중국의 신용대출 증가
 - ☞ 미국의 통화정책
 - ☞ 유로지역의 은행 안정성
 - ☞ 금융 규제 완화(rollbacks of financial regulation)
 - 비경제적 요인
 - ☞ 지정학적 긴장감, 국가 내 정치적 불화, 약

- 한 거버넌스 및 부정부패
 - 내부지향적 정책
 - ☞ 보호무역주의 및 포용적 성장을 저해하는 시장 개혁의 부재
- (정책 제언)
 - 재정, 통화 및 구조적 정책을 통한 성장 동력 강화
 - 생산성 증대, 대외수지 조정(reduce excess external balance) 및 유가 하향조정을 통한 성장 회복
 - 국제 협력 및 자유 · 공정 무역 장려
 - 포용적 성장을 위한 노력

〈표 2〉 WEO 세계 경제전망

(단위: % 성장률)

	2015	2016	2017	2018	WEO 4월 대비 변화(%p)	
					2017	2018
세계	3.4	3.2	3.5	3.6	0.0	0.0
선진국	2.1	1.7	2.0	1.9	0.0	-0.1
미국	2.6	1.7	2.0	1.9	-0.2	-0.4
유로 지역	2.0	1.8	1.9	1.7	0.2	0.1
독일	1.5	1.8	1.9	1.7	0.2	0.1
프랑스	1.1	1.2	1.5	1.7	0.1	0.1
일본	1.1	1.0	1.3	0.6	0.1	0.0
영국	2.2	1.8	1.7	1.5	-0.3	0.0
캐나다	0.9	1.5	2.5	1.9	0.6	-0.1
개발도상국	4.3	4.3	4.6	4.8	0.1	0.0
중국	6.9	6.7	6.7	6.4	0.1	0.2
인도	8.0	7.1	7.2	7.7	0.0	0.0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uly 2017.



OECD

- Government at a Glance 2017 발표(2017.7.13.)⁶⁾
 - 지난 세계 경제 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의 정부가 사회 보장 기금 지출 증가 및 공무원 감축 등 새로운 대책을 추진하였음
 - OECD는 2009년부터 꾸준히 감소하는 재정투자(government investment)에 대한 국가들의 대응 시작이 필요함을 제언
 - OECD 회원국의 평균 정부지출은 2007년의 GDP 대비 38.8%에서 2015년 40.9%로 증가
 - 총 고용 대비 공무원 수는 2015년 18.1%로 2007년의 17.9%에서 큰 변동 없음
 - 2015년 사회적 지출은 인구 고령화와 낮은 고용률로 인해 2015년 총 지출 대비 41%(2007년 37%)를 기록
 - 낮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재정투자는 2009년 총 지출 대비 9.3%에서 2015년 7.7%로 하락
 - 동 보고서는 정부 개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
 - 재정 안정화는 지속되나 높은 채무의 비율이 지속되고 재정투자는 감소 추세
 - 의료 보험과 사회 보장 관련 공공지출이 증가
 - 고위 공무원 직급 중 여성의 비율이 현저히 낮음
 - 열린 정부를 위한 움직임이 활기를 띠고 있으나 더 많은 평가가 필요

-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과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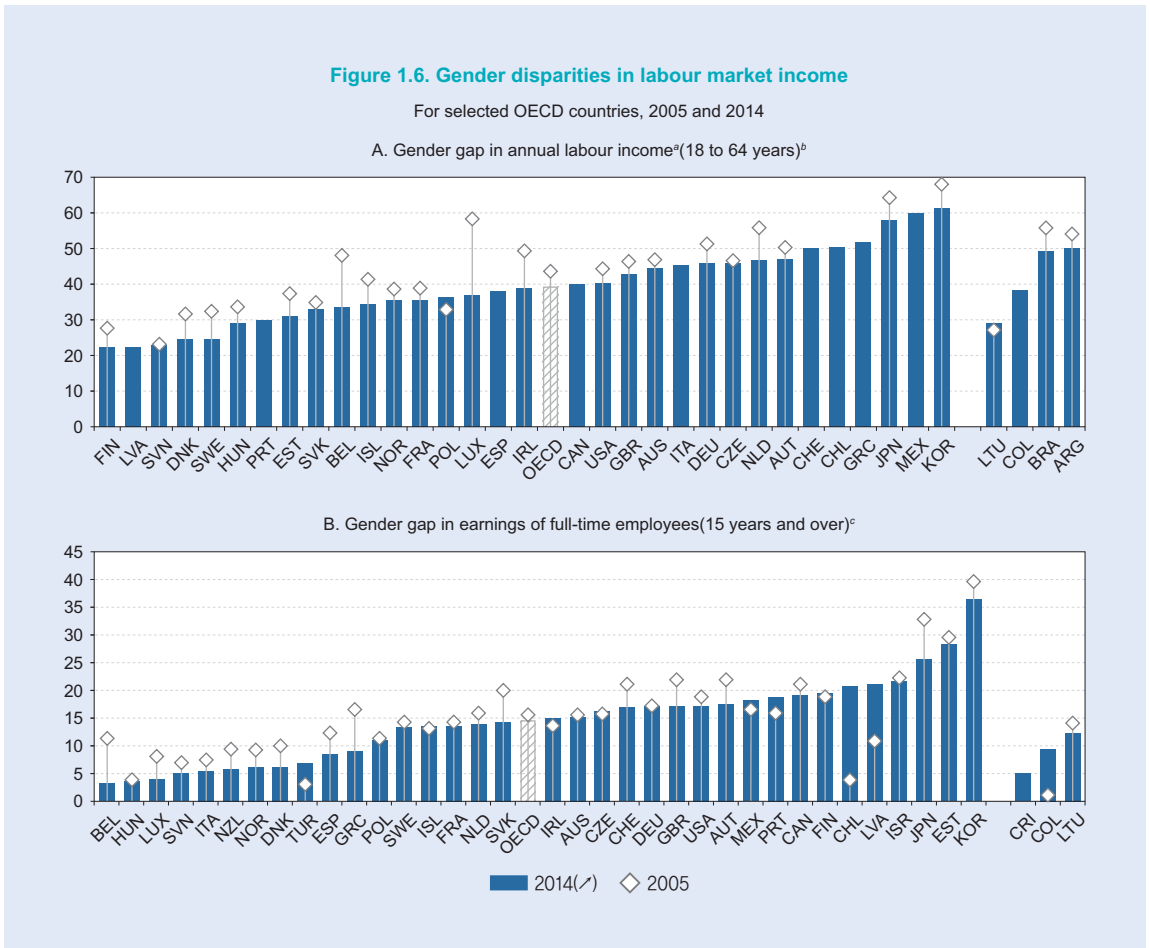
- Employment Outlook 2017 발표(2017.7.13.)⁷⁾
 - 세계화에 관한 부정적 인식
 - 2008년 금융위기로 발생한 고용불평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지만 많은 국가들이 국제 무역 및 투자 관련 경제 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음
 - ☞ OECD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에서 강조하는 세계화의 혜택과 세계 통합에 반대하는 대중주의적 여론이 고용, 기술 및 사회 보호 정책 곳곳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고용 정책은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여야 함
 - 노동시장의 성과 평가를 위한 다양한 접근
 - 노동시장의 성과는 대개 고용률과 실업률로 평가되지만 임금, 안정성, 노동 환경 등을 포함한 노동의 질, 그리고 임금격차, 성별 격차, 장애인 노동 격차 등과 같은 노동시장 통합에 관한 평가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함
 - ※ OECD 국가들에서 성별 임금격차는 점점 완화되고 있으나, 이 중 한국은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6) OECD (2017), Government at a Glance 2017,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gov_glance-2017-en

7) OECD (2017), OECD Employment Outlook 2017,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mpl_outlook-2017-en

[그림 1] 국가별 노동시장 내 성별임금 격차

(단위: %)



출처: OECD (2017), OECD Employment Outlook 2017, OECD Publishing, Paris.

- 기술과 세계화로 인하여 변해가는 노동시장
 - 지난 20년간 기술의 발전으로 OECD 회원국들은 대부분의 일자리들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옮겨가면서 직업 양극화와 제조업의 쇠퇴를 경험하였음
 - ☞ 노동자들이 새로운 노동환경에 적응하고 해

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 정책 및 새로운 사회 보장 시스템 등의 역할이 중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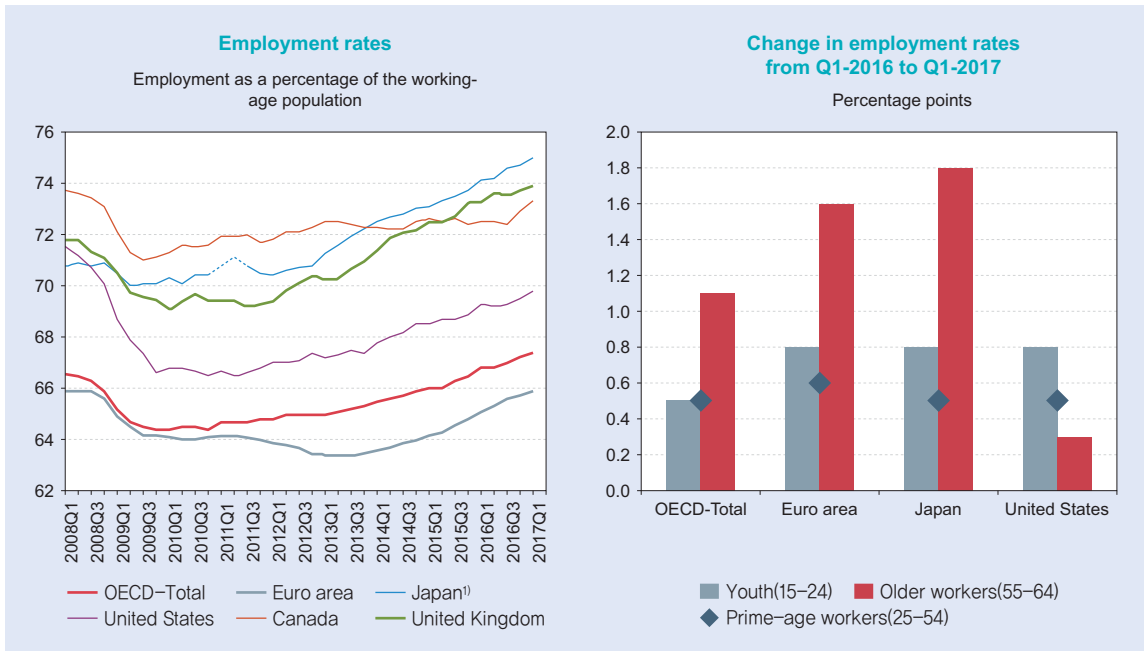


- 2017년 1분기 고용률 발표(2017.7.17.)⁸⁾
 - 2017년 1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전분기 대비 0.2%p 상승한 67.4%
 - * 노동참여율은 0.1%p 상승한 71.8%
 - 2016년 1분기 대비 OECD 고용률은 모든 연령에서 상승하였으며, 고령층(55-64세)에서 1.1%p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고 청년층(15-24세)과 핵심연령층(25-54세)에서는 각각 0.5%p 증가로 보통의 상승폭을 보임

[그림 2] OECD 고용률

(단위: %)



주: 1) Statistical Breaks for Japan in Q1-2011 and Q3-2011

출처: OECD, Quarterly Labour Market Statistics.

8) OECD, <http://www.oecd.org/newsroom/employment-situation-first-quarter-2017-oecd.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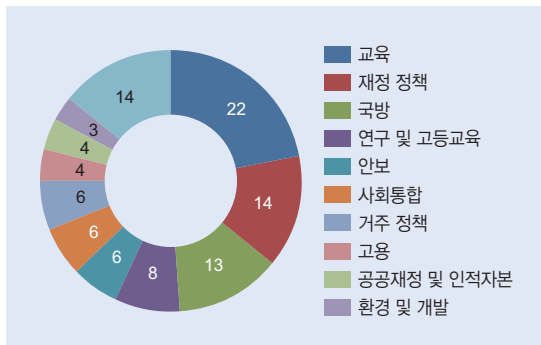
프랑스

1. 예산 · 결산 등

- 재무부, 2016년 성과보고서(Les Données De La Performance) 발표(2017.7.12.)⁹⁾
 - (재정수지) 2016년 프랑스 재정수입은 3,040억유로, 재정지출은 3,799억유로이며, 일반회계수지(budget général) -759억유로와 특별회계(comptes spéciaux) 68억유로를 합하여 총 재정수지(budget total de l'état)는 -691억유로

[그림 3] 2016년 총 세출 예산 분포

(단위: %)



출처: 재무부, Les Données De La Performance 2017

2. 기타

- 감사원, 공공재정 현황 및 전망 보고서 (Rapport sur la situation et les perspectives des finances publiques) 발간(2017.6.29.)¹⁰⁾

- (재정적자) 2012-16년 프랑스의 재정적자 감소는 더디게 진행되었음
 - 2016년 적자는 GDP 대비 3.4%로 전년 대비 0.2%p 감소하였으며, 이는 2011-15년도 평균 감소율인 0.3%p보다 낮은 수치임
 - 2016년 채무 규모는 GDP 대비 96.3%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7년 대비 32%p, 2011년 대비 11%p 증가한 수치임
 - *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EU 주변국들에 비하여 높은 수준
 - EU의 안정성장협약에 의하여 적자감축목표제시: 2017년 GDP 대비 2.8%, 2018년 2.3%, 2019년 1.6%, 2020년 1.3%
 - ☞ 하지만 강력한 교정 장치가 실행되지 않는다면 2017년 재정적자는 목표치보다 0.4%p 상승하여 GDP 대비 3.2%일 것으로 예상
- (공공 지출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단계) 프랑스는 주변국에 비하여 재정지출이 높은 편이며, 지출 감축을 위하여 제도적 · 정치적 프레임워크가 더욱 긴밀하게 이행되어야 함

9) 예결산 관련 문서 모음.
https://www.performance-publique.budget.gouv.fr/sites/performance_publique/files/files/documents/performance/donnees_performance_2017.pdf

10) 예결산 관련 문서 모음.
https://www.performance-publique.budget.gouv.fr/actualites/2017/rapport-situation-perspectives-finances-publiques-cour-comptes#_Ww_tvmlSUI



〈표 3〉 프랑스 재정적자 및 채무(dette)

(단위: 십억유로, GDP 대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재정적자	105 (5.1)	100 (4.8)	85 (4.0)	84 (3.9)	79 (3.6)	76 (3.4)
채무(dette)	1,754 (85.2)	1,868 (89.5)	1,953 (92.3)	2,038 (94.9)	2,098 (95.6)	2,147 (96.3)

출처: 프랑스 통계청

 독일

■ 재무부, FY2018 예산 초안 및 2021년 재정 계획 발표(2017.6.28.)¹¹⁾

- 재무부 장관은 독일의 재정이 매우 양호한 상태라고 자부하며, 매년 신규 채무 없이 미래를 위한 투자, 교육 및 안보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
- (지출) 연방정부의 지출은 2017년 3,291억유로에서 2021년 3,568억유로까지 상승할 전망이며, 미래·성장 지향적인 지출의 상승이 두드러짐
 - (투자·교육) 투자 관련 지출은 2016년 332억

유로에서 2019년 371억유로로, 교육 관련 지출은 2016년 207억유로에서 2019년 230억유로로 증가 전망

- (안보 및 개발협력) 국내 안보 강화를 위한 예산 증가로 인하여 내무부 예산이 11.5% 증가하며 국제경제개발협력 분야 예산 또한 크게 증가하여 2015~2018년에 35% 상승
- (난민지원) 독일 내 난민의 사회융합과 난민 생성 원인 대응은 정책적 우선순위로 분류되며 2018년 난민 관련 연방정부의 예산은 214억유로임
 - 지난 2년의 예산 감축에 의하여 187억유로의

〈표 4〉 FY2018 예산 및 FY2017-21 중기재정계획 기본수치

(단위: 십억유로)

	2017 수치	2018 목표	중기재정계획안 기본수치		
			2019	2020	2021
재정지출	329.1	337.5	348.2	349.4	356.8
전년 대비 증가율(%)	(3.8)	(2.6)	(3.2)	(0.3)	(2.1)
재정수입	329.1	337.5	348.2	349.4	356.8
조세수입	301.0	308.8	321.8	327.1	341.6

출처: 재무부, Bundeshaushalt 2018.

11) 6월 발표된 FY2018의 예산 초안은 8~9월경에 세부내용이 보완되어 발표될 예정
재무부,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17/06/2017-06-28-PM20-bundeshaushalt-2018.html>

난민 지원 예산이 비축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새로운 채무 생성 없이 지출이 가능함

- (채무) 안정성장협약에 의하여 2020년까지 GDP 대비 60% 수준으로 채무비율 감소 계획

 **일본**

■ 내각부, 2017 경제 ·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발표(2017.6.9.)¹²⁾

- 내각부의 2017년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은 국내 인적투자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중 점으로 함
- 경제 동향 및 과제
 - (경제동향) 4년 반 동안의 아베노믹스 추진에 의하여 현재 일본의 명목GDP는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이에 고용률과 임금 또한 상승세
 - (과제) 600조엔 경제실현, 1.8대의 출산율 진 입, 육아에 의한 경력단절 근절 등 3대 과제 지 속 추진
 - ☞ 노동 방식 개혁과 인적자본 투자를 통한 생 산성 향상과 분배의 선순환 실현
- 성장 및 분배의 선순환과 중장기 발전을 위한 주 요 현안
 - (노동 및 인적자본) 노동방식 개혁과 인적자원 투자를 통한 평생활동 사회 구현
 - ☞ 저출산 대책과 여성의 경제참여활동 및 사 회활동 지위 향상 등이 수반됨
 - (성장전략) IT 기술과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차 세대 인프라를 구축하는 Society 5.0의 실현 및 지방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성 향상

☞ 투자 및 규제개혁 촉진, 새로운 유망 시장의 확대 및 해외 성장 시장과의 연계 강화

- (소비 활성화) 가처분소득을 확대하고 관광과 여가 관련 소비 증진
- (지역활성화) 지역 인재 발굴 및 투자와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
 - ☞ 농업종사자의 소득 향상을 위한 시스템 마련
- (안전한 경제 · 사회 기반 확보) 대외적으로 국제 사회의 평화를 선도하고 대내적으로 치안을 강화
 - ☞ 신재생에너지의 도입으로 국민부담 억제 및 자원 확보 추진

• 경제 · 재정 개혁 추진

- (목표) ‘경제 회복 없이는 재정건전화를 이룰 수 없다’는 기본 방침 아래 600조엔 경제 실현 과 2020년까지 재정건전화 달성
- (분야별 개혁)
 - ☞ (사회보장) 국민건강보험 인센티브 강화, 의 료비 적정화 조치 및 생활보호제도 재검토
 - ☞ (사회자본 정비) 마을 인프라 구축 및 토지 의 적절한 이용과 관리 도모
 - ☞ (지방재정) 지방 재무행정 구조개혁, 지방 공관들의 온라인 프로그램화 가속
 - ☞ (교육) 저출산을 감안한 교육 및 과학 기술 예산의 효율화
 - ☞ (세입 개혁)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한 전반 적인 세금 체계 정비 추진
- 2018년 예산 편성 관련 기본 개념
 - (기조) 인적자본투자에 의한 생산성 향상 및 2%대의 물가 안정

12) 내각부, http://www5.cao.go.jp/keizai-shimon/kaigi/cabinet/2017/summary_ja.pdf



- (기본 개념)
 - ☞ 경제·재정 재생 계획의 이행
 - ☞ 경제·재정 자문회의를 통한 개혁의 관리 및 평가 강화
 - ☞ 사회보장의 지속가능성 향상 및 인적자원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강화
 - ☞ 주요 분야별 개혁의 착실한 이행

- 금융 분야 주요 리스크
 - 금융위기는 모든 국가가 직면하는 금융 분야 리스크 중 가장 큰 위험이며, 영국과 같이 금융 분야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더욱 위험함(금융위기 발생의 가능성이 완전 차단될 경우는 없음)
- 재정지출 주요 리스크
 - 인구 고령화와 연금 지출 증가로 인하여 사회 복지 지출 및 건강 및 성인의 사회적 보조비용(Health and adult social care spending)이 상승하며, 이는 장기적 재정 지속가능성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음

 영국

- 예산책임청, 재정리스크(Fiscal risk report) 보고서 발표(2017.7.13.)¹³⁾
 - (배경) 2025년 까지 균형예산 달성과 중기 재정전망 제시 수치 유지 및 장기적 재정 지속가능을 위한 잠재적 위험요인 분별
 - 거시경제 주요 리스크
 - 잠재적 생산성 성장 리스크는 가장 중요한 장기적 거시경제 리스크이며, 인구 증가 및 노동 인구 비율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음. 생산성 성장 관련 작은 변화도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언급
 - 경기침체는 주기적으로 찾아오며 1970년부터 지금까지 10년마다 한 번씩 불황이 있었음. 이 중 3회는 GDP 대비 재정적자를 6%가량 상승 시킴
 - 브렉시트로 인한 새 무역 및 이주 조약이 생산성 성장 및 노동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함

- 재무부, 재정지출 통계 분석 2017(Public Expenditure Statistical Analyses) 발표(2017.7.19.)¹⁴⁾
 - (총 관리지출, Total Managed Expenditure)
 - FY2016-17 총 관리지출은 약 770억파운드를 기록하였으며, 향후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FY2019-20에는 약 830억파운드까지 상승할 전망
 - (총 중앙정부 지출, Total Central Government Expenditure)
 - FY2016-17 총 중앙정부 지출 약 590억파운드를 기록하였으며, FY2016-17에 600억파운드의 초반대로 진입한 후 FY2019-20에는 약 643억파운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13) 예산책임청, <http://budgetresponsibility.org.uk/frr/fiscal-risk-report-july-2017/>

14) 재무부,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30570/60243_PESA_Accessible.pdf

〈표 5〉 영국 재정 및 예산 전망

(단위: 백만파운드)

	실적	전망		
	'16-'17	'17-'18	'18-'19	'19-'20
총 관리지출(TME)=①+②	770,576	802,400	817,200	827,900
① (자원지출; resource spending)				
공공부문 경상지출(public sector current expenditure)	691,429	719,500	730,900	739,200
부처별지출한도(RDEL)	328,610	327,500	330,100	331,700
연간관리지출(RAME)	362,819	392,005	400,739	407,546
② (자본지출; capital spending)				
공공부문 총 투자(Public Sector gross investment)	79,147	82,900	86,300	88,700
부처별지출한도(CDEL)	51,866	56,100	58,600	61,800
연간관리지출(CAME)	27,281	26,820	27,714	26,932
총 중앙정부 지출(total CG own expenditure)	589,167	619,572	631,100	642,600
중앙정부 DEL 지출(CG own expenditure within DEL)	280,790	283,618	288,545	294,529
중앙정부 부처별 AME 지출(CG own expenditure within dept AME)	259,014	330,083	331,596	342,546
기타*	4 9,363	5,871	10,959	5,515

주: 1. DEL: Departmental Expenditure Limit
 2. AME: Annually Managed Expenditure
 3. TME: Total Managed Expenditure
 4. 기타*: Locally financed expenditure in Northern Ireland, Net expenditure transfers to the EU, Central government debt interest, Accounting and other adjustments의 합
 5. Table 1.1과 6.1에서 발췌

출처: 재무부, Public Expenditure Statistical Analyses 2017.



 미국

아래 <표6>은 최근(5~7월)에 OMB에서 발표한 대통령 예산안 및 예산안 수정전망(MSR)과 CBO에서 발표한 예산·경제 수정전망 및 대통령 예산안 분석 보고서 등 총 4개 보고서의 재정 전망 수치를 하나의 표로 정리하여 놓은 것임

<표 6> 미국 재정 전망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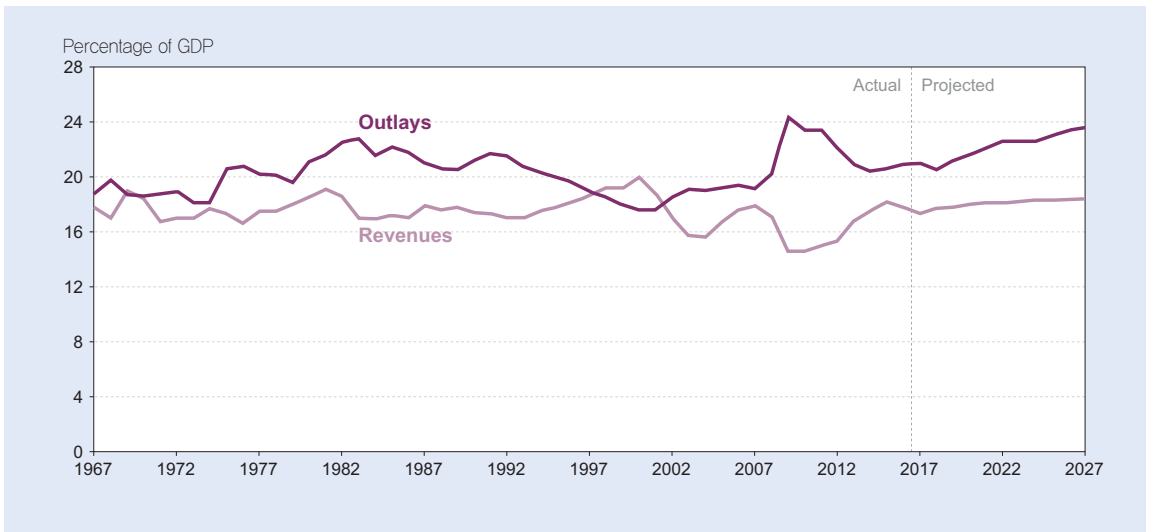
재정 전망		실적	전 망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수입	a	17.8	18.1	18.3	18.2	18.1	18.0	18.1	18.1	18.2	18.2	18.3	18.4
	b		17.3	17.7	17.8	18.0	18.1	18.1	18.2	18.3	18.3	18.4	18.4
	c		17.3	17.5	17.6	17.7	17.7	17.7	17.8	17.8	17.9	18.0	18.0
	d		17.4	17.6	-	-	-	-	-	-	-	-	-
지출	a	20.9	21.2	20.5	20.7	20.3	20.0	19.9	19.4	18.9	18.9	18.7	18.4
	b		21.0	20.5	21.2	21.6	22.1	22.6	22.6	22.6	23.0	23.4	23.6
	c		21.0	20.4	20.9	20.8	20.8	21.0	20.6	20.4	20.6	20.7	20.6
	d		21.1	20.5	-	-	-	-	-	-	-	-	-
재정적자	a	3.2	3.1	2.2	2.5	2.2	2.0	1.8	1.3	0.8	0.6	0.4	-0.1
	b		3.6	2.8	3.3	3.6	4.0	4.5	4.4	4.3	4.7	5.0	5.2
	c		3.6	3.0	3.3	3.1	3.1	3.2	2.8	2.6	2.7	2.7	2.6
	d		3.7	2.9	-	-	-	-	-	-	-	-	-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	a	77.0	77.4	76.7	76.2	75.1	73.7	72.2	70.2	67.8	65.3	62.7	59.8
	b		76.7	78.0	78.8	80.0	81.4	82.9	84.4	85.7	87.3	89.2	91.2
	c		76.7	78.1	78.9	79.7	80.2	80.6	80.6	80.3	80.2	80.0	79.8
	d		77.9	77.9	-	-	-	-	-	-	-	-	-

출처: a: (대통령예산안) OMB, A New Foundation For American Greatness FY2018, 2017.5.23.
 b: (예산·경제 수정전망) CBO, An Update t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17 to 2027, 2017.6.29.
 c: (대통령예산안 분석) CBO, An Analysis of the President's 2018 Budget, 2017.7.13.
 d: (예산안 수정전망) OMB, Mid-Session Review: Budget of the U.S. Government: FY2018, 2017.7.15.

- 의회예산처(CBO), FY2017-2027 예산·경제 수정 전망(An Update t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17 to 2027) 발표(2017.6.29.)¹⁵⁾
 - CBO는 현행법이 유지될 시 재정적자와 연방 채무가 증가하며, 경제성장률은 2018년 2.0%, 이후 2027년까지는 2.0%보다 다소 낮은 성장률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재정적자) 연방정부의 연금 및 의료보험 지출 증가, 정부 채무의 높은 이자율 및 낮은 세수 증가율로 인하여 재정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적자는 2016년 GDP 대비 3.2%에서 2017년 3.6%로 상승 후 2018년 2.8%로 하락하였다가 다시 상승하여 2027년에 5.2%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경제성장) 미국 경제는 2018년까지 성장을 하면서 높아진 노동수요로 인해 실업률의 하락과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 압력이 전망됨
 - 실업률은 2017년 초 4.7%, 2017년 말 4.3%로 하락한 후 2018년에 4.2%로 더욱 감소 예상

[그림 4] FY2017-2027 수입·지출 전망

(단위: GDP 대비 %)



15) 의회예산처, <https://www.cbo.gov/publication/52801>



〈표 7〉 FY2018–2027 재정전망

(단위: 십억유로, GDP 대비 %)

회계 연도	'16	'17	'18	'19	'20	'21	'22
수입	3,268 (17.8)	3,315 (17.3)	3,531 (17.7)	3,687 (17.8)	3,853 (18.0)	4,011 (18.1)	4,178 (18.1)
지출	3,853 (20.9)	4,008 (21.0)	4,094 (20.5)	4,375 (21.2)	4,628 (21.6)	4,891 (22.1)	5,205 (22.6)
재정수지	-585	-693	-563	-689	-775	-879	-1,027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	14,168	14,656	15,537	16,282	17,108	18,037	19,109
GDP	18,407	19,120	19,924	20,671	21,380	22,165	23,037
회계 연도	'23	'24	'25	'26	'27	'18-22	'18-27
수입	4,361 (18.2)	4,545 (18.3)	4,742 (18.3)	4,948 (18.4)	5,158 (18.4)	19,261 (18.0)	43,016 (18.2)
지출	5,419 (22.6)	5,628 (22.6)	5,967 (23.0)	6,300 (23.4)	6,621 (23.6)	23,194 (21.6)	53,128 (22.4)
재정수지	-1,057	-1,083	-1,225	-1,352	-1,463	-3,933	-10,112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	20,212	21,342	22,613	24,014	25,524	-	-
GDP	23,951	24,905	25,896	26,927	27,999	107,178	236,856

출처: CBO, An Update t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17 to 2027, 2017.6.29.

■ 의회예산처(CBO), FY2018 대통령 예산안 분석(An Analysis of the President's 2018 Budget) 보고서 발표(2017.7.13.)¹⁶⁾

• (재정전망) 재정적자는 2017년 6,930억달러에서 2018년 5,930억달러로 감소 후 2027년 7,200억 달러로 상승할 전망

- 2018-2027의 총 누적 적자는 6.8조달러로 전망되며 이는 CBO의 기준선 전망 재정적자보다 3분의 1 적은 수치

* 2018-2027 연평균 재정적자는 GDP 대비 2.9%

- 비정부부문소유채무는 2017년 GDP 대비 76.7%를 기록하고 2027년 79.8%로 전망되며, 향후 10년간 80%에 근접한 수치를 나타낼 것

으로 예상

* 2027년 GDP 대비 비정부부문소유채무는 기준선전망보다 11%p 낮을 것으로 보임

• (주요 재정 변화) 재정적자 및 부채의 감소는 현 재법 대비 큰 차이를 보이는 의무 및 재량지출의 감소에 의함

- 2018-2027의 의무지출은 기준선 전망 대비 2조달러(6%) 적으며, 2018년 GDP 대비 12.7%, 2027년 13.9%로 전망

- 주요 세출 변화 요인

☞ (건강보험) 기존의 건강보험법(Affordable Care Act)을 폐지 및 대체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법안으로 향후 10년간 1.9조달러(13%)

16) 의회예산처, <https://www.cbo.gov/system/files/115th-congress-2017-2018/reports/52846-apb.pdf>

를 절약하고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개정으로 6,100억달러 세출 감축 전망

☞ (소득보장 정책) 소득보장 프로그램 지출의 감소로 2,380억달러 감축 전망

☞ (학자금 대출 정책) 관련 정책 개정으로 1,000억달러 지출 감소 전망

■ 예산관리처(OMB), FY2018 예산안 수정 전망 (Mid-Session Review, MSR) 발표(2017.7.15.)¹⁷⁾

• FY2017 재정적자는 기존 전망 6,030억달러(GDP 대비 3.1%)에서 990억달러 증가한 7,020억달러 (GDP 대비 3.7%)

- (수입) 수입은 기존 전망 대비(대통령 예산안, 5.23. 발표) 1,160억달러 감소한 3.3조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예상보다 적게 걷힌 개인 및 법인 소득세에 인함

- (지출) 지출은 기존 전망 대비 170억달러 감소한 4조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사회 보장 제도, 영양보조프로그램(SNAP), 및 세금 환급 등 법정지출의 감소에 인함

• FY2018 재정적자는 기존 전망 4,400억달러에서 1,490억달러(0.7%p) 증가한 5,890억달러(GDP 대비 2.9%)

- (수입) 수입은 기존 전망 대비 1,400억달러 감소한 3.5조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2017년에 적게 걷힌 개인 및 법인 소득세수의 여파임

- (지출) 지출은 기존 전망 대비 100억달러 증가한 4.1조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군인 건강 프로그램(defense health program) 등과 같은 재

량지출에서 예상되는 큰 지출 증가에 의한

〈표 8〉 OMB 예산안 수정전망(Mid-Session Review)

(단위: 십억유로, GDP 대비 %)

	2016	2017	2018
수입	3,268 (17.8)	3,344 (17.4)	3,514 (17.6)
지출	3,853 (20.9)	4,045 (21.1)	4,104 (20.5)
재정적자	585 (3.2)	702 (3.7)	589 (2.9)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	14,168 (77.0)	14,921 (77.9)	15,600 (77.9)
GDP	18,407	19,162	20,014

출처: OMB, Mid-Session Review; Budget of the U.S. government; FY2018, 2017.7.15.

17) 예산관리처, <https://www.whitehouse.gov/sites/whitehouse.gov/files/omb/budget/fy2018/18msr.pdf>



조세 · 재정 정책 및 연구 동향

■ 정책 및 연구 동향: 7.10.~8.9. 세미나 등: 8.1.~8.31.

* 이 자료는 국내외 조세 · 재정과 관련한 정책 및 연구 동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 세미나

세미나 개요	주최(주관)기관	개최일
<p>■ 2017 하계학술대회 및 워크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17. 8. 25.(금)~26.(토) • 장소: 국세공무원교육원(제주도) • 주제: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과 2017 개정세법 평가-국민주권 정부 증세, 어떻게 할 것인가? • 발표: 구재이 학회장(한국조세연구포럼), 신승근 교수(한국산업기술대) • 토론: 이영환 교수(계명대) 외 	한국조세연구포럼	17-08-25 ~08-26
<p>■ 제19회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한국회계학회 세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17. 8. 23.(수) 09:50~11:50 •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 주제: Voluntary Disclosur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the Managerial Opportunism : Evidence from Korean Stock Market 외 • 발표: 김경순(조선대) 외 • 토론: 최성호(조선대) 외 	한국회계학회	17-08-23
<p>■ 제19회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한국세무학회 세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17. 8. 22.(화) 14:00~15:20 •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 주제: Tax Motivated Income Shifting by Multinationals under a Worldwide Tax System-Evidence from Korea 외 • 발표: 송보미(서울대) 외 • 토론: 조형태(홍익대) 외 	한국세무학회	17-08-22
<p>■ 조세정책토론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17. 8. 16.(수) 14:00~16:00 • 장소: 전령견회관 토포스홀 • 주제: 소득재분배 바람직한 방향은?-초고소득층 세율인상을 중심으로 • 발표: 오문성 조세정책연구소장(조세일보, 한양여대 교수) • 토론: 구재이 학회장(한국조세연구포럼) 외 	조세일보 외	17-08-16
<p>■ 조세정책심포지엄 『2017 세법개정안의 평가와 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17. 8. 9.(수) 15:00~17:30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제: 2017 세법개정안의 평가와 제언 • 토론: 이종인 정책연구위원(여의도연구원, 자유한국당) 외 	한국세무학회 외	17-08-09



▶ 정책 및 연구

(1) 정책

제목	발행기관	발행일
<p>◇ 2017년 세법개정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행 조세 지원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 ○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서민·중산층 세부담은 축소 ○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확대·양극화 해소를 통해 「지속적인 국민성장」 	기획재정부	17-08-02
<p>◇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8.2.(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 ○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 정비 	기획재정부	17-08-02
<p>◇ 새정부 경제정책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 중심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주도 성장: 가계 소득을 새로운 성장 원천으로 활용 ○ 일자리 중심 경제: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복원 ○ 공정 경제: 경제주체 간 합리적 보상체계 정립 ○ 혁신 성장: 3% 성장능력 갖춘 경제 유지 	기획재정부	17-07-25
<p>◇ 2017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확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 등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2017년 추경 예산안이 7월 22일(토) 국회 본회의 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안 대비 △1조 2,816억원이 감액되고, +1조 1,279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전체 규모는 △1,537억원 순감 • 감액분 중 일부인 7,000억원을 국채 상환에 활용하여 국가채무는 정부안보다 개선(39.7 → 39.6%) 	기획재정부	17-07-22

제목	발행기관	발행일
<p>◇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비전 :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 5대 국정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 주인인 정부 ○ 더불어 잘사는 경제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국정기획 자문위원회	17-07-19

(2) 국내외 연구(Papers & Briefs)

제목	발행기관	발행일
<p>◇ 한국의 사회복지지출(2014년 기준) 및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2013년 기준) 통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지출 통계는 국제비교 목적상 OECD 기준에 따라 추계되며, “가구와 개인이 복지에 불리한 환경에 처해 있는 동안의 공공과 민간기관에 의한 사회적 급여나 재정적 지원”을 말하며, GDP는 2008 국민계정체계(System National Accounts)를 기준으로 함 	사회보장위원회	17-08-03
<p>◇ 최저임금 인상의 의의와 향후 과제 / 김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최저임금안은 2017년 최저임금(시간급 기준 6,470원)에 비하여 약 16.4% 인상된 것으로 역대 3번째로 높은 인상률임. 이러한 획기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 그러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초래할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큼. 따라서 이 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의의와 예상되는 긍정적·부정적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검토해 보고자 함 	국회입법조사처	17-07-28
<p>◇ 인구고령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 오강현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기대수명 연장 등에 따른 인구고령화는 중장기적으로 ① 자가·전세·월세 등의 점유형태와 주거면적 ② 단독·연립·아파트 등 주택유형 ③ 거주·투자 등 보유목적 측면에서 주택시장에 커다란 구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 진행속도가 주요국보다 빠른 데다 202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거 진입하면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압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큼 	한국은행	17-07-26



제목	발행기관	발행일
<p>◇ 트럼프 정부의 법인과세 개혁안과 시사점 / 임등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럼프 정부는 지난 4월 26일 세계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법인세 인하와 원천지주의 과세 도입 등을 통해 해외유보된 자본을 국내로 유입하게 만들고, 이에 따른 기업의 투자 촉진과 고용 창출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고 하였음. 특히 2조 6천억달러에 달하는 해외유보소득에 대한 대책 으로 원천지주의 과세전환을 선택한 것임 	한국경제연구원	17-07-13
<p>◇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임대소득과세 개편방안 : 연 25조원의 불로소득 정상과세하여 주거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집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해 25조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지만, 현행 제도로 얻을 수 있는 세액은 전체 규모의 2.1%에 불과함.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 초 계획보다 4년이나 미뤄진 임대소득 과세를 조속히 시행해야 함. 임대소득자에 적용하는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전환해야 하며, 다른 조세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임대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여러 특혜를 축소해야 함 	참여연대	17-07-13
<p>◇ The political economy of fiscal transparency and independent fiscal councils / by Roel Beetsma, Xavier Debrun, Randolph Sloof</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global surge in independent fiscal councils (IFCs) raises three related questions: How can IFCs improve the conduct of fiscal policy? Are they simultaneously desirable for voters and elected policymakers? And are they resilient to changes in political conditions? We build a model in which voters cannot observe the true competence of elected policymakers. IFCs' role is to mitigate this imperfection. ... (후략) 	ECB	17-08-04
<p>◇ Designing a Territorial Tax System: A Review of OECD Systems / by Kyle Pomerleau, Kari Jahnse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central goal of corporate tax reform is to fix the U.S.'s system for taxing the foreign profits of domestic businesses. • Many lawmakers have sought to reform the corporate tax by moving to a "territorial" tax system, which would exempt foreign profits of U.S. multinational businesses from domestic taxation. • Over the past 30 years, the vast majority of America's largest trading partners have moved to territorial tax systems. ... (후략) 	Tax Foundation	17-08-01

제목	발행기관	발행일
<p>◇ More Giving or More Givers? The Effects of Tax Incentives on Charitable Donations in the UK / by Miguel Almunia et. a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is paper estimates the tax-price elasticity of giving using UK administrative tax return data, exploiting variation from a large tax reform. We estimate both the in- tensive and extensivemargin elasticity, using a novel instrumental variables strategy. Then, we derive new conditions to evaluate the welfare consequences of changes in the generosity of the subsidy to donations. ... (후략) 	<p>CEPR (Center for Economic Policy Research)</p>	<p>17-07-28</p>
<p>◇ Sales Tax Holidays: Politically Expedient but Poor Tax Policy 2017 / by Joseph Henchman, Scott Drenkar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les tax holidays are periods of time when selected goods are exempted from state (and sometimes local) sales taxes. Such holidays have become an annual event in many states, with exemptions for such targeted products as back-to-school supplies, clothing, computers, hurricane preparedness supplies, products bearing the U.S. government's Energy Star label, and even guns. ... (후략) 	<p>Tax Foundation</p>	<p>17-07-25</p>
<p>◇ The Evolution of Potential VAT Revenues and C-Efficiency in Advanced Economies / by Junji Ued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 understand the cyclical movements of value-added tax (VAT) revenues in advanced economies, this paper analyzes changes in the C-efficiency ratio by decomposing it into changes in the compliance and policy gaps between 2000 and 2014. The results from a panel of EU member countries and Japan suggest that the cyclicity of C-efficiency is explained by the correlation of both gaps with the output gap. ... (후략) 	<p>IMF</p>	<p>17-07-11</p>



| 정책 흐름 |

- 2017년 세법개정안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2017년 세법개정안

* 본 자료는 2017년 8월 2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에서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개조식)입니다. <편집자 주>

I. 주요 개정내용

1 조세정책 여건 및 과제

- **(경제·고용)** 최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해외이전, 고용없는 성장 심화 등으로 ‘일자리-분배-성장’ 선순환 약화*

* 실업률(%): ('00) 4.4 → ('05) 3.7 → ('10) 3.7 → ('15) 3.6 → ('17.1~5월) 4.2

- 청년·여성 등의 취업애로*가 여전하며, 신규 일자리도 열악한 비정규직에 집중되어 낮은 임금**·고용불안에 직면

* 청년실업률(%): ('00) 8.1 → ('05) 8.0 → ('10) 8.0 → ('15) 9.2 → ('17.1~5월) 10.5

** 시간당 임금(대기업 정규직=100): (대기업 비정규) 63 (중기 정규) 53 (중기 비정규) 37

- **(양극화)** 그간 가계-기업*, 가계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사회안전망 미비***로 사후적 격차 축소 기능도 미흡

* 가계소득 비중(%): ('95) 69.0 → ('00) 67.9 → ('05) 64.8 → ('10) 60.4 → ('16) 62.1

** 임금 10분위 배율: ('06년) 11.0배 → ('15년) 14.8배

*** 지니계수 개선율(%, '14년): (한국) 13.5 ('15) (미국) 22.4 (영국) 31.3 (독일) 42.2

- 그 결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소비위축으

로 성장에도 부담

- **(재정여건)** 저출산, 복지제도 성숙 등에 따라 공공사회지출이 증가*하고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 등 재정수요** 확대

* GDP대비 공공사회지출('16년, %): (한국) 10.4 (OECD 평균) 21.0%

**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도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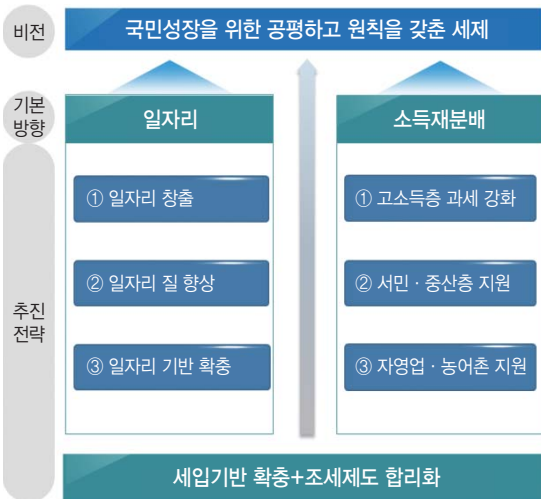
- 새 정부는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재정의 선도적 투자 확대 추진(지출증가 > 경상성장률)

⇒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에 역점을 두고 세제운용 필요

⇒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세입기반을 확대하여 재정수요 대비 필요

2 세법개정 기본방향

- ◇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
 -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행 조세지원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
 -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서민·중산층 세부담은 축소
 -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 추진
 - ⇒ 일자리 확대·양극화 해소를 통해 「지속적인 국민성장」



II. 주요 개정내용

1 일자리 지원

- ◇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청년·여성 등의 취업애로가 여전한 가운데,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시장 양극화도 심화
 - ⇒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늘릴수록 세제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전면 재편하여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 복원
 - ☞ 세제지원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 → 일자리 수(數) 증가
 - ☞ 임금 증가, 정규직 전환, 상생협력 등 지원 → 일자리 질(質) 향상
 - ☞ 창업·벤처 활성화 등 지원 → 일자리 기반(基盤) 확충

(1)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청년고용증대세제 통합·재설계 → 고용증대세제 신설
 - 투자와 연계하여 고용 간접지원 →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 직접지원
 -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기간 및 공제금액 대폭 확대
 - 다른 고용·투자지원 제도와의 중복 적용 배제 → 중복 적용 허용

〈현행〉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 & 고용을 동시에 하는 경우투자금액의 3~8% 공제 (1년간) * 다른 고용·투자지원 제도와 중복 배제 ◆ 공제한도: 상시근로자 증가 1인당 1,000~2,000만원 (실제실적: 1인당 평균 420만원) 						
청년 고용 증대 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정규직 고용시 정액 공제(1년간) <table border="1"> <thead> <tr> <th>중소</th> <th>중견</th> <th>대기업</th> </tr> </thead> <tbody> <tr>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300만원</td> </tr> </tbody> </table>	중소	중견	대기업	1,000만원	700만원	300만원
중소	중견	대기업					
1,000만원	700만원	300만원					

〈고용증대세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 공제 (중소·중견기업은 2년간) * 다른 고용·투자지원 제도와 중복 허용 			
구분 (단위: 만원)	중소 (2년간)	중견 (2년간)	대기업 (1년간)
상시근로자	700 (1,400)	500 (1,000)	-
청년정규직, 장애인 등	1,000 (2,000)	700 (1,400)	300 (300)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의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1년 → 2년으로 확대
- * 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 상당액×50~75%(청년, 경력 단절여성 100%)

■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 인상(10% → 30%, 중견 15%) ※ 일몰 3년 연장
- * 경력단절여성을 해당 중소기업이 재고용시 2년간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복직시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 인상(10% → 30%, 중견 15%) ※ 일몰 3년 연장
- * 특성화고 등 졸업자가 병역이행 후 중소기업에 복직시 2년간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 지역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수도권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적용시 지방 이전인원이 많을수록 세제혜택이 커지도록

감면소득 계산방법 개선*

* (현행) 과세표준×Min(이전급여비율, 이전인원비율)
 (개정) 과세표준×이전인원비율

■ 외국인투자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5년간 100%, 2년간 50% 소득세·법인세 감면
- 감면한도: 투자금액의 50%+고용 1인당 1,000~2,000만원(투자금액의 최대 40%)
- *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감면한도 적용시 고용기준 한도액 확대
- * (현행) 투자금액의 50%+고용기준 40% → (개정) 투자금액의 50%+고용기준 50%

■ 기업 M&A 등 조직 변경시 세제지원 요건에 고용승계요건 추가

- 기업 M&A 등 조직 변경시 세제혜택(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종업원의 80% 이상을 3년간 유지) 추가**
- * 사업계속성, 지분연속성 등
-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의 이행을 위한 구조조정의 경우에는 예외 인정

(2) 일자리 질(質)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 확대

■ 임금 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근로소득증대세제*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중·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증가를 유도하도록 개선 ※ 일몰 3년 연장
- *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에 대해 10%(대기업 5%) 세액공제
-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10% → 20%로 상향 조정
-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를 중·저소득 근로자로 조정(총급여 1.2억원 미만 → 7천만원 미만)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1인당 700만원(중소), 500만원(중견) 세액공제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액을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 일몰 1년 연장

■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 연장

- * 중소기업 취업 청년(15~29세), 장애인, 60세 이상인 자, 경력단절여성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70%) 제도의 적용기간을 취업 후 3년간에서 5년간으로 확대

■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 근로시간 단축(고용유지)에 따른 기업의 임금감소분 및 보전분에 대해 50% 소득공제
-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보전을 위해 시간당 임금을 인상시키는 경우 임금보전분

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50% → 75%)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몰 종료)

- * 투자·임금증가·배당 금액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시 추가 과세(세율 10%)
- Ⓐ 투자포함형: (소득의 80% - 투자(1)·임금증가(1.5)·배당(0.5)) × 10%
- Ⓑ 투자제외형: (소득의 30% - 임금증가(1.5)·배당(0.5)) × 10%
- 중·저소득 근로자 지원 및 투자·고용·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3년간 적용)

Ⓐ [기업소득* × α(60~80%) - {투자(1) + 임금증가(2~3) + 상생지원(3)}] × 20%

Ⓑ [기업소득* × β(10~20%) - {임금증가(2~3) + 상생지원(3)}] × 20%

* 법인세율 인상과 중복과세되지 않도록 기업소득에서 2천억원 초과분 제외

- 기업소득 사용기준율(α, β)은 실태분석을 거쳐 시행령 개정시 확정

* 현행 대비 세부담 변동이 최소화되도록 사용기준율·가중치 조정

-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 취지에 맞추어 배당과 토지 투자를 기업소득 사용 대상에서 제외

- 중·저소득 근로자의 고용·임금증가 유도를 위해 가중치 및 적용대상 조정

☞ 고용증가에 따른 임금증가분 가중치를 대폭 상향(1.5~2 → 2~3)

* (현행) 1.5(청년 2) → (개정) 고용증가(청년 정규직·정규직전환 3)

☞ 임금증가분 계산시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 조정(총급여 1.2억원 미만 → 7천만

원* 미만)

* 전체근로자의 상위 10%, 300인 이상 기업의 상위 20% 수준

- 대기업이 2차·3차 협력기업과 성과공유, 협력 중소기업의 R&D 및 근로자 임금·복지 등에 지원하도록 상생지원액* 가중치 상향(1 → 3)

* 지원방식: 상생협력기금, 협력중소기업 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원

(3) 창업·벤처기업 육성 등 일자리 기반 확충 지원

■ 고용창출형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창업기업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시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 추가감면*

* (현행) 5년간 50% 감면 → (개정) 기본 50%+최대 50%(고용증가율×1/2)

-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제조업·광업 등: 10인, 기타 업종: 5인) 규정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신성장 서비스업종은 감면율을 초기 3년간 확대*

* (현행) 5년간 50% 감면 → (개정) 3년간 75%, 2년간 50% 감면

- 사내벤처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내벤처 등을 통해 분사*한 중소기업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 (현행) 종전 사업 승계시 창업 불인정 → (개정) 사내벤처 분사시 창업 인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사내벤처 분사시 창업으로 인정되는 요건

- ① 기존 사업자와 사업개시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 ② 사업개시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 & 최대주주

- 기술 우수기업 지원을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 (30~100%) 대상 확대*

* (현행) 벤처기업, 창업 3년 이내 기본·중진공의 기술평가 우수기업 등

(개정) 창업 3년 이내 신용평가사의 기술신용평가(TCB) 우수기업,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한 창업 7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 등 추가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시 세액공제* 요건 완화(인수·합병 대가로 현금 50% 지급요건 삭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시 기술가치금액의 10% 세액공제

■ 중소기업 지원세제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R&D를 많이 하는 기업에 지원이 확대되도록 중소기업 지원세제 개편

-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간 중복 허용

* 투자·고용과 관계없이 기업규모·업종·지역별로 세액의 5~30% 감면

-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지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현행 30% → 최대 40%)

- 다만, 특별세액감면은 모든 중소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감면한도(1억원)를 설정*

* 고용인원 감소시 감면한도(1억원)에서 1인당 500만원씩 축소

■ 재기 자영업자·벤처 창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한 후 '18.12.31.까지 재창업 또는 취업하는 경우 기존 체납세금**을 면제(1인당 3,000만원 한도)
 - * 폐업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준(업종별 5~15억원) 이하
 - ** '17.6.30.기준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가능성 없는 국세 체납액
- 신성장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법인세, 2억원 한도)
 - * 인공지능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투자한 제조업 및 신성장 서비스업
 - ** 법인이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과점주주 등이 법인 대신 납세의무 부담
- 대상: 소기업 기준(업종별 매출액 10억원 ~120억원)에 해당하는 신성장 벤처기업

2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 ◇ 계층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사회안전망 미비 등 사후적 교정 역할도 미흡하여 양극화 심화
 - ⇒ 소득재분배 개선을 통해 양극화 해소 및 사회통합 유도
 - ☞ 상대적으로 담세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세부담 적정화
 - ☞ 서민·중산층, 영세자영업자 등의 세부담은 축소
 -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지원

(1)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 과표 5억원 초과 40% →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
- * (대상인원) 9.3만명: 근로 2.0만명(상위 0.1%), 종합 4.4만명(상위 0.8%), 양도 2.9만명(상위 2.7%)

(단위: %)

과표구간	현행 세율	개정안
1,200만원 이하	6	(좌 동)
1,200만원~4,600만원	15	
4,600만원~8,800만원	24	
8,800만원~1.5억원	35	(좌 동)
1.5억원~3억원	38	
3억원~5억원		40
5억원 초과	40	42

* OECD국가 중 단일세율 국가(동구권 5개국), 연방국가 등 국세 비중이 낮은 국가(스위스 등 5개국)를 제외한 25개국 평균 41.9%(지방세 포함 47.1%)

■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

-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 조정
 - (현행) 20% → (개정) 과표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 * (코스피) 지분율 1%, 종목별 보유액 25억원('18.4월 15억원, '20.4월 10억원)
 - (코스닥) 지분율 2%, 종목별 보유액 20억원('18.4월 15억원, '20.4월 10억원)
-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 단계적 확대
 - (현행) '18.4월 종목별 15억원, '20.4월 10억원 초과
 - (개정) '18.4월 종목별 15억원, '20.4월 10억원, '21.4월 3억원 초과

■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 특수관계법인과외의 매출이 정상거래비율(대기업 30%, 중견 40%, 중소기업 50%)을 초과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얻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

•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 방지를 위해 지배주주 등의 증여세 과세대상 이익 계산방법 변경*

* (대기업) 세후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15%)×(주식 보유비율·3%)

→ 세후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주식보유 비율

(중견기업) 세후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40%)×(주식보유비율-10%)

→ 세후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20%)×(주식보유 비율-5%)

- 교차·3각 일감몰아주기 등 기업집단 간에 몰아준 일감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에 포함하여 계산

• 대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확대

- (현행) 특수관계법인과외의 거래비율이 30% 초과시 적용

- (개정) 특수관계법인과외의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거래액 1,000억원 초과시에도 과세대상에 추가

•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반영하여 일감몰아주기 과세시 중견·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범위를 상층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기업으로 확대

* '17.7.19.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상층기업집단 → 공시대상기업집단)

** 정상거래비율(대기업 30%, 중견 40%, 중소기업 50%) 등 우대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 세목간 형평, 과세인프라 확충 등을 감안하여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현행 7% → 3%로 단계적 축소*

* (현행) 7% → ('18) 5% → ('19 이후) 3%

■ 가업상속 지원제도* 개선

*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중소·중견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주후 양도시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

• 장수기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를 조정*

* (현행) 가업영위기간 10/15/20년 이상시 200/300/500억 원 공제

(개정) 가업영위기간 10/20/30년 이상시 200/300/500억 원 공제

•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신설('19년 시행)

*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다른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 부담 상속세액의 1.5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배제

•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연부연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연부연납 허용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연장*

* (현행) 2년 거치, 5년 분납(가업상속재산 비중이 50% 이상시 3년 거치, 12년 분납)

(개정) 10년(20년)으로 연장하고, 거치 여부는 선택 허용

(2)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수준 상향 조정(77~230만원 → 85~250만원)*
 - * 최대 지급액(만원): 단독 77 → 85, 홑벌이 185 → 200, 맞벌이 230 → 250
- 외국인 한부모 가구, 장애인에 대한 지급 확대
 -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한부모가구에 대해서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 장애인은 단독가구인 경우에도 연령제한(30세 이상)을 받지 않고 근로장려금 지급

■ 주거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10% → 12%로 인상
 - *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월세지급액(한도 750만원)의 10% 세액공제
-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12.31.까지 연장

■ 의료비 세액공제(15%) 확대

- 중증질환 등 건강보험산정특례지*가 지급한 의료비를 한도(700만원)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에 추가
 - * 중증질환(암, 중증희상 등), 희귀난치성질환(14개 질환), 결핵으로 진단을 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
- 성실사업자의 난임시술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 인상(15% → 20%)

■ 효도 장려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 부모 동거봉양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 완화(5년 이내 양도 → 10년 이내 양도)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없이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단독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구*로 분류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 * 소득기준: 1,300만원 → 2,100만원, 최대지급액: 85만원 → 200만원
- 노부모를 위해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재가 간병비 등(노인장기요양급여)을 공제대상 의료비**에 추가
 - * 현재는 월 한도액 이내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재가 급여 15%, 시설급여 20%)만 포함

■ 출산·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가정어린이집(5년 이상 운영)과 거주주택(2년 이상 거주)을 각각 1채 보유하는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 기부 장려를 위해 지정기부금단체에 어린이 집 추가
-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 최대한 중복 적용
 - * '18년부터 0~5세에 대해 아동수당 월 10만원(연 120만원) 지급("국정운영 5개년 계획"(국정위, 17.7.19.)) → 아동수당 관련 법률 제정과 연계
 - 기본공제(150만원)는 필요경비 성격, 자녀장려금*(CTC)은 저소득층 지원, 출산·입양세액공제**는 출산지원인 점을 감안하여 중복 지원
 - * 총급여 4천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서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 ** 출산·입양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추가공제

- 자녀세액공제(자녀 1인당 15만원 & 6세 이하 둘째자녀 추가공제 15만원)의 경우 아동수당과 중복지원임을 감안하여 중복 배제
 - ☞ 다만, 아동수당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자녀 1인당 15만원 세액공제”는 향후 3년간 계속 중복 지원
- 육아비용 경감 등을 위해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12.31.까지 연장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

- ISA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자유로운 중도인출을 허용*하여 납입원금 범위 내 중도인출시에도 세급혜택 유지
 - * 현재는 퇴직·폐업 등의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 ISA를 통한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 * (현행) 서민형 250만원(일반형·농어민 200만원)
 - (개정) 서민형·농어민 500만원(일반형 300만원)

■ 전통시장,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 허용
- 전통시장 소비촉진 등을 위해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17~'18년 지출분)으로 인상(30%→4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구입비·공연비 지출에 대해 공제율을 상향조정(15→30%)하고, 추가 한도 100만원 인정('18.7.1. 지출분부터 적용)

(3) 지역업·농어촌 세제지원 확대

■ 음식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 * 개인음식점 사업자가 면세되는 농수산물 구매시 구매금액의 8/108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 연 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 사업자의 공제율을 9/109로 2년간 상향 조정

■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 * 중고차 매매업자가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9/109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적용기한 '18.12.31.)
-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110으로 상향 조정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 성실사업자의 범위 확대

- 의료비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해 세액공제 대상 성실사업자의 요건 완화*
 - * 장부기장 의무(복식부기→간편장부), 수입금액 요건(3년 평균액의 90% 초과→50% 초과) 등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시 세율 인하

- *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 불입시 소득공제→만기수령시 퇴직소득 저율과세·중도해지시 기타소득(20%)으로 과세
- 소기업·소상공인이 공제부금을 중도에 임의해지시 적용되는 기타소득세율 인하(20%→15%)

■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중소기업이 상생결제제도(대기업의 신용도를 이용하여 협력기업도 동일한 할인율 적용)를 통해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의 0.1%~0.2% 세액공제

- 2~3차 이하 협력기업의 결제지원을 위해 상생결제 금액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 일몰 3년 연장

■ 소규모주류제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소규모맥주의 소매점 유통*을 허용하고 세제지원 대상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시설기준 완화 및 주세 경감률 확대**

* 현재는 제조장, 영업장 등에서 최종소비자 등에 대한 판매만 가능

** 저장조의 시설기준

: (현행) 5kℓ~75kℓ → (개정) 5kℓ~120kℓ

출고량별 경감률

: (현행) 100kℓ 이하(60%), 100~300kℓ(40%), 300kℓ 초과(20%)

(개정) 200kℓ 이하(60%), 200~500kℓ(40%), 500kℓ 초과(20%)

- 소규모 탁·약·청주제조자의 주세 경감률 확대*

* 출고량별 경감률

: (현행) 20% → (개정) 출고량 5kℓ 이하 40%, 초과 20%

- 주류의 첨가재료 중 산분, 향료의 범위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모든 산분, 향료로 확대*하여 다양한 주류개발 지원

* 현재는 산분, 향료 중 젓산, 호박산, 식초산, 퓨젤유, 에스테르류 등만 가능

■ 농어촌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영어자녀가 증여받은 어선,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해 증여세 감면(5년간 1억원 한도), 8년간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 요건 중 면적 제한(1,650㎡) 폐지 ※ 일몰 3년 연장
- 농협, 수협 등의 조합원이 용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의 인지세 면제한도 상향(5천만원 → 1억원)

3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 '저성장 고착화, 분배-성장의 선순환 약화' 등 구조적·복합적 위기상황 속에서 사회안전망의 미비로 양극화도 심화

⇒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입기반 확충 지속 추진

☞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 중심으로 세부담 적정화

* 확보 재원으로 취약계층·영세기업 등 지원 → 사회통합·상생협력에도 기여

☞ 과세인프라 확충 등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고 조세제도 합리화

(1) 세입기반 확충

■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세율 환원)

- 법인세 과표 2천억원 초과 구간: 22% → 25%

* (대상기업 수) '16년 신고기준 129개

(단위: %)

과표구간	현행 세율	개정안
2억원 이하	10	(좌 동)
2억원~200억원	20	(좌 동)
200억원~2,000억원	22	(좌 동)
2,000억원 초과		25

* 법인세율 국제비교
 - OECD 국가 중 국민소득 2만불 · 인구 2천만명 이상 10개국: 24.6% (지방세 포함 29.1%)
 - OECD 국가 중 G20 국가 11개국: 24.7%(지방세 포함 28.7%)
 - G20 국가 20개국: 25.7%(지방세 포함 28.3%)

■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당기분) 축소

- 대기업의 일반R&D 증가분 세액공제(30%)는 현행을 유지하되, 당기분은 축소(R&D지출액의 1~3% → 0~2%)

(단위: %)

구분	현행		개정	
	당기분	증가분	당기분	증가분
중소기업	25	50	(현행과 동일)	
중견기업	8~15	40		
대기업	1~3 ¹⁾	30	0~2 ¹⁾	(현행과 동일)

주: 1) (현행) R&D지출액의 1%+최대2%(매출액 대비 R&D 지출액 비중 × 1/2)
 (개정) R&D지출액의 0%+최대2%(매출액 대비 R&D 지출액 비중 × 1/2)

■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

- 여타 투자세액 공제제도와외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축소 ※ 일몰 2년 연장
 * (생산성향상시설) 대 · 중견 · 중소 3 · 5 · 7% → 1 · 3 · 7%
 (안전설비) 대 · 중견 · 중소 3 · 5 · 7% → 1 · 3 · 7%
 (환경보전시설) 대 · 중견 · 중소 3 · 5 · 10% → 1 · 3 · 10%

■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

- 과세형평 제고, 국제추세 등을 감안하여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중소기업 제외)를 점진적으로 조정
 - 공제한도: 당해연도 소득의 80% → ('18년) 60% → ('19년) 50%

■ 개인사업자의 사업 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익 과세전환

- 복식부기 개인사업자의 사업 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익 과세대상을 업무용승용차에서 기계장치 등 모든 유형자산으로 확대

■ 금융소득 과세특례 정비

- 고배당기업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증대세제* 일몰종료
 * 고배당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세제지원(9% 원천징수, 종합과세자 5% 세액공제)
- 장기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폐지
 * 만기 10년 이상 채권을 3년 이상 보유시 이자소득에 대해 30% 분리과세
- 해외주식펀드 수익에 대한 비과세* 일몰종료
 * 해외주식펀드 투자(3천만원 한도)에 대한 주식 매매 · 평가이익 및 환차익 비과세

- 하이일드펀드 수익에 대한 분리과세* 일몰종료
* BBB+ 이하 비우량 채권 등을 편입한 펀드 투자(3천만원 한도)에 대해 14% 분리과세

■ 양도소득세 감면 합리화

- 양도소득세의 과도한 감면 방지, 감면제도 간 형평 등을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일원화
* (현행) 5년간 2억원: 공익사업용 토지 중 현금보상 등
5년간 3억원: 공익사업용 토지 중 장기채권보상, 8년 자경농지 등
(개정) 5년간 2억원
- 여타 감면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협의매수·수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하향조정*
※ 일몰 3년 연장
* (현행) 25%(지정일 이전 취득 토지는 40%) → (개정) 20% (30%)세

■ 정책목적 달성했거나 실효성 없는 제도의 축소

- 전자신고가 정착단계(신고율 90~99%)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축소**
* 전자신고시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건당 소득세·법인세 2만원, 부가가치세 1만원 세액공제
** (현행) 세무대리인 400만원(법인 1,000만원) → (개정) 200만원(500만원)
-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종료
* 토지·건물을 현물출자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이연

■ 부가가치세 비과세·면세 축소

-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중 공익성이 낮고 민간과의 경합성이 높은 사업을 과세 전환*
* 보관업, 보호예수, 설계·감리용역, 조경사업 등
- 군인 등의 군 골프장 및 숙박시설* 이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 국군복지단 등이 운영하는 호텔, 콘도 등

참고 '17년 일몰이 도래한 조세지출 정비·재설계·연장 현황

◇ 심층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재설계
* 일몰도래 50개 항목 중 일몰종료 5개, 재설계 19개(축소 6개, 조정 13개), 일몰연장 26개 [총 11개 정비 → 정비율 22%]

구분	제도 개요 및 재설계 내용	사유
일몰종료	•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과세형평 제고
	•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에 대한 과세특례	정책목적 달성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과세형평 제고
	•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실효성 미미
	•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 과세특례	실효성 미미

참고 '17년 일몰이 도래한 조세지출 정비·재설계·연장 현황 <계속>

구분	제도 개요 및 재설계 내용	사유
축소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한도 1억원 설정	중소기업 지원세제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율 축소(대 3, 중견 5% → 대 1, 중견 3%)	다른 제도와의 형평성 감안
	•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율 축소(대 3, 중견 5% → 대 1, 중견 3%)	다른 제도와의 형평성 감안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추가 특례 → 소규모법인 적용한도 축소	부동산입대업 등 특성 감안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 감면율 하향 조정(25%, 40% → 20%, 30%)	다른 제도와의 형평성 감안
	•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농어업용 일몰 연장, 발전·산업용 과세전환	과세형평 제고
재설계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 확대	창업·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청년고용증대세제와 통합·재설계	일자리 창출 지원
	• 청년고용증대세제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통합·재설계	일자리 창출 지원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 중견기업으로 확대, 공제율 인상	여성의 출산·육아 지원
	• 특성화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중견기업으로 확대, 공제율 인상	병역 이행 후 고용 안정 지원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 공제율 인상	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 중소기업 공제율 인상	정규직 전환 유도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중견기업으로 확대	협력기업의 결제 지원
	•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시 법인세 등 감면 → 이전인원이 많을수록 지원 확대	지방이전 지원 확대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면적제한 폐지	축산농가 지원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 어선·어업용토지 등도 감면대상 포함	농어민 지원
	•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에 대한 관세 경감 → 중견기업으로 확대	친환경 세제지원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대규모 조합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 추가	영세 중소기업 등과의 형평성 감안

참고 '17년 일몰이 도래한 조세지출 정비·재설계·연장 현황 <계속>

구분	제도 및 연장기간	연장 사유
일몰연장	• 창업투자회사 주식양도차익 비과세(3년)	창업·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 창업자 등에의 출자 과세특례(3년)	
	•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배제 특례(3년)	중소기업 지원
	• 창투자 등의 벤처기업 등 주식 거래시 증권거래세 면제(3년)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3년)	지방이전 지원
	• 법인 본사의 지방 이전시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이연(3년)	
	• 수도권과밀억제권 밖 이전 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3년)	
	•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3년)	
	•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3년)	농어민 지원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3년)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3년)	
	• 농·어민이 직수입하는 농·축산·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3년)	
	•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세액감면(3년)	민생 안정
	•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3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3년)	
	• 개인택시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3년)	
	•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3년)	
	•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2년)	
	• 환경오염방지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2년)	친환경 세제지원
	•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3년)	
	• 전기 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3년)	
	•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사후환급(2년)	관광·문화 지원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3년)	고유목적사업 지원
	• 농협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3년)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2년)	금거래 활성화
	•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손금산입(3년)	주거 정비사업 지원

(2) 세원투명성 강화

■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세율 환원)

*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위반시 가산세 5%)

- 가공경비 계상 등 불성실 신고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해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성실신고 확인대상 수입금액 기준 조정

구분	농업, 도소매업 등	제조업, 건설업 등	개인서비스업 등
현행	2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개정	'18~'19년	15억원 이상	7.5억원 이상
	'20년 이후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외감법인 제외)을 추가

*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인 법인, 부동산임대·이자·배당 소득이 주업인 법인(지배주주 지분 50% 초과)

- 성실신고 확인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60%) 한도를 상향 조정(100만원 → 120만원)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①무신고·②무기장 가산세 부과시에도 ③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5%) 적용*

* (현행) Max(①, ②, ③) → (개정) Max(①, ②)+③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

*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어도 의무발급(미발급시 50% 과태료)

- 사업자의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3개 업종* 추가(현행 58개 → 61개 업종)

* 약기 소매업, 자전거 소매업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추가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 의무임대기간(4년 이상, 준공공임대는 8년), 임대료 인상 제한(연 5%)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유도를 위해 소형 주택임대등록 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3호 이상 임대 → 1호 이상 임대)

* 국민주택규모,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3호 이상을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후 4년 이상 임대시 소득·법인세 30% 감면(준공공임대는 8년 이상 임대시 75%)

■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

-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

* (현행) 과세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정) 과세공급가액과 면세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 ('19년 시행)

■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인상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발급에 대한 가산세율 인상(2% → 3%)

- 공급가액을 부풀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공 금액에 대해 가산세율 인상(1% → 2%)

■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

- 체납이 많은 유흥주점업 등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19년 시행)
 - 신용카드사는 결제금액의 4/110*를 대리납부
 - * 유흥주점 등 업종의 부가가치율(매출액-매입액)÷매출액이 약 27~56%임을 감안하여, 사업자가 실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율 수준으로 원천징수
 -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리납부된 금액의 일정비율* 세액공제
 - * 시행령에서 규정(예: 1% 내외)

■ 역외세원 관리 강화

- 역외금융정보 수집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금액 인하(10억원 초과 → 5억원 초과)
- 펀드를 통해 해외투자하고 받은 이자·배당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환급한도 축소(14% → 10%)
 - *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를 10%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제출·거짓제출시 과태료 인상(보고서별 1천만원 → 3천만원)
 - * 개별기업 보고서, 통합기업 보고서, 국가별 보고서

■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지급이자 이를 지급받은 국외특수관계인 소재지국에서 1년 내에 과세되는 경우**에만 비용 인정
 - * 부채·자본 성격을 동시에 가진 금융상품(예: 이익참가부 사채)으로 이자 지급국에서는 부채(이자비용 공제)로 보나 상대국에서는 자본(배당 비과세)으로 취급 → 양국

가에서 이중 비과세

** 이자비용으로 공제받으려는 내국법인이 상대국에서 과세된 사실을 입증

- 다국적 기업의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과다차입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이자비용 공제제한 제도 도입(19년 시행)
 -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순이자비용이 조정 소득금액**의 30% 초과시 초과이자비용에 대해 비용 불인정
 - * 금융·보험업은 적용 제외
 - ** 순이자비용, 감가상각비 차감전 세무상 이익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거래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지분 25% 이상 → 5% 이상)
 - * 조세조약상 과세대상 제한이 없거나 과세대상 주식비율이 5% 이상인 경우(인도 등 10개국) 및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과세 가능
- 고소득 외국인 파견근로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용역대가 지급시 원천징수하는 대상 업종 확대* 및 원천징수 세율 인상(17% → 19%)
 - * (현행) 항공운송, 건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개정) 선박건조업, 금융업 추가

■ 관세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 신용카드를 이용한 해외물품 구매·현금 인출 내역 관세청 통보대상 확대(분기별 합계 5천불 이상 → 실시간 건당 600불 이상)
- 중고차 밀수출 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 * 개장검사가 어려운 컨테이너에 적재한 수출 중고차에 한

정하여 운영 중

- 체납 징수 제고를 위해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체납액 3억원 이상→2억원 이상)
- 관세체납 방지를 위해 납세의무자인 화주 이외 관세 포탈 등 범칙행위자*(수입명의인 등)에 대하여도 연대납세의무 부과

* 교사·방조범 등을 포함하며, 범칙행위를 통한 이익을 취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조세제도 합리화

■ 공익법인 및 기부금단체 제도 개선

- 상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정관에 규정)으로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주식보유 한도를 상향조정(10%→20%)
- 세제지원*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과 법인세법상 법정·지정기부금단체 범위 일치('19년 시행)

*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법인(순금산입), 기부받는 공익법인(증여세 비과세)

- 기부금단체 간 형평 및 사후관리의 실효성 제고
 - 공공기관 등은 법정기부금단체에서 지정기부금단체로 변경*

*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고 공익성이 현저히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감안

- 현재 별도 심사 없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학술·장학·문화예술·환경단체 등도 지정심사를 거쳐 지정 고시*하되, 기존 학술·장학·문화예술·환경단체 등은 3년간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

*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주무관청 추천을 받아 기재부장관이 지정고시(약 7천개)

■ 거주자 판정기준 합리화

-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국내투자 촉진, 국제추세 등을 감안하여 거주자 판정기준 합리화*

* (현행)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주 → (개정)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주

■ 파생상품 과세체계 개선

- 자본소득 과세 정상화를 위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인상(5%→10%)

- 국내·외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

* 국내·외 파생상품 손익을 구분하여 계산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되는 문제 해결

■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 소득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80%)을 유사한 사업소득의 단순경비율 수준(60%)으로 단계적 조정*

* 원고료, 강연료, 자문료, 특허권 양도 등: (현행) 80% → ('18년) 70% → ('19년부터) 60%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합리화

* 물가상승 등에 따른 세부담 증가(결집효과) 완화를 위해 3년 이상 보유시 적용

- 물가안정 추세 등을 감안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율·기간조정('19년 시행)

- 연 3%, 10년 보유시 30% 공제 → 연 2%, 15년 보유시 30% 공제

■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보완**

- * 농·수협 등 8개 조합법인에 대해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 기부금, 접대비 등 일부 세무조정 후 저세율로 법인세 과세
- 대규모 조합법인(매출액 100억원 초과)은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정

■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조정**

-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발전용 연료간 형평을 감안하여 발전용 유연탄과 LNG의 제세부담금*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별소비세율 조정
- * 발전용 유연탄: 30원/kg(개별소비세 30원)
발전용 LNG: 90.8원/kg(개별소비세 60원, 수입부과금 24.2원, 관세 6.6원)
- 발전용 유연탄과 LNG의 발열량 차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율을 kg당 6원 인상

구분	현행	개정
저열량탄(5,000kcal/kg 미만)	27원/kg(탄력)	33원/kg(탄력)
중열량탄(5,000kcal/kg 이상, 5,500kcal/kg 미만)	30원/kg(기본)	36원/kg(기본)
고열량탄(5,500kcal/kg 이상)	33원/kg(탄력)	39원/kg(탄력)

(4)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납세자의 세무조사 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한 연장 (10일 → 15일)
- * 조사범위,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통지
-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등*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세무조사 착수시점에 고지하도록 의무화
- *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의 시정, 조사기간 연장

- 과 조사범위 확대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일시중지 등
- 세무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제출 요구의 금지 명문화
- *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의 계산과 관련된 자료 외의 자료
- 납세자 동의를 전제로 한 장부·서류 등의 일시보관이 남용되지 않도록 일시보관 요건* 및 반환의무** 강화
- * 무신고, 무자료·위장·가공거래, 탈루혐의 등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 등에 한해 허용
- ** (현행) 납세자 요청시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 → (개정) 현행요건+반드시 14일 이내에 반환하되,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연장 가능
- 세무조사 종료시 조사내용, 과세이유, 과세표준·세액 및 산출근거 등 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통지하도록 의무화
- 관세조사시 납세자권리현장이 교부되고 변호사·관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범칙사건의 범위 확대*
- * (현행) 관세포탈, 부정감면, 부정환급 범칙사건 → (개정) 모든 범칙사건

■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 강화**

- * 납세자 권익보호 관련 사항(세무조사 기간연장, 세무조사 범위확대, 세무조사시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등) 심의를 위해 세무서·지방청에 설치·운영
- 국세청(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세무서·지방청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납세자의 재심 기회 부여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외 8인은 기재부장관 등이 추천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
- 세무서·지방청에 설치·운영중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민간위원 확대*

* (현행) 민간위원 1/2 이상 → (개정) 납세자보호담당관 외 전부 민간위원으로 구성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결과의 법적구속력 강화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심의결과 이행 의무화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의 의견진술권 부여

■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국세청 심사청구의 중립성 강화를 위해 심의기구인 국세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확대*

* (현행) 민간위원 1/2 이상 → (개정) 민간위원 2/3 이상

■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간의 사전조정 제도 개선

-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간의 사전조정 대상 확대*

* (현행)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산출방법이 유사한 경우로 한정

(개정) 산출방법이 유사하지 않은 거래도 추가

- 관세청과 국세청 간 실무조정위원회 설치·운영

■ 관세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입

- 수출업체가 관세를 과다환급받아 사후에 추징될 수 있는 위험을 사전방지하기 위하여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입

III.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1) 세수효과: 연간 +5.5조원

- 금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연간 +5.5조원
 - (증가 요인) 법인세율·소득세율 조정, 발전용 유연탄 세율 조정, 주식 양도소득세율 조정,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
 - (감소 요인) 고용증대세제 신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 등

연도별 세수효과(전년대비 기준)

(단위: 억원)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이후
계	54,651	9,223	51,662	△4,556	△2,892	1,214
소득세	21,938	6,133	14,508	714	△631	1,214
법인세	25,599	△341	33,773	△5,572	△2,261	-
부가가치세	△369	△493	72	52	-	-
기타	7,483	3,924	3,309	250	-	-

(2) 세부담 귀착

(단위: 억원)

서민·중산층 ¹⁾ / 중소기업	고소득자/대기업 ²⁾	기타 ³⁾	계
△8,167	62,683	135	54,651

주: 1) OECD의 서민·중산층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자: 총급여 6,300만원 이하)

2)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효과 포함

3) 외국인·비거주자·공익법인, 귀착분석이 곤란한 일부 항목

IV. 세법개정 추진일정

(1) 개정대상법률: 총 13개

- 내국세(10개)
 -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증권거래세법, 주세법
- 관세(3개)
 -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관세사법

(2) 추진일정

- 8.2(수), 세법개정안 발표
- 8.3(목)~8.22(화)(20일간), 입법예고
- 8월 말, 차관·국무회의 상정
- 9.1(금), 정기국회 제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

* 본 자료는 2017년 7월 25일 기획재정부 관계부처합동에서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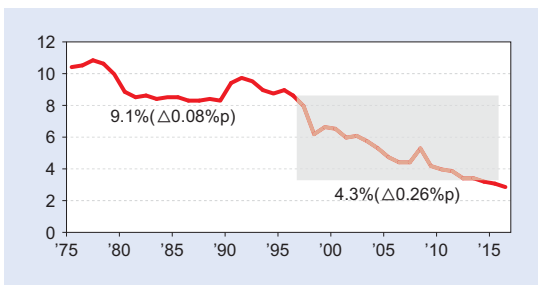
I.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1 우리 경제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 우리 경제는 '95년 이전에는 성장률이 완만히 둔화(연 0.08%p), '95년 이후 외환위기 등을 거치면서 급격히 하락(연 0.26%p)
 - 반면 선진국들은 경제가 성숙하면서 안정적 성장세 유지
- 성장이 빠르게 둔화되는 가운데 분배까지 악화되며 「저성장 고착화·양극화 심화」의 구조적·복합적 위기상황에 직면

한국 장기 경제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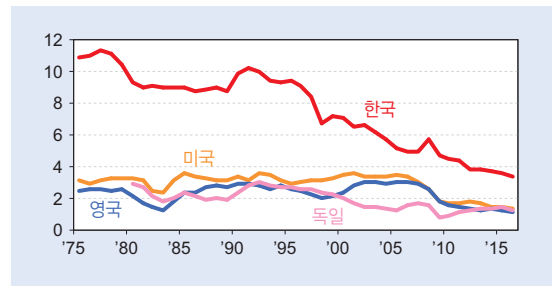
(단위: %)



출처: 한국은행

선진국 장기 경제 성장률 추이

(단위: %)



출처: 한국은행, OECD

2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과거 패러다임 지속에 기인

- 고도성장을 위해 물적자본 투자 중심으로 양적 성장 결과를 중시하며 모방·추격형 성장전략 추진
- 물적자본 투자 중심 성장과정에서 고용·교육·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 → 가계-기업 불균형 야기
- 양적 성장 중시로 대기업·제조업·수출에 지원 집중 → 대·중소기업 격차 확대, 내수·수출 불균형 야기
- 추격형 성장전략은 모방·추격 대상이 사라지면 서 유효성 상실

⇒ 과거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 없이 지속가능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나 주요국과 달리 정책기조 전환이 지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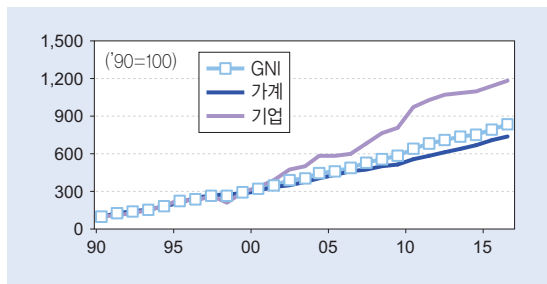
* Inequality & Unsustainable Growth are two sides of the same coin(IMF, '11)

3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사람 중심 경제」

1 소득 주도 성장: 가계소득을 새로운 성장 원천으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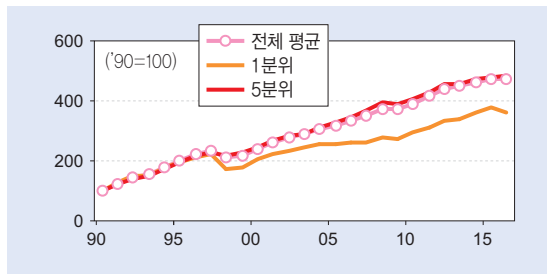
- 가계-기업, 가계 간 소득 격차가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 사회 안전망 미비로 사후적 격차 축소 가능성도 미흡
 - * '00~'16년간 기업소득은 255% 증가한 반면, 가계소득은 138% 증가
 - **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GDP 대비, %, '16년): (한국) 10.4 (OECD 평균) 21.0
- 그 결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소비위축으로 성장에도 부담
 - ⇒ 가계를 분배 객체 → 성장 주체로 인식 전환, 소득증대 노력 강화

가계-기업소득 추이



출처: 한국은행

분위별 가계소득 추이



출처: 통계청

② 일자리 중심 경제: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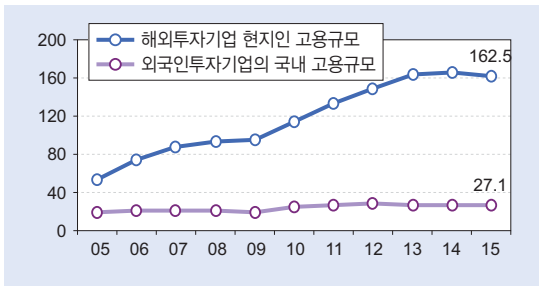
- 제조업 해외이전 가속화 등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사용자 중심 노동시장 관행·제도로 인해 일자리 질 악화

* 취업유발계수(명/십억원, 1차산업): ('90) 65 → ('95) 40 → ('03) 18 → ('14) 13

⇒ 성장 과실이 가계로 전달되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해외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고용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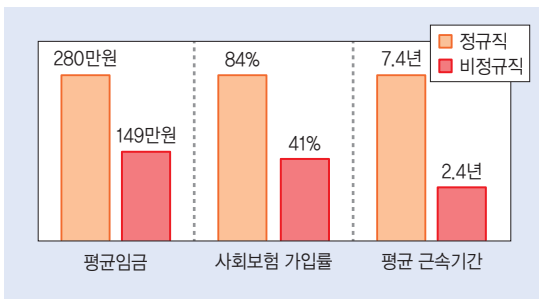
(단위: 누적, 만명)



출처: 대한상의, 수출입은행, 코트라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단위: 만원, %, 년)



출처: 고용부

③ 공정 경제: 경제주체 간 합리적 보상체계 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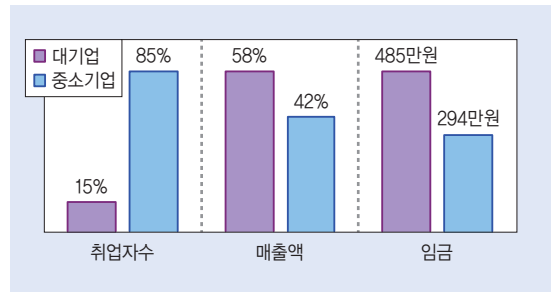
- 공정경제 정착이 더딘 것은 폐쇄적인 거버넌스 구조, 이권 추구(rent-seeking) 행태*, 사회적 자본 부족 등이 원인

* 이익집단 등의 경쟁을 가로막는 이권추구 행태가 정부규제 등에 의해 보호

- 성과에 기여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도록 사회보상체계 혁신

대·중소기업 간 격차

(단위: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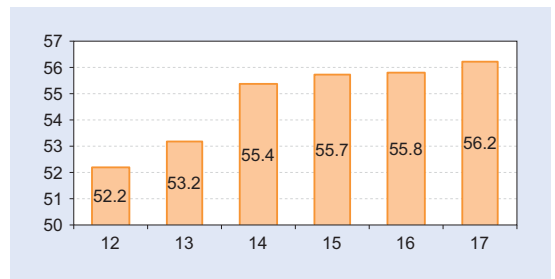


주: 취업자수, 매출액은 전체 대비 비중

출처: 통계청, 한은

4대 그룹 매출액 비중(30대 그룹 대비)

(단위: %)



출처: 공정위

4 혁신 성장: 3% 성장능력 갖춘 경제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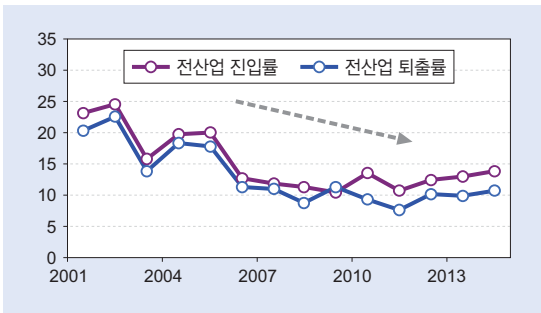
- 과도한 규제나 관행 등이 융·복합 등 창조적 파괴를 제약, 고용의 80% 이상 차지하는 중소기업도 혁신역량 약화

* 상품시장 규제는 OECD 4위, 무역규제는 OECD 1위

⇒ 경쟁제한적 제도혁신, 혁신 中소육성 등으로 생산성 중심 경제 전환

진입률과 퇴출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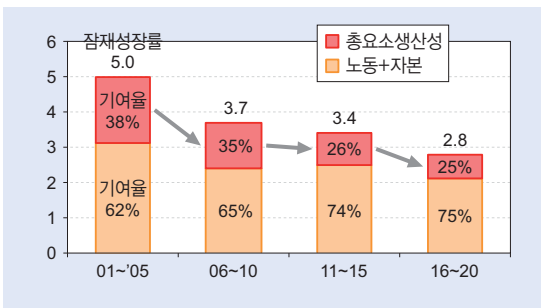
(단위: %)



출처: KDI

잠재성장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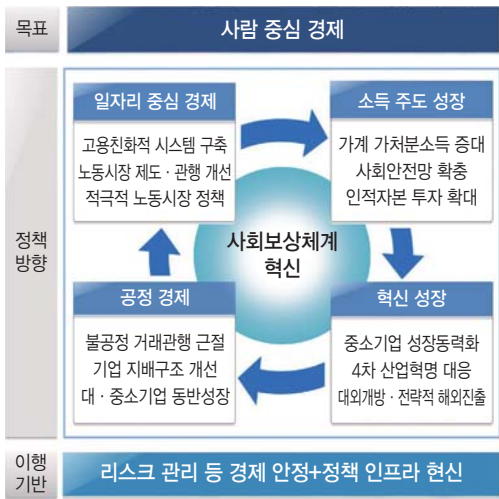
출처: 한국은행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 저성장·양극화 동시 극복을 위해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

- 경제성장을 수요 측면에서는 일자리중심·소득주도 성장,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 성장의 쌍끌이 방식으로 전환
- 경제체질을 사회보상체계 혁신을 통해 공정경제로 전환하여 성장의 과실이 경제전반으로 골고루 확산 유도

⇒ 분배·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



II.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1 소득 주도 성장

◇ 경제정책 중점을 국민의 인간다운 삶, 기본생활 보장에 두고 가계소득 증대를 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활용

1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 증대를 적극 유도

•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통한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 지원

- 영세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카드수수료 인하, 공정질서 확립 등 경쟁력 제고 추진

* 과거 추세 상회 최저임금 인상분을 재정을 통해 직접 지원('18년 3조원 내외)-관계부처 TF 통해 지원대상·지원금액·전달체계 구체화 '18년 예산안 등 반영

• 주거비·의료비·교통비·통신비·교육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

① (주거) 연 17만호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OECD 평균 이상 공공임대주택비율 달성(6.3→9%) 및 운영관리체계 개선*

* 입주시기 예측 위한 대기자명부제도 도입,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 통합 등

- 신혼부부 특화주택 건설, 특별공급 비율 상향 등 공공임대 공급물량의 30%인 20만호 공급, 전용 주택금융상품 출시

-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거급여 대상확대·지원금액 단계적 현실화, 중증 장애인에 주거약자용 주택 우선 공급

-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세어형 임대주택(5만실), 역세권주변 청년주택(20만실), 기숙사(5만명) 등 총 30만실 공급

▣ 특히, 청년층 수요 높은 도심내 공적임대주택 5만호 확충

※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2만호(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병행), 매입임대리츠 2만호, 노후주택 리모델링 1만호 공급

- 생계비 획기적 절감, 한계주담대 차주 지원을 위해 주택 주택파이낸싱 개편(Sale & Leaseback) 확대

※ 주택기금, LH, 주담대 취급은행 등이 출자하여 리츠 설립, 한계차주가 주택을 리츠에 매각 후 임차 거주(재매입 가능)* 주택시장 상황 연계 시행

② (의료)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 추진('15년 63.4%)

-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확대 등 3대 비급여 부담 지속 경감

-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고,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본인부담상한 설정

- 40대 이상 진단바우처 도입, 초·중·고 독감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등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두루누리 사업 건강보험 지원 확대, 건강보험 임의 계속가입 기간·대상 확대

- ③ (교통) 수도권 출퇴근시간 30분 단축, 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광역버스 노선 추가 확대, 광역급행철도 단계적 착공 등 편안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
 - 도로통행료 인하, 벽지노선 운영 등 도로·철도 공공성 강화, 공공형 택시 시·군 보급 등 대중교통 낙후지역 해소
- ④ (통신) 요금감면제도 확대, 경쟁활성화로 통신비 인하 유도
 - 기초연금수급자 월 1.1만원 신규감면, 저소득층 월 1.1만원 추가감면, 요금할인을 20→25%로 상향, 공공와이파이 확대
 -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조기 폐지, 분리공시제도 도입, 위법 행위 조사·시정 등 통신시장 투명화
- ⑤ (교육)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40% 달성,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전학년 확대
 -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대학생 등록금 및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입학금 단계적 폐지 추진

②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취약가구의 적정소득 보장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EITC 지속 확대 등을 통해 소득분배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의료급여는 7분위 이하 중증장애인·노인 포함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적용 제외
 - 자활대상자 확대, 자활급여 단계적 인상 등 자

립 지원

- ‘한국형 고용안정·유연 모델’을 구축하여 실업안전망 대폭 확충, 노동시장 역동성 회복으로 양질의 일자리창출 기반 강화
 - ☞ 고용보험 의무가입자 100% 가입, 실업급여 보장성을 '22년까지 OECD 평균수준 개선 추진

- ▶ (1단계) 실업급여 지급액 상향(50→60%) 및 지급기간 연장(8→9개월), 65세 이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단계적 가입 허용(18년)
- ▶ (2단계) 노사상생, 포용적 일터혁신 등 생산성 향상과 연계하여 지급수준·기간 등의 대폭 확대 논의 본격화

- 저출산·고령화 극복기반 강화 및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득지원제도 운영
 - (유년) 0~5세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 (청년) 구직촉진수당 지급('18:30만원, 3개월→'19:50만원, 6개월), 향후 저소득 근로빈곤층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
 -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18:25만원→'21:30만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검토,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및 단가인상
 - ☞ 치매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여 전국 25개 치매안심센터 확충, 중증치매환자 본인부담 경감, 고비용 진단검사 급여화 추진
 - (장애인) 장애인연금 인상,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등 비장애인과 격차 축소
 -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보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등

- ※ (농어업인) 선제적 수확기 쌀 수급안정, 생산조절제 한시 도입, 공익형 직불제 확대·개편, 농어업인안전보험 국고지원 확대

③ 인적자본 투자 확대로 가계소득의 근원적 기반 강화

- 경쟁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맞춤형 교육으로 창의인재 육성
 - 유아·초등학생 적정 학습시간 및 휴식시간 보장 법제화, 필수교과 축소·선택과목 확대 등 학생중심 교과과정 개편
 - 한 아이도 뒤처지지 않도록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 1수업 2교사제 도입 등 단위학교 지원 확대
 - 초·중학교 학생 평가제도 개선, 혁신학교의 성과를 일반학교로 확산, 자유학기제 내실화 및 자유학년제 확산 등 추진
 - 고교학점제 도입, 복잡한 대입전형 단순화 및 학생부 위주 전형 개선방안 마련 등 중장기 대입제도 개선 추진
-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회균형 선발 의무화,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 강화* 등 교육의 희망 사다리 복원
 - * 교육급여 지원단가 인상 및 교복비·수학여행비 등 지원 지자체 전국 확산, 취약계층 영재교육 프로그램 신설, 국비 유학프로그램 확대 등
- 4차 산업혁명 대비 평생교육 예산을 지속 확대하여 저소득층 평생학습 바우처 신설, 중소기업 계약학과 지원 확대
 - 직업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직업계고교 재정지원 확대, 직업계고 학점제 단계적 운영
 - 4차 산업분야를 우선으로 '한국형 나노디그리'모델 개발, 성인 비문해자 교육기회 확대, K-Mooc 강좌 확대 추진

- 대학-공공기관-지자체가 연계된 산학협력 클러스터 조성, 대학내 기업·연구소 등 입주로 상시적 산학협력 촉진

2 일자리 중심 경제

- ◇ 가계소득의 핵심인 일자리의 양적 확충·질적 제고를 통해 “일자리-분배-성장”의 국민경제 선순환 구조 복원

① 고용 친화적 경제·사회 시스템 구축으로 고용없는 성장 극복

-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 설치, 일자리상황판 운영 등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인프라 구축
- 예산 세제 등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
 - (예산) 고용영향평가 강화 및 결과에 따라 예산 차등배분
 - ☞ 지자체 예산편성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 지자체 합동 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강화
 - (세제)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등 고용중심 세제개편
 - * (고용중대) 고용증가에 비례한 기업 세액공제(최대 2년간) 신설 (비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정규직 전환시 법인세 세액공제 대폭 확대 (임금인상) 근로소득증대세제 공제율 상향 조정 등
 - (정책금융) 고용실적에 따른 금리우대·이자환급 강화
 - * 현재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금리우대(산은, 수은) 및 보증료 할인(신·기보), 고용실적에 따른 대출이자 환급 프로그램(중진공) 등 운영 중

- (투자유치제도) 제조업 해외이전 축소와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개편(양질의 일자리 지키고 만들기)
- ☞ 지역에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은 국적 무관 최우선 지원

※ 외투기업, 유턴기업, 지방이전기업 등 각종 투자유치 제도 통합

- ① 고용효과에 따라 세제·입지·현금지원을 외투자유치 수준으로 강화
- ②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업종으로 지원대상 확대
- ③ 경제특구에 입주한 국내기업에 외투기업 수준으로 지원
- ④ 외국인 투자 금지·제한 업종 전면 재점검, 원칙적 개방

- 공공부문이 모범고용주로서 선도적 역할 강화
 - 국민안전·치안·복지·교육 분야 공무원 일자리 대폭 확충
 -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을 통해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 처우 개선
 - * 국공립 어린이집, 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보건복지 인프라 확충, 사회서비스 인력 처우 개선,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
 - 지자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을 대폭 확충하여 보편적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0세아, 노인) 등 보건복지전달체계 혁신
 - 상시·지속, 생명·안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 임금수준 공시 등 단계적 처우개선 추진

2 사용자 중심 노동시장 제도·관행 개선으로 일자리 질 제고

- 비정규직 감축을 위해 상시·지속업무 등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 추진, 비정규직 사용부담 강화방안 마련
 - * 상시·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사유제한의 범위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규정
 -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및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 비정규직을 포함한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 하청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도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안전보건조치 의무 강화, 파견·도급 구별기준 재정립
 - 건설임금지급 보증제도 도입,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등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기반 강화
- 법정 근로시간 단축(주당 68 → 52시간), 포괄임금제 규제, 장시간 근로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로 1,800시간대 근로시간 실현
 - * 근로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 운영, 근로시간 특례 제외 업종 및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병행
-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중대 재해 발생시 처벌강화 등 산업안전보건체계 혁신
 - * 물질안전보건자료 영업비밀 심사제도 도입,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업무 위탁 금지 등 제도개선

③ 사회가 함께 만드는 일자리를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 적극적 노동시장에 대한 재정투자를 총 재정지출 증가율 이상 지속 확대
-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 유망분야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재직자 직업능력개발 혁신
 - 영세자영업자·신중년 등에 대한 특화훈련 실시, 산업별로 자격·교육, 훈련-경력이 연계되는 역량체계(SQF) 설계
 - 폴리텍 훈련과정을 혁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하여 지역별 신기술 교육·훈련 거점으로 조성
 - 맞춤형 경력설계 지원 등 평생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
 - * 고용서비스 정보망 연계·통합하여 개인별 이력관리, 내일배움카드 활용 생애전환기별 직업능력개발 컨설팅 지원 등
- 공공취업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고용복지+센터 확충, 취업 상담인력 충원,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 노력 확대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정책 관련 핵심 정보 생산을 위한 국가일자리정보 플랫폼 구축
- 청년·여성·신중년 등 성별·연령별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 (청년) 공공기관 의무고용비율 상향(3→5%),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도입 및 청년 내일채움공제 확대 등 추진
 - * (의무고용제) 민간부문도 청년 신규채용 권고, 인센티브 도입 방안 검토
(추가고용장려금) 청년 3명 정규직 채용시 1명분 임금 지원('17:3천명 → '18:2만명)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확대,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 신설
 - (여성) 새일센터 확충(150→175개소), 육아

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등 경력단절 극복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확대, 직장내 성차별 완화 등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 노력 병행

- (신중년) 희망퇴직 남용방지, 일자리매칭시스템 구축 등 전직·재취업(인생3모작) 지원 강화, 사회공헌일자리 확대*

* 퇴직전문인력-NGO-사회적 기업 연계

④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협 추진

- 상생·협력의 노사관계 구축과 함께 중앙-지방, 다양한 이해 관계자 참여 등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정비
- 취약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고용형태 다양화 등 새로운 노동시장 수요 반영을 위해 노사관계 법·제도개선 추진
 - * 강제노동, 결사의 자유·단결권·단체교섭권 보호 관련 ILO핵심협약 비준 추진
 - 근로자 대표제도 기능 강화, 중소·영세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 등 근로자 이해대변제도 확충
 -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 생계·인격침해 보호 등 권리구제 강화*
 - * 부당해고 구제절차 개선, 직장내 괴롭힘 관련 종합 대책 마련 등
-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예: 광주) 확산 등 사회적 대화를 통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3 공정 경제

◇ 공정경쟁 촉진, 합리적 보상체계 정립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경제하려는 의욕 제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강화

1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로 공정한 성장기반 강화

- 국가적 차원에서 갑을문제 해소 위한 ‘을지로위원회’ 설치 추진
 - * 중소기업단체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병행
-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및 법집행 강화 (17년~)
 - 대·중소기업간 동등 교섭을 위해 단체구성권 확산(가맹점법→대리점법), 노무비 변동시 납품단가 조정신청·협인권 인정
 - 보복조치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 기술유용, 부당단가 인하, 전속거래 구속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 근절방안 마련
-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로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 강화
 - 주가조작 범죄 엄중 처벌 및 회계법인의 독립성·객관성 보장을 위한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
 - 금감원 감리주기 단축 및 분식회계·부실감사 제재 강화
- 공정위 전속고발권 개선*, 조사권 일부를 지자체와 분담 등 불공정거래 감시역량 강화
 - *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운영→의무고발요청기관 확대,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 전속고발권 폐지 등 종합적 제도 개선방안 마련

2 담합 행위 근절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 독과점을 야기하는 각종 진입규제 전면 재점검
 - * 국민경제 관점에서 규제의 비용·편익을 점검·공론화하기 위한 ‘국민참여형 규제개선(예: 규제청문회, 국민참여 쌍방향 규제신문고 등)’ 추진
 - ** 단속→사전예방 중심으로 규제행정 전환, 소상공인 부담경감 위해 규제차등화 추진
- 담합 근절을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 과징금 상향, 공익 신고자 보상금 한도 확대(20→30억원) 등 선진국 수준으로 제재 강화
 - * 담합 과징금 부과율 상한: (한국) 10% (미국) 20% (영국) 30% (EU) 30%
-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 등 소비자 권익증진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자원 조성방안 마련
 - * 취약·소외계층의 합리적 경제활동 유도를 위해 경제교육 강화

3 기업 지배구조 개선으로 과도한 경제력집중 완화

- 일감 몰아주기 규제·과세 강화 등 총수일가 편법적 지배력 차단
 -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 인적분할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방지,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추진
 - 총수일가 등의 실질지배 해외법인을 통한 국내 계열사 출자현황 공시 추진
- 금융계열사를 통한 지배력 강화 방지를 위해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
- 소액주주의 경영권 견제를 위해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추진
- 연기금 스투어십십 코드 참여 확산으로 기관투자자 역할 제고

* 자산운용지침 가이드라인 반영('17.下), 추후 자금운용평가 반영 검토

④ 동반성장 촉진 및 골목상권 보호 강화

- 협력이익배분제, 대기업 유통망 공유 등 다양한 동반성장 모델 발굴·확산, 상생협력 지원세계 4대 패키지*를 통해 지원

* (협력이익배분) 대기업 이익 → 중소기업사 공유·출연시 세액공제
(상생협력기금)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차감 확대
(성과공유) 기업이익을 근로자와 공유시 세제지원 방안 강구
(상생결제) 상생결제 세액공제 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

- 임차인 지위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및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지역상권 내 몰림 방지

* 적합업종 사업조정의 권고기간 연장, 전용 지원사업 등을 통해 실효성 제고

-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에 대형마트 수준 영업제한,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의 30%를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
-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화·협업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 지원, 과밀업종 종사자 재취업·재창업 지원

⑤ 협력성장, 포용성장의 새로운 주역인 사회적경제 활성화

-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정부대안 마련, 사회적경제 정책조정·시행을 위한 추진체계 및 전담조직 구축 추진
- 사회적경제가 시민경제 및 농어촌 등 지역경제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

지원

- 사회혁신기금, 사회투자펀드 조성, 신용보증심사기준 및 한도 완화 등 사회적경제 특성이 반영된 금융시스템 구축
- 사회적경제 학습체계 구축 등 인력양성 로드맵 수립
- 공공조달 가점제도·대기업 연계 유통 등 판로확대 지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규모화 촉진
- 사회적경제기업의 유휴 국공유 시설 활용 위한 제도 개선
- 도시재생분야 진출 지원('17년), 지역 일자리 사업과 연계를 강화('18년)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유도

4 혁신 성장

◇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개방 확대를 생산성 중심 경제로 전환

① 협력·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동력화 촉진

-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로 중소기업 정책 일원화 및 지원사업 유사중복 등 조정기능 강화
 - 중소기업 전용 R&D 2배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집중 육성, '22년까지 6.5만개 일자리 창출 추진
- 수요자·공급자가 어우러져 기존산업 경계를 뛰어넘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참여형 혁신·융합공간(Creative-lab) 구축

* 예) 누구나 원하는 제품을 즉석에서 만들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등

- Rent 배분체계를 ‘직접지원 → 인프라 · 협력생태계 조성’ 전환

- ① **(수평적 네트워크)**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 구현
→ 협업기업 중심 연구개발 · 금융 · 판로 등 지원체계 구축
- ② **(상생형 네트워크)** 밸류체인에 기여한 만큼의 성과보상, 동반성장
→ 상생협력 지원세제 4대 패키지를 통해 뒷받침
- ③ **(개방형 네트워크)** 글로벌 시장진출, 국내 대기업과의 교섭력 제고
→ 중소기업 수출역량 지원 강화, 전속거래구조 개선

-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네트워크화 지원 강화
– 협업전문회사제도를 도입하고 창업 수준으로 정부정책 우대
* 협업사업을 위해 중소기업 공동출자로 설립 → 정부가 성장 가능성 높은 회사 선정 · 지원
- 네트워크형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 도입 등 중소기업 · 중견 기업 협업화 촉진
* 컨소시엄, 공급체인 등 기업 네트워크에 대출, 투자, 경영 컨설팅 종합 지원
- 중소기업 간 협업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 발굴 · 개선
* 예)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 금지 규정 적용 배제 등
- 중소기업 성장사다리를 복원하여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 고용창출 우수기업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3년)

연장 및 정부 법령 · 지원제도 조사 후 중소기업 성장걸림돌 발굴 · 개선

- 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 등 자금조달 여건 개선
- 중소기업 · 벤처기업 해외직접판매 촉진, 온라인 수출 통합플랫폼 구축 등 글로벌 진출 지원체계 강화
-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축소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 ICT 융합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계약학과를 대폭 확충하여 중소기업 인재유입 촉진, 재교육 확산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우수 학생을 기초 R&D 전문인력 등으로 양성하는 ‘영마이스터 육성 과정’ 신설 · 운영
- 기업성장 후 주식 · 이익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하도록 사전 약정하는 미래성과공유제 도입(22년까지 선도기업 10만개 달성)
- 성장 단계별(창업-성장-회수-재도전) 지원으로 혁신창업 활성화, 기술창업자 5.6만명, 재창업자 5.5천명 육성
– 투자 중심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투자 촉진법(가칭) 제정, 엔젤투자 활성화 · 펀드 조성 확대 등 추진
- 창업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범위 확대, 공공조달 의무구매제 도입,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
- M&A 규제 완화 · 세제특례 등으로 원활한 회수환경 조성
-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대상 확대(창업 7년 이내), 사업 실패자 소액채납세금 한시 면제 등 재도전 인프라 확충
* 정책금융 부실채권 채무조정 범위 확대, 성실실패자 맞춤형 패키지 지원 병행

② 경제·산업 등 전 영역에 걸쳐 4차산업혁명 대응태세 강화

-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8월) 하고 범부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 수립 (3/4 분기)
- 혁신적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을 통해 4차 산업 혁명 핵심 인프라인 초지능·초연결 기반 구축
 - 국가과학기술정책 자문·조정기구 통합 등 컨트롤타워 강화
 - * ① 과학기술총괄부처의 연구개발 관련 예산권한 및 정책-예산-평가 간 연계 강화, 기초원천분야 R&D 는 총괄부처, 타부처는 특정산업 기반 R&D로 역할 분담
 - ② R&D관련 규정·시스템·서식 일원화·간소화,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 ③ 정부R&D 정보개방 확대, 해외 과학기술인 등과의 교류 확대
- 핵심기술 R&D·인재양성 집중 투자, 청년과 학자 기초연구 지원 등으로 지능정보기술 선진국 대비 75→90% 수준 제고
 - * (R&D혁신) 중소기업 R&D사업 상시모집체계 전환, 지원규모·기간 확대 등 (청년과학자) 근로계약 체결, 적정임금·연구성과 보상기준 마련 등 (기초연구)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 2배 확대, 최초 혁신 실험실 연구비 지원
- 5G·IoT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데이터 개방·유통 활성화, 소프트웨어 공공시장 혁신 등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 마련
 - * '17년 IoT 전용망 구축, '18년 10기가 인터넷서비스 상용화, '19년 5G 조기상용화
- AI기반 사이버 보안위협 대응체계 구축, 신정보격차 해소 계획 수립·시행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역기능 대응
-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제조-ICT-서비스 융합, 리쇼어링 등을 통해 미래형 신산업 육성

- '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 보급·확산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제조업 부흥 전략 수립('17년)
- 서비스산업 혁신 로드맵 수립('17년), 핀테크·공유경제 등 고부가·융복합 新서비스 집중 육성('18년 공유경제 종합계획 마련)
 - * ICT·SW 활용을 통한 영세서비스업 생산성 제고, 근로자 처우개선 노력 병행
- 신산업 창출 촉진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도입 (규제없이 신기술 테스트 허용), 네거티브 규제 원칙 마련 등 규제 전면 혁신
- 자율주행차·정밀의료·드론 등을 4차 산업혁명 선도분야 선정, R&D 예산·세제·데이터·인력 등 집중지원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스마트그리드 확산 등 미래에너지 발굴·육성을 통해 '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
 - * 주요 산업기기 에너지 최최효율제 추가도입, 에너지 바우처 증중회귀질환자 가구 추가
 - **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탈원전 로드맵 수립, 원자력 안전규제 강화,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등 병행 추진

분야별 미래산업 육성 계획

구분	추진계획
친환경·스마트카	충전인프라 확충 등 전기차·수소차 획기적 보급 확대, 자동차-ICT융합 플랫폼 구축, 전기차·수소차 안전기준 마련
첨단기술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탄소산업 등 첨단 신소재·부품 개발, 지능형 로봇, 3D프린팅, AR·VR·IoT가전, 스마트선박, 나노·바이오·항공·우주 등 첨단기술 육성을 위한 R&D 및 실증 인프라 구축
제약·바이오	핵심기술 개발, 인력양성, 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제약·바이오·마이크로의료로봇 등 의료기기 산업성장 생태계 구축
자율협력주행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인프라, 자율협력주행 커넥티드 서비스, 스마트도로 등 구축, '20년 준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
드론산업	드론산업 활성화 지원 로드맵 마련 및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 기술개발, 융합생태계 조성 등 추진
표준·인증	신속인증제 운영 활성화, 범부처 TBT대응지원 센터 운영, 신속표준제도 도입 등 신산업 표준·인증제도 혁신
스마트농업	'22년까지 스마트팜 시설원에 7천ha, 축산 5천호 보급, 6차산업형 친환경농업지구 100개소 조성,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 도입 등 영농창업 활성화
에너지신산업	IoE(Internet of Energy) 인프라 구축 및 新비즈니스 창출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미터(AMI),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등 육성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 조성, 서비스 인증제 시행, 스타트업 인큐베이팅존 확산, 체감형 선도 서비스 보급 등 국내외 확산사업 추진

- 혁신도시 중심으로 신지역성장 거점 구축, 균형 발전 촉진
 - 혁신도시별 특성을 고려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도입,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등 지원
 - 14개 시도별 국가혁신클러스터 선정 및 신산업 테스트베드 조성,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 강화
 - 도시재생과 연계, 창업·혁신공간, 문화·복지공간이 어우러진 산업단지 혁신 2.0 추진

③ 포용적 대외개방 확대, 전략적 해외진출 추진

- 보호무역주의, NEXT CHINA 대비 새정부 통상 전략 수립
 - 아세안·인도와와의 기존 FTA 고도화 등 거대 신흥시장과 맞춤형 경제협력 강화, 신규 FTA 협상 적극 추진*
- * 남미공동시장(브라질 등 5개국), 유라시아경제연합(러시아 등 5개국) 등

- 통상 선진국가간 공조, G20·ASEM·APEC·WTO 등을 활용하여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
- 인도·아세안·일본·러시아 등을 동북아플러스 중점 경제협력국으로 선정하여 대외경제협력 역량 집중
- 중소기업 수출비중 40% 이상 확대, 청년 해외진출 촉진
 - 국가브랜드 전략과 산업·무역정책을 연계한 'Korean-Made 전략' 수립 및 맞춤형 지원 강화로 수출 기업화 촉진
 - 우리 중소기업 제품을 수입하는 해외기업에 용자지원하는 전인금융 출시('18년까지 1조 원)
 - K-Move센터 재정비, 국제금융기구 초급전문가 파견 확대 등 해외일자리 지원 강화

III. 경제정책 기반 강화

1 리스크 관리

◇ 미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가계부채·부동산 시장·한계기업 위험요인 관리, 생활물가 안정 등 거시경제 안정화

①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및 취약차주 지원 강화

- '17년중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릿 수로 연착륙
 - DTI 부채·소득 산정방식 개선(新DTI), DSR을 소금융권에 단계적 도입 등 여신심사 체계 합리적 개편
 - 제2금융권 주담대 → 장기·고정분할상환대출 전환 유도
 -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 관리 정교화* 및 맞춤형 지원 강화
 - * 부동산임대업 대출 관리 강화, 업황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여신심사 합리화
 - 취약차주 부담 완화 및 연체 채무자 재기 지원
 - 대부업법(27.9%)·이자제한법(25%) 최고금리 일원화 및 20%로 단계적 인하, 비소구 주담대 민간으로 단계적 확대
 - 국민행복기금 등이 보유한 소액·장기연체 채권 상환 능력 심사 후 적극 정리,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매각 금지
 -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및 부분인출·중도해지 허용범위* 확대, 사잇돌 중금리 대출 공급규모·기관 확대
- * 현재 의무가입기간내(3~5년) 인출 또는 해지시 과세(퇴직·폐업 등 사유 제외)

- 원스톱 서민금융체계 구축, 민영 장발장은행 운영비용 및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소요비용 지원 검토
- 지역에서 예금수취 금융기관에 영업구역내 개인·중소기업 대출 의무 등을 부여하는 지역재투자제도 추진

②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대응 강화

- 부동산시장 급등락을 사전에 방지하여 가계 및 경제전반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
 - 시장상황 변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별 탄력적·맞춤형 대응체계* 구축 완료(주택법 개정 → 과열·위축지역 지정)
 - * 지역별 시장상황(과열·위축)에 따라 규제 및 지원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
 - 국지적 과열발생시 즉각적인 안정화방안 추진, 수급안정을 위해 적정수준의 주택공급 유도
- 과도한 투자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자 중심 시장 형성을 위해 청약제도 등 개선

③ 선제적이고 강도 높은 산업·기업구조조정 추진

- 숲산업에 대한 리스크를 전면 점검하여 부실징후기업 신속정리 및 산업 차원의 경쟁력 제고 병행(건설업, 12월)
 -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조선 밀집지역의 지역경제 위축 방지를 위한 지원 확대**
 -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17년), 한국해운연합(KSP) 결성, 외항선박에 친환경 선박 폐선보조금 지급, 국가 필수해운제도 도입, 해양산업클러스터 2개 지정 등
 - ** 소상공인 정책자금(4 → 6천억원), 조선업 특례보증

(1→2천억원) 확대

- 효과적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P-Plan 등 새로운 구조조정 시스템 정착, 도산기업 관리 담당 독립행정기구 도입 검토
- 선제적 구조조정 확산을 위해 사업재편 기업 인센티브 강화, 매년 50개 기업에 대해 사업재편 지원 추진
 - * 기업활력법 성과를 점검하여 자금지원 프로그램 확충, R&D 지원의 실효성 제고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방안 마련 (11월)

4 현장중심 생활물가 관리 강화 및 인플레이션리 확산 방지

- 기상재해 등에 따른 농축수산물 등 가격불안 품목 수급안정
 - * 계란 할당관세 연장(~12월), 수산물 할인대축제(8월, 배추(5천톤)·양파(2천톤) 비축물량 탄력방출, 고령지배추 예비모 150만주 공급체계 구축 등
- 주요 프랜차이즈 심층 원가분석 등 소비자단체 연계 가격감시 강화, 사재기·편승인상 등 시장 질서 교란행위에 엄정 대응
-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전기요금 인상 요인 발생시 경영효율화 등 자구노력을 통해 최대한 흡수

5 통상현안 및 美 금리인상 등 대외불안요인 관리 강화

-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토대로 무역·투자, 과학·기술, 에너지 등 분야에 걸쳐 상호호혜적 협력 촉진
 - FTA 개정협상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 대비
- 한-중 FTA 서비스·투자분야 후속협상 추진, 제3국 공동진출·일대일로 연계 등 공동 관심분

야 협력 강화

- 사드 관련 우리 국민·기업의 피해 상황을 지속 점검 및 지원, 對中 수출품목 경쟁력 향상 병행
- 자금유출입 변동성 확대시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 운영, 미국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 지정 방지 노력 경주
 - 18년 ASEAN+3(한중일) 공동의장국 수입을 계기로 다자간 통화스왑(CMIM) 협정문 개정 등 역내 금융안전망 정비

2 정책 인프라 혁신

◇ 재정·공공·정책금융 등 정책 지원체계를 원점 재검토하여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 뒷받침

1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재정의 선도적 투자 확대

- 향후 5년간 지출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관리
 - OECD 최저인 재정의 분배개선율(15년 13.5%)을 10%대 → 20%대로 제고하고, 재정의 분배개선 효과 분석 추진
 - * 지니계수 개선율(% '14): (獨)42.2 (佛)42.0 (英)31.3 (美)22.4 (韓)13.5('15)
 -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16년 10.4%)을 고령화율 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확대
- 조세정책은 일자리 창출·소득분배에 역점을 두고 재설계
 -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 지원, 고소득·고액자산가·탈루소득 과세 강화 및 서

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 '17년 중 조세·재정 개혁 특별기구 설치, '18년 개혁 보고서 작성·보고

- Zero-base 예산을 통한 제대로 된 양적·질적 (사업구조·집행체계 개편)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건전성 유지 병행
- 자동안정화장치 강화*, 국채발행제도 개선** 등 재정의 경기대응성을 제고하여 구조개혁 부담 완화
 - * 주요국 사례 분석 등을 거쳐 중장기 제도개선방안 강구 ('17.下 연구용역)
 - ** 세수결손 등 예기치 못한 경제상황 발생시 총국채발행 한도내에서 국채발행을 탄력 조정하는 등 안정적 재원조달 방안 검토('17.下 연구용역)

2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공공부문 핵심가치로 재정립

- 국민의 입장에서 공공기관 운영·관리·평가체계 전면 혁신
 - 공공기관 경영평가지 고용 창출·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반영 강화, 지방공기업 사회적 책임 경영평가지표 마련
 - 공공기관 부채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하되 공공임대주택, 도시재생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 공공기관 감사 독립성 강화, 노동이사제 도입 등 지배구조 개선으로 책임경영체제 내실화
 - 열린 공공기관 구현을 위해 공공기관 공시시스템의 정보공개 내용 대폭 확대 및 공공기관 종합포털로 발전
 - 정부·공공기관·구성원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해 국민 서비스 역량 제고
- 예타 대상규모 상향(現 500억원), 종합평가지(AHP) '고용·환경', 평가실효성 제고, 사회적이

치 신규지표 도입 추진('17.下 연구용역)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반영*, 종합심사낙찰제 고용관련 가점 2배 상향(0.4 → 0.8점)
 - * 예) 임금적기 지급, 정규직 채용실적, 여성고용비율 및 일·가정양립 지원 실적,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헌 등

3 정책금융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확대로 혁신·역동성 제고

- 창업-성장-회수 등 성장단계별로 정책금융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여 민간참여 미충분 역할 수행
 - 창업초기 기업에 직접투자하는 정책금융-벤처캐피탈(엔젤 등)간 매칭 방식의 유망 창업기업 발굴 프로그램 운영(400억원)
 - 신·기보의 보증연계투자 및 투자유선부 보증 확대
 - * 신·기보의 보증연계투자규모를 '자기자본금의 10% 이내 → 20%로 확대 검토
 - 창업펀드(3천억원), M&A펀드(1조원), 해외진출펀드(2천억원) 등 민간자금과 협업하여 창업·성장 지원 위한 대규모 펀드 조성
 - * 특히, 산은과 성장금융의 간접투자재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중·후순위 구조 등)하여 민간자금의 참여를 보다 확대
 - 혁신기업 등에 IR기회 제공, 창업자와 투자자간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의 네트워크 지원 플랫폼* 강화
 - * 예) 산은 'KDB IR센터'의 'KDB넥스트라운드', 성장금융의 '졸지마투자 IR' 등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선진적 금융시장 인프라 구축
 - 진입규제 등 사전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사후규제는 강화)하여 금융업의 경쟁과 혁신 유도

- 법·제도 정비를 통해 빅데이터·핀테크 등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개발·유통 여건 마련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체계 도입,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4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연계, 서비스하는 열린 행정 구현

-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해 정부혁신플랫폼 ‘광화문 1번가’ 오픈, 정보공개·기록관리제도 전면 개편
- 국민공감 서비스 혁신을 위해 각종 온라인 서비스·정책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정부24’ 개통
- 스마트행정 구현을 위해 인공지능 활용 스마트 서비스 제공, 공공 빅데이터 설치·운영 등 범정부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IV.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및 향후 전망

1 하반기 경제여건①: 세계경제는 회복세 지속, 리스크 상존

- 세계경제는 확장적 거시정책, 유가회복 등에 힘입어 선진국·신흥국 동반 회복세 지속 전망
 - 그간의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등에 힘입어 선진국 중심으로 수요가 회복되며 수출·소비·생산 증가
 - * (美) 양호한 고용여건으로 소비호조
 - (日) 수출·생산 증가, 경기부양효과 본격화
 - (EU) 소비회복, 美 소비호조로 수출·생산 확대
 - 중국은 수출 및 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성장세 지속, 자원신흥국은 유가 회복으로 성장세 확대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와 전망(IMF, '17.7월)

(단위: %)

	세계	선진국	미국	유로	일본	신흥국	중국	브라질	러시아
'16년	3.2	1.7	1.6	1.8	1.0	4.3	6.7	△3.6	△0.2
'17년	3.5	2.0	2.1	1.9	1.3	4.6	6.7	0.3	1.4
'18년	3.6	1.9	2.1	1.7	0.6	4.8	6.4	1.3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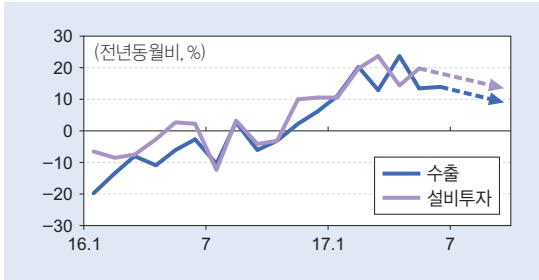
- 다만, 유가하락·통화기조 전환·보호무역주의 등 리스크 상존
 - 최근 유가는 美 세일오일 증산 등에 따른 공급과잉 우려로 하락→하락세 지속시*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 우려
 - * (상승요인) 세계경제 회복, 산유국 정정불안
 - (하락요인) 美 증산, 산유국 감산합의 이탈
 - 연내 美 금리인상 및 자산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ECB 통화기조 전환 가능성 등은 국제금융 시장 리스크 요인
 -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美 트럼프 정부 경기 부양정책 관련 불확실성 증가도 세계 교역시장 위협요인

2 하반기 경제여건②: 국내경제는 회복모멘텀 다소 약화 예상

- 경기 회복세는 유지되나, 성장모멘텀 다소 둔화 전망
 - 상반기 견조했던 설비투자·수출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는 반면, 회복모멘텀 부재로 소비회복은 지연
 - * (설비) 대규모 설비투자가 상반기에 집중
 - (수출) 유가약세로 상승세 둔화
 - 건설투자는 착공·분양물량 감소 등으로 완만히 둔화

수출 · 설비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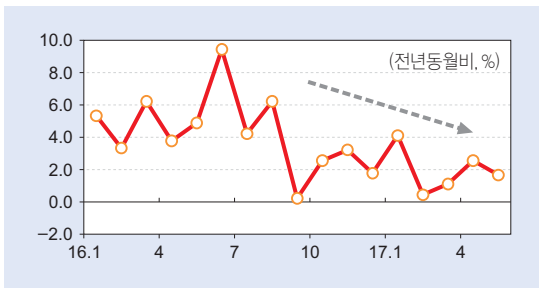
(단위: 전년동월비, %)



출처: 통계청, 관세청

소매판매 추이

(단위: 전년동월비, %)



출처: 통계청

■ 고용 증가세 약화, 물가는 안정세가 예상되나 리스크 상존

- 고용은 상반기 양적 개선세를 주도했던 건설업 호조가 약화되며 증가세 둔화, 제조업 더딘 회복으로 고용의 질 부진 지속

* 취업자 증감(1~6월, 만명): (제조업) Δ6.8 (자영업) 11.8 (건설업) 14.4

- 물가는 유가 상승폭 축소 등으로 상반기 대비 기름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폭염·태풍 등 기상재해에 따른 리스크 상존

■ 보호무역주의 심화 가능성, 美 추가금리 인상 등 통화기조 전환 가속화시 가계부채·부동산 리스크 확대 우려

-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생경제 회복, 리스크 관리 등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
- ⇒ 새정부의 주요 정책추진과제는 하반기부터 신속히 이행

3 하반기 정책과제①: 민생경제 조기 회복

- 추경 3/4분기중 70% 이상 집행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
 - 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주기적 집행현장 조사 등을 통해 불용률 축소 노력 강화(최근 5년 평균 3.9% → '17년 3% 이하)
 - 지방 교부세·교부금 정산분(3.5조원)을 활용하여 지자체 추경 독려('16년 40조원 → '17년 45조원 이상)
 - 신재생에너지 등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를 0.7조원 보강
-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완화 기조 유지
 - 일자리 창출,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개편('17 3/4분기중 시행예정)
- 심리개선·여건조성·여력확충 등을 통해 국내소비 촉진
 - 에너지효율향상 투자사업을 통해 사회복지시설(노인·장애인·아동)의 고효율 냉난방기기 구입비 50% 지원(1천억원 한도)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액 소득공제율 확대(30 → 40%, ~'17.末)
 - 국가관광전략회의 신설 등 융복합·고부가 관광

산업 육성

- 관광벤처기업 발굴·육성, 관광산업 펀드 조성, 개별관광객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등 관광 산업 경쟁력 강화

- 지역 특화관광명소 집중 육성(21년까지 테마여행 10선 추진), 관광두레 확대, 글로컬 관광지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 고궁 야간 개방 확대*, 지역 명소(광화문 광장 등)를 활용한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방안 마련

* 경복궁·창경궁 야간개방(8.13~19) 및 창덕궁 달빛기행(10월중 3회) 추가 실시

- 노동자 휴가지원제 도입*, 대체공휴일 확대** 등 공휴일 제도 개선

* 한국형 체크 바캉스, '18년부터 제도설계 등 추진

** '18년 관련 규정 개정

- 외국인관광객 성형수술비용 부가가치세 환급 일몰연장('17.末→'19.末)

• 소비여력 확충을 위해 숨은 금융자산 조회범위·환급시간 확대*, 카드 포인트 자동 캐시백 확산 유도** 등 잠자는 돈 활용 촉진

* (범위) 예금·신탁·외환→은행취급 펀드·ISA 추가 (시간) 9~17시→9~22시

** 카드업계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카드포인트 서비스 개발 유도

- 미수금 정산완료료를 반영하여 도시가스요금 인하(8~9%, 4/4분기)

■ 기업의 축적된 투자 여력을 실제 투자로 적극 유도

• 기업소득환류세제 개편, 4차 산업혁명 등 투·융자 확대 위한 2조원 규모 특별지원프로그램(산은) 운영 등 투자여육 고취

• 전기차 급속충전기 구축목표 조기달성*을 위해 하반기중 고속도로 등에 집중설치(1천기 이상)

등 친환경 투자 확대

* '20년까지 누적 3천기 이상 구축 목표를 '18년 조기달성

•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17.末→'19.末), 폐선 촉진보조금 도입(신조선가의 약 10%) 등 안전투자 확대 유도

4 하반기 정책과제②: 구조개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가속화

■ 법령·지침 등 제·개정 필요 과제→하반기 즉시 착수

■ 재원 수반 과제→세법개정안·예산안 등 반영

■ 중장기 로드맵 등 방향설정 필요과제→종합계획 수립

【2017~2018년 경제 전망】

■ (성장) '17년은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투자 회복, 추경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전년도 다 개선된 3.0% 성장

• '18년은 투자가 다소 둔화되나, 일자리 확대·임금 상승 등으로 소비가 개선되며 3.0% 성장 예상

■ (고용) '17년은 수출·투자 개선, 건설업 호조, 추경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는 전년도보다 개선된 34만명 증가

• '18년은 공공 및 민간부문 일자리 확대 등으로 36만명 내외의 증가 예상

■ (물가) '17년은 유가 회복('16:41→'17:50\$/B),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 공급측 영향으로 1.9% 상승

- '18년은 소비개선 등 상방요인에도 불구하고, 유가·농축산물 가격 안정 등으로 1.8% 상승 전망

■ **(경상수지)** '17년은 수출은 회복되나, 설비투자 증가 등 수입 확대, 中 관광객 감소 등으로 720억불로 둔화

- '18년은 소비회복으로 상품수지 소폭 축소, 705억불 전망

	'16년	'17년	'18년
• 경제성장률(%)	2.8	3.0	3.0
• 취업자증감(만명)	30	34	36
• 소비자물가(%)	1.0	1.9	1.8
• 경상수지(억불)	987	720	705

별첨 1 주요 과제

※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 지속 추가·보완

1 한국형 고용안정·유연 모델 구축 → 실업 두려움 없는 사회

- ※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사상생, 포용적 일터 혁신 추진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효율적 노동 시장 구축과 연계하여 추진
- 실업안전망 강화: 고용보험 의무가입자 100% 가입 및 실업급여 보장성을 '22년까지 OECD 평균 수준까지 개선 추진

- ▶ **(1단계)** 지급액 상향(50→60%) 및 지급기간 연장(8→9개월), 65세 이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단계적 가입 허용('18년)
- ▶ **(2단계)** 지급수준·기간 등의 대폭 확대를 위한 사회적 논의 본격 추진

- 직업교육·훈련 혁신: 평생능력개발·경력설계 지원 강화(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재정투자를 총 재정지출증가율 이상 지속 확대)

- ▶ 폴리텍 훈련과정을 혁신산업 중심 개편 → 신규 기술 교육·훈련 거점화
- ▶ 생애전환기별 직업능력개발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경력설계 체계 구축
 -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지원 → 평생직업능력 개발계좌제 도입 등 확대 강구

2 빈곤층 소득지원 강화 → 더불어 사는 사회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 ▶ **(1단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8년~)
- ▶ **(2단계)** 소득 7분위 이하 중증장애인·노인이 포함된 가구는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제외 ('19년~)

- 근로빈곤층 지원 → EITC 지속 확대(대상·지급액 확대)

* EITC 주요국에 비해 크게 미흡

: (지급가구) 〈韓〉 3.6% 〈美〉 8.3% 〈英〉 6.9%

(가구당 지급금액) 〈韓〉 87만원 〈美〉 298만원 〈英〉 1,131만원

3

도심내 공적임대 대폭 확충+주택파이낸싱 시스템 개편

-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도심내 직주 근접 임대주택 5만호 확충

구분	주요 내용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2만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공공청사를 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등과 복합 개발 ▶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대상, 용적률 등 건축규제 법정한도까지 완화 ▶ '17년부터 1만호 공급 착수, 성과확산 통해 1만호 추가 공급
매입임대리츠 (2만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츠가 주택을 매입, 청년·신혼부부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 ▶ 출자비율 상향(10→20%), 지역별 매입상한액 차등화하여 활성화
노후주택 리모델링 (1만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 등이 노후주택을 매입후 리모델링, 재건축하여 청년 등에 공급 ▶ 도시재생 연계 등을 통해 '17년부터 적극 매입·착공

- Sale & Leaseback 방식 한계차주 주택매입

- ▶ 주택도시기금, LH, 주담대 취급은행 등이 출자하여 리츠를 설립
- ▶ 한계차주는 주택(주담대)을 리츠에 매각후 해당주택에 임차하여 거주
→ 임차기간(5년) 종료후에는 재매입 가능
※ 주택시장 상황과 연계 시행

4

지역 일자리 만드는 기업 최우선 지원-골고루 잘사는 사회

- 투자유치제도(지방이전기업, 외투, 유터) 통합 → 고용효과 중심 재설계

- ▶ 고용효과에 따라 세제·입지·현금지원을 외투 수준으로 강화
- ▶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업종으로 지원대상 확대
- ▶ 경제특구에 입주한 국내기업에 외투 수준으로 지원
- ▶ 외국인투자 금지·제한 업종 전면 재점검, 원칙적 개방

- 지역별 일자리창출 거점을 구축하고 세제·금융 등 집중지원

- ▶ 혁신도시별 종합발전계획 수립, 14개 시도별 국가혁신 클러스터 선정
- ▶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지역별 산업단지 혁신 2.0 추진
- 창업·혁신공간, 문화·복지공간과 조화

※ 「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한 투자유치제도 개편 방안」 마련(12월)

5

교육 희망사다리 프로젝트 추진 → 사회적 이동성 복원

- 저소득층의 공교육에 대한 소요비용을 촘촘히 지원

- ▶ 부교재 · 학용품 · 교과서대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단가 인상
- ▶ 현장체험 · 수학여행 · 교복비 지원 확산(일부 → 모든 지자체)

- 우수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 취약계층 영재교육 및 우수인재(예술 · 체육 등) 육성사업 신설
- ▶ 자격증 취득 바우처 설계 · 도입 및 반값 등록금 확대

- 4차 산업혁명 대비 평생교육 예산 지속 확대

- ▶ 저소득층 대상 평생학습 바우처 신설
- ▶ 중소기업 재직자의 계약학과 등록금 지원 확대(65 → 85%, 전문 · 학사)

6

개별기업 지원 → 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 구축 전환

- 수평적 네트워크: 중소기업간 협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 구현

- ▶ 중소기업이 공동 출자하는 협업전문회사 도입 → 창업기업 수준 지원
- ▶ 협업기업 중심으로 연구개발, 금융, 판로 등 지원체계 구축
 - 중소기업간 공동 연구개발 지원사업(36개 과제, 75억원) 확대
 - 정부 지원 사업시 中企 협업사업 우대 → 성과평가후 中企 협업화 전용사업 신설
 -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 적용대상 확대(지자체 → 중앙정부 · 공공기관)

- 상생형 네트워크: 밸류체인에 기여한 만큼 성과 보상, 동반성장(상생협력 지원세제 4대 패키지를 통해 뒷받침)

- ▶ **(협력이익배분)** 대기업 이익 → 중소기업사 공유 · 출연시 세액공제
- ▶ **(상생협력기금)**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의 기한세 과세대상 차감 확대
- ▶ **(성과공유제)** 기업이익을 근로자와 공유시 세제지원 방안 강구
- ▶ **(상생결제)** 상생결제 세액공제 대상 중소기업까지 확대

- 개방형 네트워크: 글로벌 시장확보 및 경쟁력·자생력 제고

- ▶ (In-Bound) 전속계약구조 개선 → 중소기업 협상력 제고
- ▶ (Out-Bound) 수출금융 지원 강화 → 중소·중견 수출비중 40% 이상 확대

7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 사회통합형 성장 모델로 육성

- 전 부처의 사회적경제 정책 조정·시행 위한 추진체계 및 전담조직 신설, 사회적경제기본법 정부 대안 마련 등 인프라 구축
-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확보 위한 초기지원 강화

- ▶ 中企 정책자금내 사회적경제기업 총액 대출목표 신설
- ▶ 사회혁신기금, 사회투자펀드 조성, 신용보증심사기준 개편 등 사회적경제 특성이 반영된 금융시스템 구축
-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강구
- ▶ 공공조달 가점제도(現 사회적기업에 운영중), 대기업 연계 판로·유통 지원 등을 사회적경제기업 전반으로 확대
- ▶ 사회적경제 학습체계 구축 등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로드맵 수립(민간 경제교육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 경제교육 확산 등)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규모화 촉진, 국민인식 제고 위해 평생학습도시를 사회적경제 학습기반으로 활용

* 일반 협동조합-개별법상 협동조합(농협·생협 등)간 연합회 설립 허용 등 규제완화 → 협동조합간 연대·협력 유도(現 일반 협동조합간 연합회 설립만 허용)

8 4차 산업혁명 대응태세 강화 → 혁신 창업국가 도약

- 자율주행차·정밀의료·드론 등 선도분야 선정, 패키지 방식 지원

- ▶ R&D 집중지원 및 테스트베드 구축(자율주행 실증도로, 드론전용 시험비행장 등)
- ▶ 활용도가 높은 공공·민간 빅데이터 구축·개발 → 공유 플랫폼 구축
- ▶ 신산업분야 사후규제 중심 네거티브 규제 전환, 핵심규제이슈 개선방안 마련
- ▶ 분야별 전문 연구인력 양성 및 특성화 대학·학과 육성

- 선순환 창업 생태계 조성 → 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 육성

- ▶ (창업) 기업투자촉진법(가칭) 제정, 공모창투 조합 활성화, 벤처확인제도 개편 등
- ▶ (회수) M&A 규제완화, 기술혁신형 M&A 세제특례 확대 등
- ▶ (재도전)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대상 확대,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등

9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 좋은 일자리 창출 저변 확대

- 新 유형서비스 활성화 위해 규제개선 및 R&D 등 지원 강화

- ▶ 신산업 직종 발굴·육성 위해 교육·훈련과정 확충(유망직업 교육과정 개설 등)
- ▶ 고부가·융복합분야 신서비스 창출(핀테크, 공유경제 등) 위한 규제개선, 정부 서비스 R&D 투자확대('16년 0.6→'21년 1.3조원) 및 지원 강화

- 제품 기획·생산단계에서 제조업-서비스 융합 강화

- ▶ 제조기업의 서비스활용 컨설팅 강화, AI·빅데이터·V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제조기반 서비스업 혁신 및 고부가가치화

- IT·SW 활용 등으로 저부가서비스(음식·숙박 등) 경쟁력 제고

10

新 통상전략 수립 →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주도

- FTA 네트워크 확대 등 새정부 통상전략 수립

- ▶ 신규 FTA 협상(메르코수르, EAEU 등) 및 기 체결 FTA 개선(인도·아세안 등) 유통·관광 등 우리 관심 분야 중심으로 한중 FTA 서비스시장 확대

- ▶ 對美(무역불균형·FTA개정 요구), 對中(사드 관련 중측 조치)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 통상 교섭본부 중심으로 비관세장벽 등 해소노력 경주
- ▶ Next China 대비 위해 인도·아세안 등 협력 다변화
- ▶ 통상 선진국가간 공조, G20·ASEM·APEC·WTO 등 활용 보호무역주의 적극 대응

- 전략적 글로벌 시장 확보 및 中企·청년의 해외 진출 강화

- ▶ 인도·아세안·일본·러시아 등을 중점 경험국 선정
- ▶ 금융패키지 추가 지원 등 해외인프라 수주지원 강화, EDCF 집행규모 연 10% 이상 확대 및 랜드마크형 인프라 사업 추진
- ▶ 중소기업 제품을 수입하는 해외기업에 용자하는 1조원 규모 견인금융 출시
- ▶ K-Move센터 재정비, 국제금융기구 초급전문가 파견확대 등 해외일자리 지원 강화

별첨 2 2017년 상세 경제전망

1 경제 성장

① (실질 성장률) 연간 3.0% 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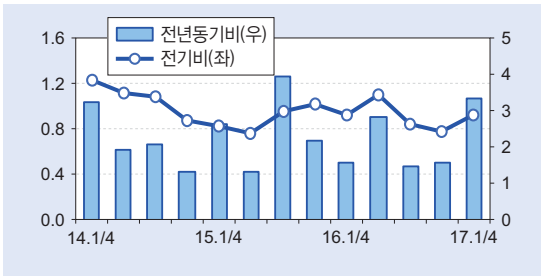
- 세계경제 회복, 추경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16년보다 개선된 연간 3.0% 성장 전망
 - 상반기 성장을 주도한 수출·투자 회복세가 하반기 소폭 둔화되나, 추경 등 정책효과 등

이 하반기 성장세 보완

- 부문별로는 수출 및 건설·설비투자 중심의 성장세 시현
 - 설비·건설투자는 IT 업황 개선, 건설업 호조 등으로 확대되나, 소비는 가계부채 상환 부담 등으로 증가세 제약
 - 수출은 세계성장률 및 교역량 개선, 반도체 등 주력품목 호조 등으로 개선되나, 보호무역주의 등은 제약요인

경제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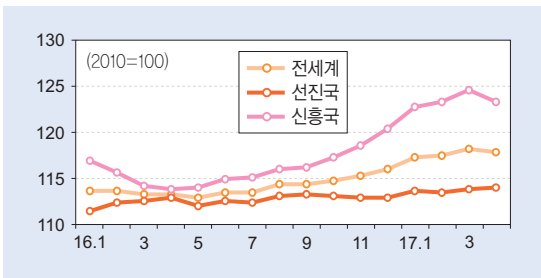
(단위: %)



출처: 한국은행

세계교역량 추이

(단위: 2010=100)



출처: CPB, 수출물량 기준, 3개월 이동평균

② [경상성장률] 연간 4.6% 성장 전망

- 디플레이터는 수출단가 개선에도, 유가 회복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되며 물가상승률을 소폭 하회하는 1.6% 상승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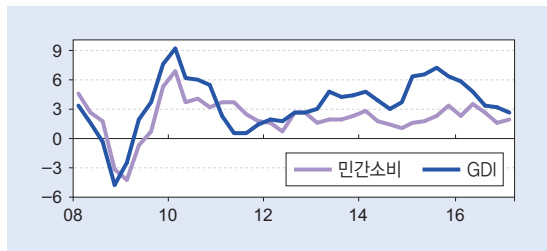
- 물가수준을 반영한 경상성장률은 연간 4.6% 전망

③ [민간소비] 연간 2.3% 증가 전망

- 임금 정체,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16년(2.5%) 대비 둔화 전망
 - 최근 부진했던 소비심리가 개선되었으나, 임금 상승률 및 실질구매력 둔화, 가계부채 상환 부담 등으로 회복 지체
 - * 실질임금 상승률(전년동기비, %): ('14) 1.2 ('15) 2.7 ('16) 2.8 ('17.1/4) 0.7
 - 하반기 일자리 추경, 소비활력 제고 정책 등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나, 시중금리 상승 등의 하방요인 상존

민간소비와 실질소득(GDI)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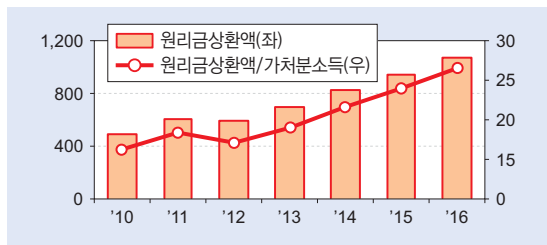
(단위: 전년동기비, %)



출처: 한국은행

가계부채 및 원리금 상환액

(단위: 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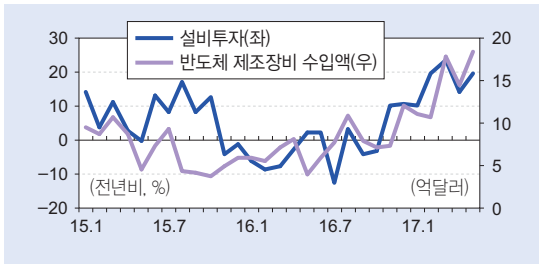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4 [설비투자] 연간 9.6% 증가 전망

- 수출 증가, 글로벌 IT 업황 호조, 기업실적 개선 등 투자 여건이 개선되며 '16년(Δ2.3%) 대비 큰 폭 증가세 시현 전망
 - 낸드플래시 등 대규모 반도체 제조장비 투자 등에 힘입어 기계류 투자가 설비투자 회복 견인
 - 다만, 상반기 대규모 투자 집중에 따른 하반기 투자여력 약화, 제조업 가동률 부진 등은 하방요인

설비 투자 및 반도체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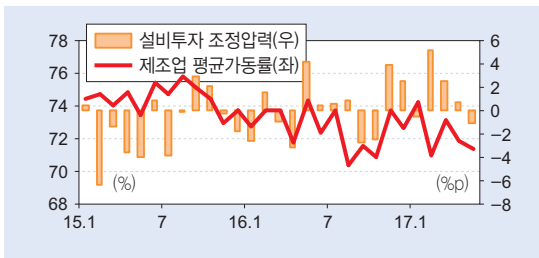
(단위: 전년비, %, 억달러)



출처: 통계청, 관세청

제조업 평균가동률과 설비투자조정압력

(단위: %, %p)



출처: 통계청

5 [건설투자] 연간 6.7% 증가 전망

- 건설투자는 민간주택 건설 호조 등으로 증가세가 지속되나, 기저효과 등으로 '16년(10.7%)보다 증가폭 축소 전망
 - 건물은 주택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겠으나, 분양물량·착공면적 감소 등 감안시 하반기 이후 완만하게 둔화
 - * 공동주택 분양(만호): ('10~'14평균) 28.6 ('15) 52.5 ('16) 46.9 ('17*) 30
 - 토목은 SOC 예산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둔화 예상
 - * 정부 SOC 예산(조원): ('15) 24.8 ('16) 23.7 ('17) 22.1

건설기성 및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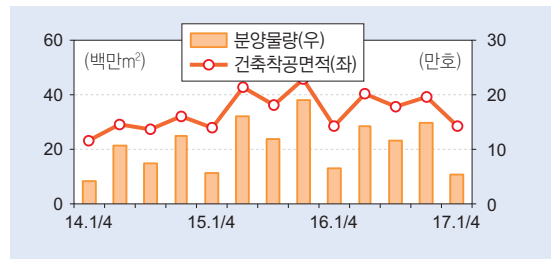
(단위: 조원, %)



출처: 통계청

분양물량과 건축착공면적

(단위: 백만㎡, 만호)



출처: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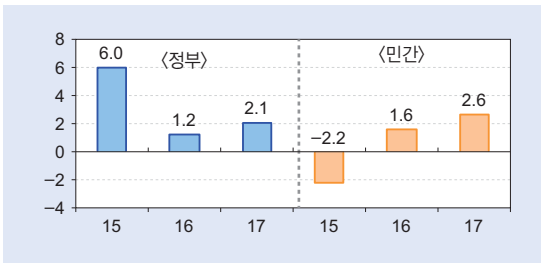
6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연간 2.8% 증가 전망

- R&D 투자는 IT 업황 호조 등으로 완만한 증가세 예상
- 소프트웨어 투자는 빅데이터 ·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SW 개발수요가 확대되며 증가 전망

* '17년 新SW시장 전망(% , SW정책연구) : (클라우드) 21.0 (빅데이터) 25.2 (IoT) 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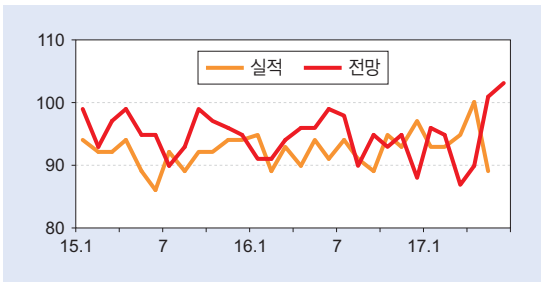
정부 R&D 예산 및 민간 R&D 투자 증가율

(단위: %)



출처: 기재부, 한국산업기술진흥회

소프트웨어 BSI



출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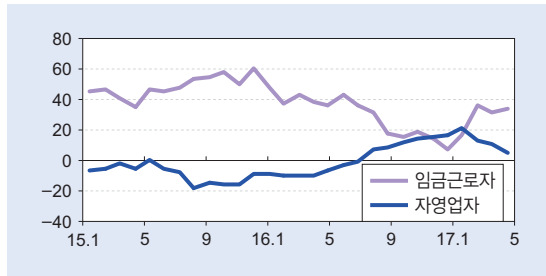
2 고용: 연간 취업자 34만명 내외 증가 예상

1 (고용전반) 수출 회복, 건설업 호조로 취업자 증가폭 개선

- 취업자 증가폭은 수출 · 투자 회복, 주택 준공 물량 증가, 일자리 추경 등의 영향으로 '16년(30만명)보다 개선 전망
 - 다만 일용직 증가 등 일자리 질이 낮고, 내수 부진 · 자영업자 과당경쟁 심화 등의 하방위험 상존
- 고용률(15~64세) 66.7%로 작년(66.1%)보다 개선, 실업률 3.7% 예상

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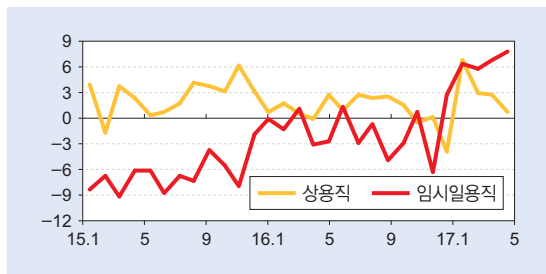
(단위: 전년동기비, 만명)



출처: 통계청

종사상지위별 신규채용 증감

(단위: 전년동기비, 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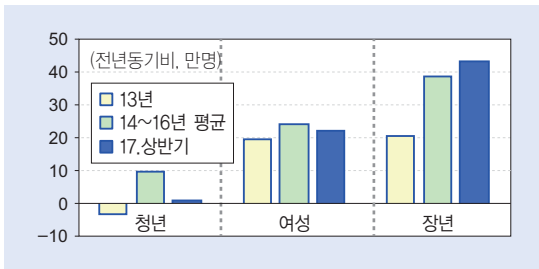
출처: 고용부

1 (부문별) 여성·청년 구직활동 확대, 건설·서비스업 고용 증가

- 청년·여성은 맞춤형 취업연계 강화, 장년층은 인구증가 및 노동시장 잔류 등으로 경제활동 참여 확대 지속
 - * 예코분세대(91~96년생)의 노동시장 본격 진입으로 청년 취업경쟁 심화
- 하반기 건설업 취업자 증가세 다소 조정, 공공행정 등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세 지속 전망

경제활동 인구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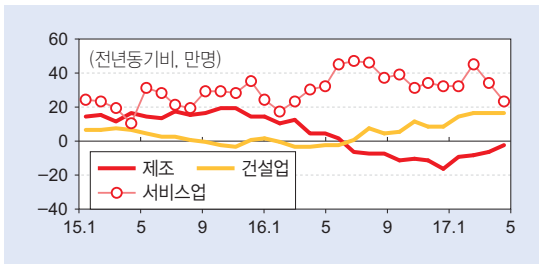
(단위: 전년동기비, 만명)



출처: 통계청

산업별 취업자 증감

(단위: 전년동기비, 만명)



출처: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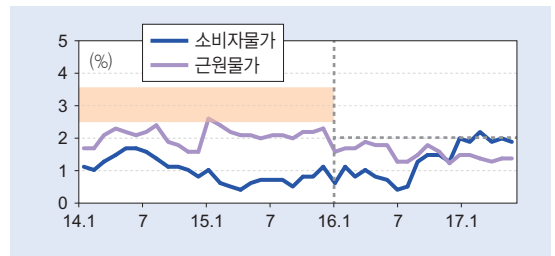
3 소비자물가: 연간 1.9% 상승 예상

1 (물가전반) 공급측 상방압력 완화로 4/4분기 부터 상승세 둔화

- 유가, 농축수산물 가격 등 공급측 상방압력이 점차 완화되며 4/4분기 이후 상승세 둔화 전망
 - * '16.7~9월 전기요금 인하(Δ18.8%)에 따른 저지효과는 변동폭 확대요인
- 일시적 요인을 제거한 근원물가는 1% 중반의 안정세이나, 기상재해 및 AI 이후 생산기반 복구 지연 등은 불안요인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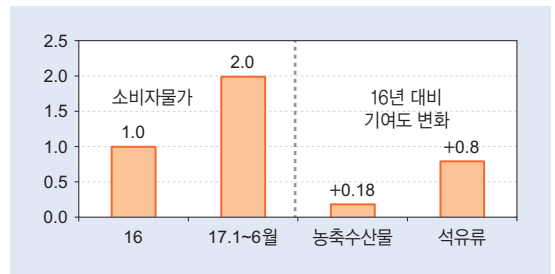
(단위: %)



출처: 통계청

소비자물가와 기여도 변화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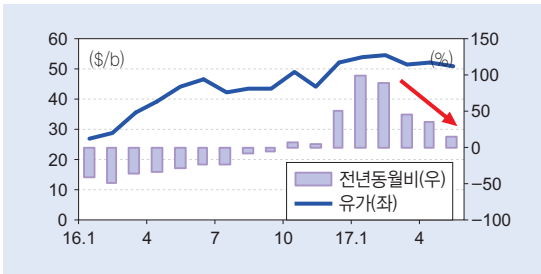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2 (부문별) 석유류·농축수산물 등 물가 상승압력 완화

- 최근 국제유가 조정 움직임, 기저효과('16. 下 46\$/B → '17. 下 50\$/B) 등으로 유가 상승효과는 점차 축소될 전망
- 농축수산물은 '16년 하반기 기상재해에 따른 기저효과로 오름세 완화가 예상되나, 계란수급 등은 불안요인

국제유가(두바이유)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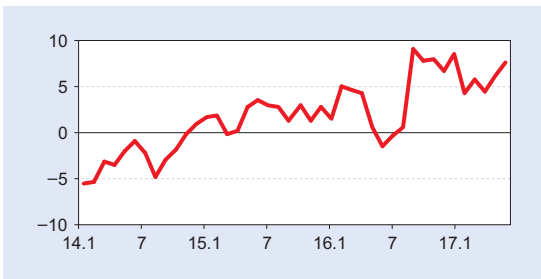
(단위: \$/b, %)



출처: 석유공사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

(단위: 전년비, %)



출처: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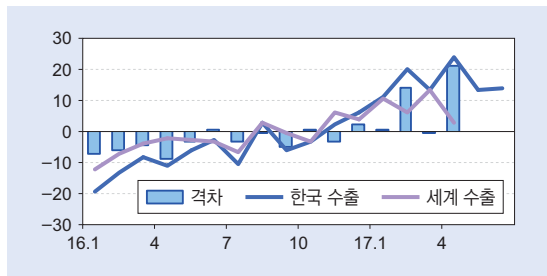
4 수출입과 경상수지: 연간 통관 수출 10.2%, 수입 14.0% 증가 예상

1 (통관 수출입) 수출·수입 모두 하반기 증가폭 점차 축소

- 수출은 세계경제 회복, IT업 호조 등으로 증가세 지속 예상
 - 다만, 유가 하락세 및 작년말 이후 수출회복에 따른 기저효과 축소 등으로 증가폭은 점차 축소 전망
 - 보호무역주의,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로 인한 수요위축 가능성, 유가하락에 따른 신흥국 경기부진 등 하방위험 상존
- 수입은 수출 개선, 설비투자 증가 등으로 증가세 지속 전망

우리나라 및 세계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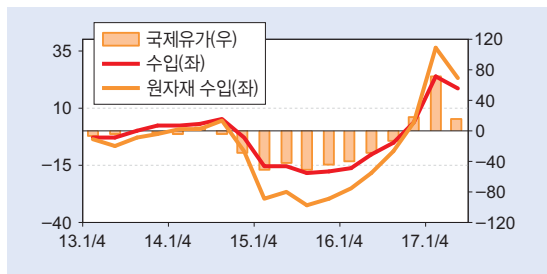
(단위: 전년동월비, %, %p)



출처: 무역협회, WTO

수입 및 국제유가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



출처: 무역협회

② (경상수지) 상품수지 흑자폭 축소 등으로 720억불 흑자 예상

- 상품수지는 유가 상승, 설비투자 증가 등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빠르게 증가하며 흑자폭 축소 전망
- 서비스수지는 中 관광객 감소, 구조조정 영향, 해외건설 수주 부진 등으로 여행·운송·건설수지 중심 적자폭 확대

경상수지 전망

(단위: 억달러)

	'14년	'15년	'16년	'17년 ^o
• 경상수지	844	1,059	987	720
• 상품수지	889	1,223	1,204	1,035
•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45	△163	△218	△315

2017~2018년 경제전망 요약

(단위: 전년동기비, %)

	'16년 실적	'17년 ^o		'18년 ^o
		1/4	연간	연간
전망 전제				
세계경제(PPP) ¹⁾	3.2	-	3.5	3.6
Dubai 유가(\$/bbl)	4.1	53	50	5.1
실질GDP	2.8	2.9	3.0	3.0
민간소비	2.5	2.0	2.3	2.6
설비투자	△2.3	14.4	9.6	3.0
건설투자	10.7	11.3	6.7	2.0
지식재산생산물투자	2.3	2.7	2.8	4.0
경상 GDP	4.7	4.9	4.6	4.5
고용률(15~64세, %)	66.1	65.7	66.7	67.2
취업자 증감(만명)	30	36	34	36
소비자물가	1.0	2.1	1.9	1.8
경상수지(억달러)	987	194	720	705
상품수지(억달러)	1,204	280	1,035	1,012
수출(통관, %)	△5.9	14.7	10.2	2.7
수입(통관, %)	△6.9	23.9	14.0	4.1
서비스·본원·이전 소득수지(억달러)	△218	△86	△315	307

주: 1) IMF World Economic Outlook('17.7월)

별첨 3 실행계획(Action Plan)

※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개발표된 과제들은 기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추가과제 중심으로 실행계획 마련

과제 내용		추진계획	부처
① 소득주도 성장			
영세 소상공인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관계부처 TF 통해 지원방안 구체화 및 '18년 예산안 반영('17.9월)	기재부 고용부 중기청
생계비 경감	▶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 선도사업지 선정('17.9월) ▶ 정부기관·지자체 대상 공모('17.9월)	국토부 기재부
	▶ 매입임대리츠 활성화	▶ 기금운용계획 변경('17.10월) * 기금 출자비율 상향	
사회 안전망 확충	▶ EITC 지속 확대	▶ 심층평가('17.12월)를 거쳐 대상·지급액 확대 추진	기재부
	▶ 실업안전망 강화	▶ (1단계) 실업급여 지급액 상향, 지급기간 연장 등 고용보험 관계법령 개정 추진('18) ▶ (2단계) 지급수준·기간 대폭 확대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18~)	고용부
인적자본 투자 확대	▶ 교육급여 단가 인상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 및 결정('17.7월)	교육부 기재부 중기청
	▶ 교육비, 수학여행비 등 지원 전국 지자체 확산	▶ 시·도교육청 협의('17.8월~)	
	▶ 우수 저소득층 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 저소득층 우수인재 육성계획 수립('18) ▶ 영재교육 지원 사업 추진('18~)	
	▶ 4차 산업혁명 대비 평생교육 시스템 혁신	▶ 저소득층 평생학습 바우처 신설('18) ▶ 나노디그리 시범사업 추진('18) ▶ 재교육형 계약학과 등록금 지원 확대('18~)	
② 일자리 중심 경제			
일자리중심 정책 재설계	▶ 고용영향평가 강화	▶ 고용영향평가-예산 연계 확대('18~) ▶ 제·개정 법령 고용영향평가 도입('18)	고용부 기재부
	▶ 지자체 인센티브	▶ 지자체 예산편성기준 일자리중심 개정('17.8월) ▶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안 확정('17.9월) ▶ 일자리 관련 우수자치단체 재정 인센티브 신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 '17.12월)	행자부
	▶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 신설	▶ 세법개정안 반영('17.8월)	기재부
	▶ 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한 투자유치제도 개편	▶ 투자유치제도 개편 방안 마련('17.12월)	산업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훈련 혁신	▶ 재직자 훈련 혁신방안 마련·발표('17.9월) ▶ 직업능력개발훈련 기본계획 발표('17.12월)	고용부
③ 공정 경제			
담합행위 근절	▶ 집단소송제 도입 및 과징금 상향	▶ 집단소송제 개선 소위원회 구성('17.下) ▶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 개정 추진('18)	법무부 공정위
	▶ 공익신고자 보상금 확대	▶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17.下)	권익위 기재부
기업 지배구조	▶ 연기금 스튜어디스 코드 참여 확산	▶ 자산운용지침 가이드라인 반영('17.10월)	기재부
상생협력	▶ '상생협력 지원세제 4대 패키지' 신설	▶ 세법개정안 반영('17.8월)	기재부

별첨 3 실행계획(Action Plan) <계속>

과제 내용		추진계획	부처
④ 혁신 성장			
중소기업 성장 동력화	▶ 협업기업중심 지원체계 구축	▶ 중소기업 네트워크 중심 전회방안 마련('17.12월)	중기청
	▶ 고용창출 우수기업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연장	▶ 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18)	중기청
	▶ 네트워크형 지원프로그램	▶ 프로그램 운영방안 마련('17.10월)	금융위 기재부 산업부 중기청
4차 산업혁명	▶ 4차 산업혁명 선도분야 패키지 지원	▶ 패키지 지원방안 마련('17.10월), 시범 실시('18)	미래부 기재부
전략적 해외진출	▶ 새정부 통상로드맵 마련	▶ 새정부 통상 로드맵 수립 및 추진('17.9월)	산업부 기재부 외교부
	▶ 견인금융 출시	▶ 수출견인 프로그램 취급지침 확정('17.10월)	
	▶ EDCF 집행규모 확대	▶ EDCF 집행규모 연 10% 이상 확대('17~'21)	
⑤ 리스크 관리			
가계부채	▶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및 취약차주 지원 강화	▶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 마련('17.8월)	금융위 기재부
부동산 시장	▶ 지역별 탄력적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	▶ 주택법 개정 기완료('17.7월), 지역별 상황에 따라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국토부
	▶ 실수요자중심 청약제도 개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7.下)	
구조조정	▶ 경기민감업종 경쟁력 강화	▶ 건설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17.12월)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금융위
	▶ 사업재편기업 인센티브	▶ 기업활력법 성과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17.11월)	
생활물가	▶ 가격불안 품목 수급안정	▶ 할당관세 연장, 비축물량 방출 등('17.8월~)	기재부 농식품부 산업부
	▶ 소비자단체 연계 가격감시	▶ 하반기 특별물가조사사업 추진('17.8월~)	
⑥ 정책 인프라 혁신			
재정의 선도적 투자		▶ 중기재정계획 및 예산안 편성 반영('17~)	기재부
	▶ 재정의 분배개선을 제고	▶ 재정의 분배개선 효과 분석 연구용역('17.12월~)	
	▶ 재정의 경기대응성 제고	▶ 재정의 자동안정화 장치, 국제발행제도 개선 관련 연구용역('17.9월~)	
공공부문	▶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 연구용역('17.8월~), 국가재정법 개정('18)	기재부
	▶ 공공입찰 사회적 책임 반영	▶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예규 개정('17.11월)	
정책금융	▶ 모험자본 공급 확대	▶ 정책금융-VC간 매칭방식 창업기업 발굴 프로그램 운영('17.8월~) ▶ 창업펀드, M&A펀드, 해외진출펀드 조성('17.4/4분기~)	금융위

별첨 3 실행계획(Action Plan) <계속>

과제 내용		추진계획	부처
7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재정	▶ 집행관리 강화	▶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매월) ▶ 집행현장조사 실시(분기별 4건)	기재부
	▶ 지자체 추경 독려	▶ 지자체 추경 편성 현황 모니터링 및 신속편성 협조요청('17.7~9월)	행자부
		▶ 하반기 재정 집행 방안 수립('17.8월) ▶ 지방교육재정 점검회의 개최('17.8월~, 매월)	교육부
	▶ 공공기관 투자 보강	▶ 신규 투자계획기관 예산변경 의결('17.9월) ▶ 투자계획 이행여부 점검('17.12월)	기재부 산업부 등
통화	▶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개편	▶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규정 개정('17.3/4분기)	한은
소비	▶ 사회복지시설 고효율 냉난방기기 구입비 지원	▶ 한전 사업추진 시행계획 수립('17.8월) ▶ 한전 지원사업 안내 및 사업 시행('17.9월~)	산업부 (한전)
	▶ 고궁 야간개방 확대	▶ 야간개방 및 특별프로그램 추가실시 (8.13~19, 10.7.~10.21)	문화재청
	▶ 외국인관광객 성형수술비용 부가세 환급 일몰 연장	▶ 세법개정안 반영('17.8월)	기재부 복지부
	▶ 카드포인트 자동캐시백 확산 유도	▶ 카드업계와의 간담회 개최('17.9월)	금융위
	▶ 미수금 정산 반영 도시가스 요금 인하	▶ 요금 인하 추진('17.12월)	산업부
	▶ 기업소득환류세제 개편	▶ 세법개정안 반영('17.8월)	기재부
투자	▶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일몰 연장 ('19년까지)	▶ 세법개정안 반영('17.8월)	기재부
	▶ 4차 산업혁명 투융자 확대 특별지원프로그램	▶ 세부 운영지침 마련('17.8월)	산은
	▶ 전기차 급속충전기 구축목표 조기달성	▶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급속충전기 설치(~'17.10월)	환경부
		▶ 주요관광지, 상업시설 등에 추가설치(~'17.12월)	

별첨 4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KDI)

※ 일반국민 1,000명, 경제전문가 334명을 대상으로 조사('17.7.10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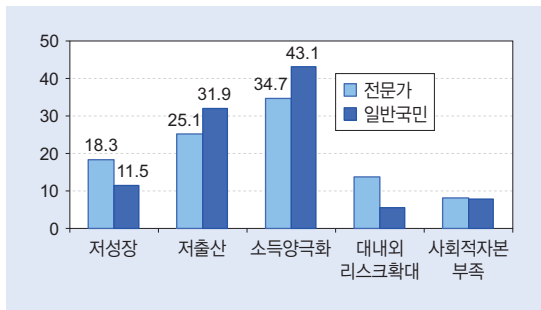
◇ 국민들은 양극화·저성장을 우리 경제 핵심 문제로 인식

- 우선과제로 소득확충 및 일자리 창출, 공정 경제, 혁신 성장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과 일치
⇒ 「사람 중심 경제」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국가상 달성

- ① 우리 경제가 직면한 문제는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가 소득 양극화 심화 및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고착화 지목
- 또한 국민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직면한 문제로 일자리 등 벌이 관련 문제, 생계비 부담이 가장 크다고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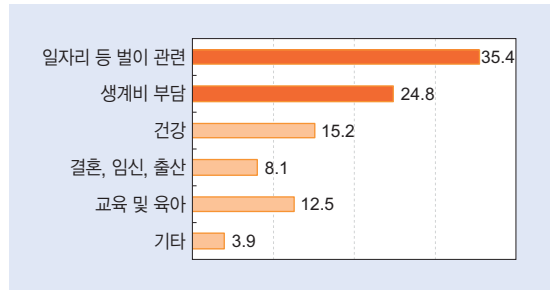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

(단위: %)



개인적 차원에서 직면한 심각한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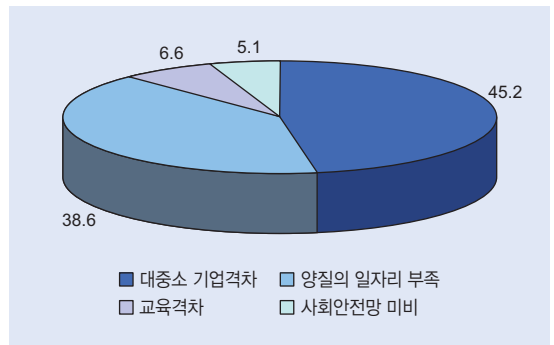
(단위: %)



- ② 전문가는 양극화 원인으로 대중소 기업격차 및 일자리 부족, 저성장 원인으로 혁신부족·불공정 거래 관행 등을 지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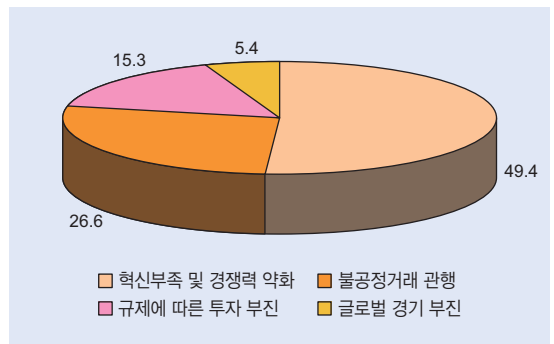
소득양극화의 원인

(단위: %)



저성장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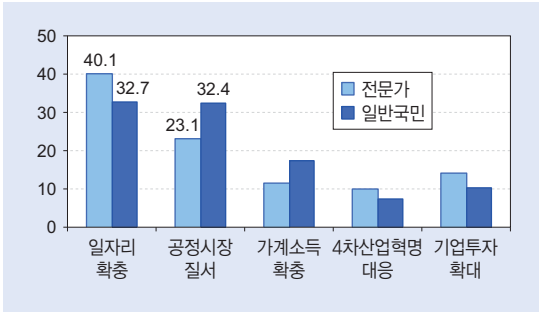
(단위: %)



- ③ 경제정책의 우선과제는 전문가·일반국민 모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선택
- 전문가는 경제성장 과제로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함께 경쟁제한적 규제개혁, 4차 산업혁명 대비 제도개혁 등 혁신성장에도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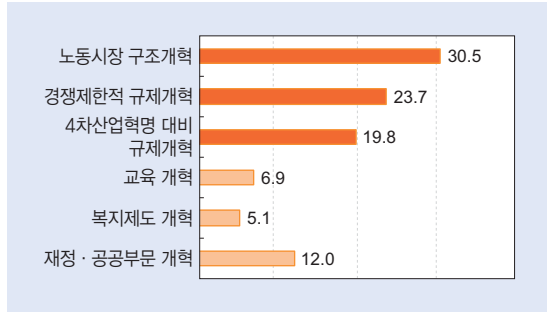
경제정책방향 우선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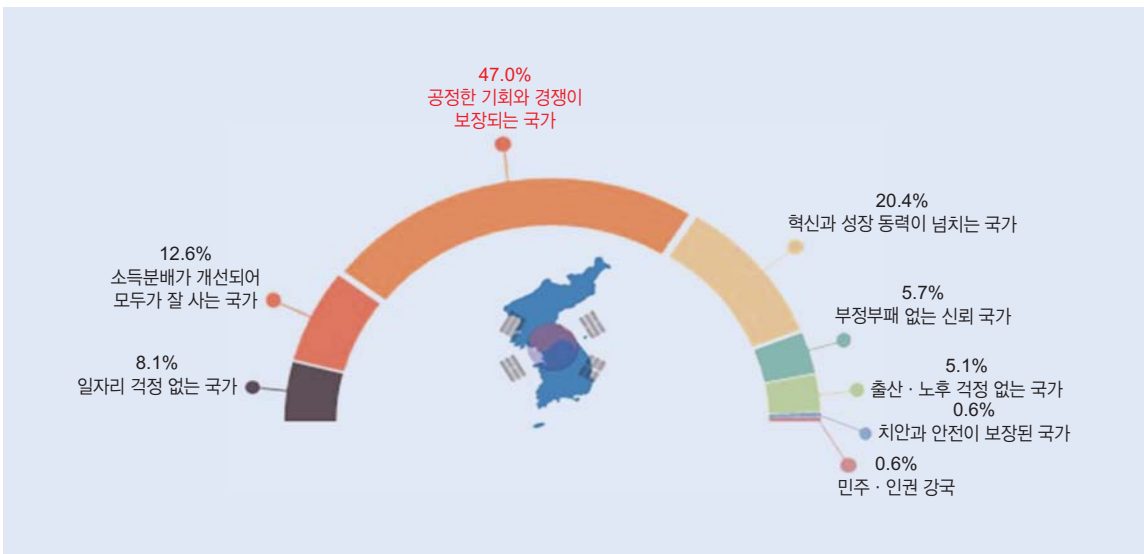


안정적 성장을 위한 개선필요 분야

(단위: %)



- ④ 향후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국가상으로 “공정국가”, “혁신국가”, “모두 잘사는 국가” 선택



[참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련 오픈형 설문조사 결과

※ 전문가 대상으로 정책제언을 오픈 설문으로 받아 워드 클라우드 작성



◇ 분석 결과 전문가들은 “일자리”와 “기업”을 가장 많이 언급 ⇒ 주로 일자리 중심의 정책 방향을 주문

재정포럼

2017년 8월호 통권 제254호

-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행인 /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한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책임전문원)
신지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원)

■ 월간 재정포럼

2017년 8월 16일 발행 / 제21권 제8호(통권 제254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 414-2130~2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상일인쇄(주) TEL: (02) 2269-6770

■ 인쇄 / 상일인쇄(주) TEL: (02) 2269-6770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 시 두 달치의 책값이 절약 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 414-2114
- FAX: (044) 414-250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식정보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441-05-000011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